

발 간 등 루 번 호
11-1430000-001614-14



해외상표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 국제출원가이드

(설명편)

2018. 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목 차

CONTENT

제1편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 1

제1절 마드리드 국제출원 소개	3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3
제2장 해외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6
 제2절 마드리드 국제출원	9
제1장 국제출원의 대상	9
제2장 국제출원의 출원인	9
제3장 국제출원의 언어	10
제4장 국제등록일	10
제5장 국제등록	11
제6장 국제등록의 효력	11
제7장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11
제8장 지정국관청에 의한 심사	12
 제3절 사후지정	13
제1장 사후지정의 개요	13
제2장 사후지정일	13
제3장 사후지정의 효과	14
제4장 사후지정의 존속기간	14
 제4절 국제등록의 종속성	16
제1장 국제등록의 종속성 개요	16
제2장 기초 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의 절차	17
제3장 국제등록의 독립	19

제2편 본국관청 절차 / 21

제1절 국제출원의 개요	23
제1장 출원인 적격	23
제2장 국제출원할 때 제출할 서류	24
제3장 국제출원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24
제4장 마드리드 국제출원 서식(MM 서식) 종류	25

제2절 본국관청(특허청) 방식심사	26
제1장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방식심사	26
제2장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28
제3장 반 려	29
제4장 무효처분	29
제3절 국제출원서(MM2)와 첨부서류 작성방법	30
제1장 국제출원서(MM2)의 작성	30
제2장 국제출원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45
제4절 국제출원서(MM2)의 합치심사 및 WIPO 송부	49
제1장 국제출원서(MM2) 합치심사의 의의	49
제2장 대체서류 제출 요청	49
제3장 합치선언 및 WIPO 송부	52
제5절 WIPO 하자통지 대응	53
제1장 하자의 종류	53
제2장 하자의 치유	58
제6절 사후지정신청서(MM4) 작성방법과 첨부서류의 취급 등	61
제1장 사후지정 개요	61
제2장 사후지정신청서 작성방법	62
제3장 사후지정신청 직접출원 방법	67
제4장 첨부서류(MM18 및 MM17)의 취급 등	70
제5장 사후지정의 하자	70
제7절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MM5) 작성방법	71
제1장 국제등록 명의변경 개요	71
제2장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 작성방법	73
제8절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작성방법	78
제1장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 개요	78
제2장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작성방법	79
제3장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직접출원 방법	82
제9절 수수료	84
제1장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84
제2장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84
제3장 포기 간주 등으로 인한 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환급	88
제4장 과오납에 의한 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환급	89

제3편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 91

제1절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개요	93
제1장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개요	93
제2장 국제사무국에 수수료 납부	94
제2절 국제사무국에 대한 주요 절차	95
제1장 감축신청서(MM6)	95
제2장 포기신청서(MM7)	95
제3장 취소신청서(MM8)	96
제4장 감축·포기·취소 서식 작성 관련 사항	97
제5장 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청서(MM9)	98
제6장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청서(MM10)	98
제7장 대리인선임신청서(MM12)	99
제8장 사용권등록신청서(MM13)	99
제9장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서(MM14)	100
제10장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서(MM15)	100
제11장 명의인의 처분권 제한등록신청서(MM19)	100
제12장 절차계속신청서(MM20)	100
제13장 국제등록부의 기록 정정 신청서(MM21)	101
제3절 유럽연합의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신청서	102
제1장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신청서(MM16)	102

제4편 지정국 절차 / 103

제1절 지정국 절차 개요	105
제1장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	105
제2장 지정통지 언어	105
제3장 각 체약당사자를 지정한 국제등록의 효력	105
제4장 거절이유 통지 기간	106
제5장 지정체약당사자에서의 심사	107
제2절 주요 지정국 절차	108
제1장 중국(China, CN)	108
제2장 미국(USA, US)	110
제3장 일본(Japan, JP)	114
제4장 유럽연합(European Union, EM)	117

제5편 전자출원 / 121

제1절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요	123
제1장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요	123
제2절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127
제1장 국제출원서 및 첨부서류 작성	127
제2장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제출	134
제3장 PKEAPS를 이용한 중간서류 제출	143

제6편 참고자료 / 145

1. 지역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147
2.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목록	148
3. 특허청 마드리드 국제출원 전용홈페이지	151
4. WIPO 마드리드 국제출원 사이트	152
5. 수수료 계산기 이용	155
6. Madrid Monitor	157
7. 주요 외국 상표 검색	158
8. 영문 상품 검색	161
9. WIPO 계좌 관련 정보	166
10.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연락처	169

제 1 편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제1절 마드리드 국제출원 소개

제2절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3절 사후지정

제4절 국제등록의 종속성

1 Section

Madrid guide

마드리드 국제출원 소개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1. 상표의 해외출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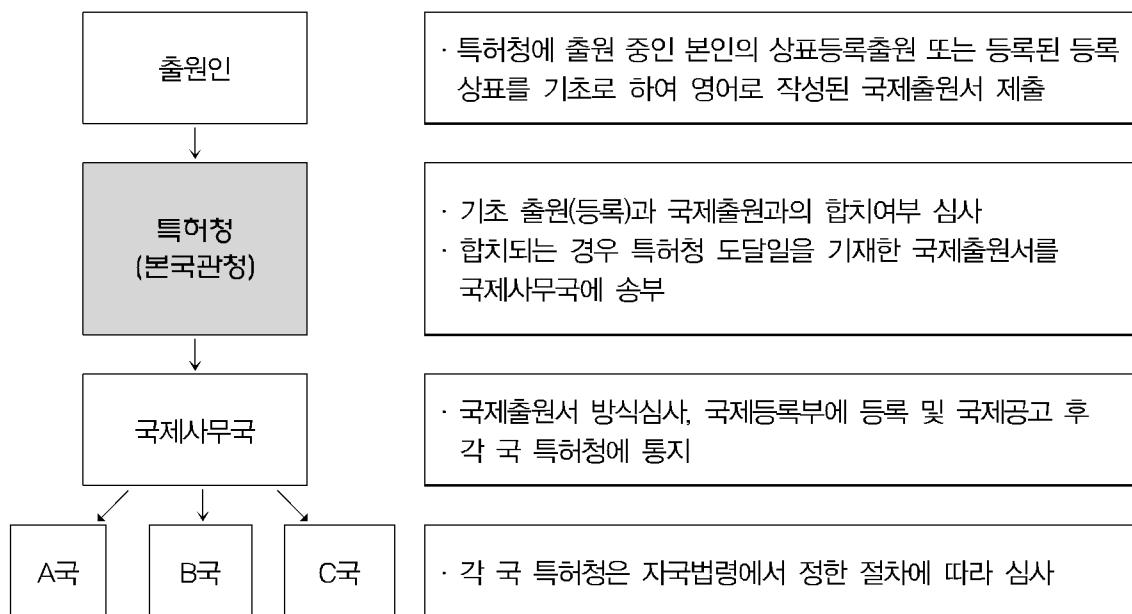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파리조약을 이용하여 각 국별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하는 방법입니다.

2. 마드리드 의정서

마드리드 의정서란 국가별로 각각 출원해야 하는 전통적인 해외출원 방법 대신에 하나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조약입니다.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의정서”라 한다)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체약당사자의 특허청(본국관청)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보호 받고자 하는 체약당사자(지정국)을 명시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합니다.
- (2) 국제사무국은 접수한 국제출원서의 내용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한 후 각 지정국에 이를 통지합니다.
- (3) 지정 통지를 받은 각 지정국관청은 자국 법령에 따라 보호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1년(또는 각 국의 선언에 의해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에 거절 이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국제등록상표는 자동으로 당해 국가에서 보호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기업)이 마드리드 국제출원하는 경우의 절차도



3. 주요 용어 설명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마드리드 의정서 : 마드리드 의정서는 1989. 6. 27.에 채택되어 1995. 12. 1.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되어 1996.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 1. 10.에 가입하였고 2003. 4. 10.부터 마드리드 국제출원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나. 국제상표등록출원 : 우리나라에서 표장(상표)을 보호(등록)받기를 원하여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출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 상표등록출원은 ‘국내출원’과 동일한 절차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 국제출원 : 좁은 의미로는 국내 출원인이 우리나라 특허청(본국관청)을 통하여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각 국을 지정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출원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국제출원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모두 일컬어 국제출원이라고 합니다.

라. 국제등록 : 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국제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국제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 본국관청(office of origin)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진행 중인 국가의 특허청을 말하며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국제등록존속기간 갱신신청서, 명의변경신청서를 송부하는 업무와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각종 하자통지에 대한 대응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본국관청은 국제출원이 기초 출원(등록)상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 출원(등록)의 효력소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소멸 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는 업무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국제출원과가 본국관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 지정국관청(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당해 지정국의 영역 안에서 보호해 줄 것인지를 심사하는 관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국제상표심사팀이 지정국관청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서는 본국관청에 출원 중인 국내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국관청에 이미 등록된 국내 등록상표가 있어야만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자를 기초출원, 후자를 기초등록이라고 합니다.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은 하나의 국제출원에 두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4. 의정서 가입국

2018. 1.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100개 체약당사자(국가 및 기구)가 가입하고 있으며 제6편 참고자료에서 확인하거나 WIPO 홈페이지 (<http://www.wipo.int/madrid/en/memb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해외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1. 해외 직접출원의 단점

- 가. 파리루트에 의한 해외 직접출원은 상표를 출원할 국가 수만큼 다수의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별로 요구하는 언어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된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자국의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대리인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 다. 한편 상표등록 후의 사후관리(주소변경, 존속기간 갱신, 명의변경 등)도 각 국에 따로 일일이 하여야 하므로 언어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1개의 표장으로 해외 상표출원을 하는 대상국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불편함은 가중됩니다.

2. 개별국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의 비교

개별국 직접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pre> graph TD Inventor[출원인] --> A[A국] Inventor --> B[B국] Inventor --> C[C국] </pre>	<pre> graph TD Inventor[출원인] --> KTO[한국특허청
(본국관청)] KTO --> WIPO[WIPO
(국제사무국)] WIPO --> A[A국] WIPO --> B[B국] WIPO --> C[C국] </p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국별 언어로 다수의 출원서 작성 • 각 국별 출원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출원서 작성 • 하나의 출원절차

3.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장점

가. 출원 절차가 간편(하나의 출원 절차)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여 다수의 국가에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경우 본국 관청(우리나라 특허청)에 하나의 공식 언어(우리나라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영어를 선택)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가에 각각 납부하여야 할 국제출원 수수료도 국제사무국에 일괄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나. 비용 절감 가능

해외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국에서 요구하는 서식과 언어로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하므로 각국 절차 진행에서 대리인의 보수, 번역 등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는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각국의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국관청의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당해 출원인이 의견서나 보정서 등을 당해 지정국관청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 상표권 취득 여부의 파악이 용이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는 지정국관청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국제사무국에 거절이유 통지기간을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또는 18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국이 이 기간 내에 거절이유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하여야 하므로, 출원인은 일정 기간이 되면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라. 상표권 관리가 간편

마드리드 시스템에서는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로 상표권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여러 국가를 지정하더라도 하나의 국제등록 번호로 관리되므로 한번에 갱신, 정보변경, 소유권 이전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국마다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 사후지정에 의한 지정국 추가 가능

사후지정 절차에 의하여 국제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국제 출원 시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가 새로 의정서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를 사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 시에 특정 국가에 대하여 상품을 한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국제등록의 범위 이내라면 지정하지 않았던 상품을 사후에 추가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Section**

Madrid guide

마드리드 국제출원**제1장 국제출원의 대상****1. 대상이 되는 표장**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기초출원(등록)의 표장과 엄격히 동일하여야 합니다.

2. 지정 상품의 범위

국제출원에서 지정 가능한 상품은 기초 출원(등록)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그 범위 이내이어야 합니다.

제2장 국제출원의 출원인**1. 국제출원인은 기초출원(등록)의 출원인과 동일해야 합니다.****2. 국제출원인의 자격**

가.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자사(국가 또는 기구)의 국민이거나, 그 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갖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이 상기 가, 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3장 국제출원의 언어

1. 출원언어

- 가. 국제출원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본국관청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 나. 대한민국 특허청이 정한 언어는 영어입니다.

2. 국제출원 이외의 통신언어

- 가. 국제사무국과 대한민국 특허청(본국관청) 간의 언어는 영어입니다.
- 나. 국제사무국과 출원인 또는 국제등록 명의인 간의 언어는 국제출원서를 작성한 언어(우리나라는 영어)입니다. 다만, 당해 출원인 또는 국제등록 명의인이 국제사무국에 희망하는 통신언어로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를 국제출원서에 표시한 경우에는 그 표시한 언어가 됩니다.

제4장 국제등록일

1.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에 의한 국제등록일

- 가. 국제출원은 반드시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국제출원의 접수일은 본국관청이 실제로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이 됩니다.
즉 한국특허청에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의 접수일이 됩니다.
- 다.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접수한 때에는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2.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에 의한 국제등록일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제5장 국제등록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이 의정서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해당 국제출원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당해 국제등록 사실을 지정국 관청에 통지함과 동시에 본국관청에 통지하며, 국제등록 명의인에게 국제등록 증명서를 송부합니다.

제6장 국제등록의 효력

각 체약당사자에서는 국제등록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7장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에 한번의 갱신 신청을 하여, 각 지정국 모두에 대하여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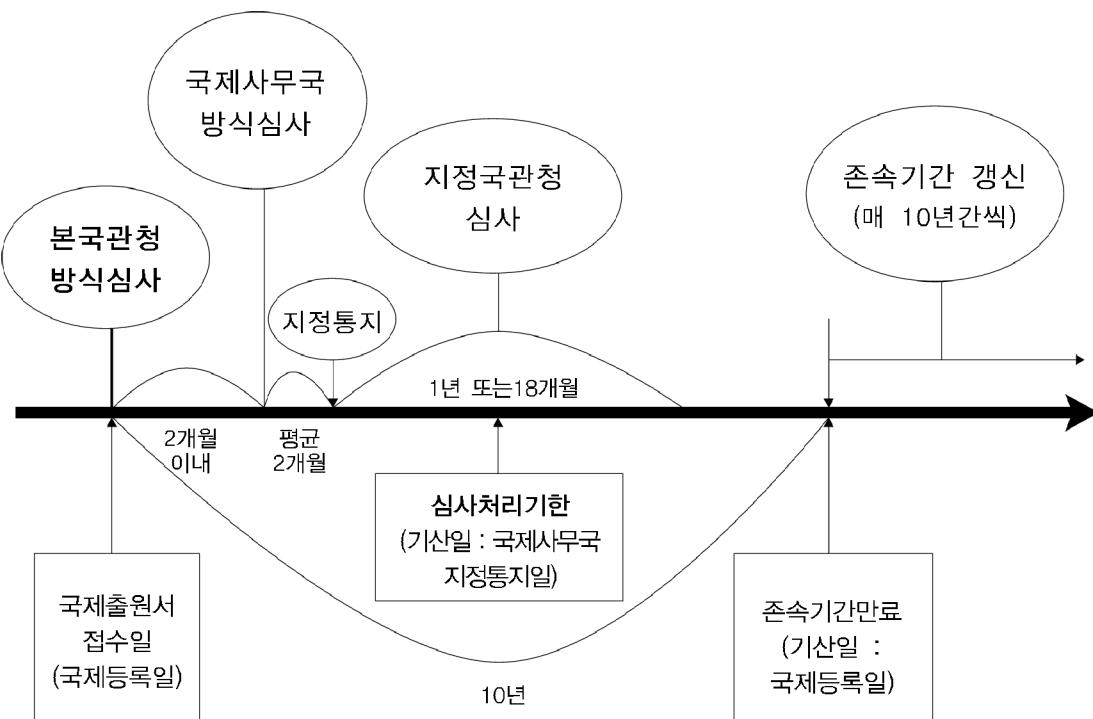
제8장 지정국관청에 의한 심사

지정국관청은 각 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제출원의 보호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또는 각 국의 선언에 의해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이유를 통지함으로써 당해 상표 보호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지정체약당사자으로부터의 거절통지서는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각 체체약당사자 관청이 선택한 언어가 사용됩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별 기간



3**Section**

Madrid guide

사후지정**제1장 사후지정의 개요**

1. 사후지정은 국제출원이 국제등록된 후의 절차로서 국제출원 시 지정하지 못한 지정국을 추가 지정하거나, 지정 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지정국의 추가는 의정서 가입국이 대상이며, 국제출원을 할 때 지정하지 않은 국가는 물론 국제출원 후의 신규 가입국(사후지정서 제출 시 가입이 완료된 국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지정상품의 추가는 국제출원 시 지정상품을 감축한 국가에 대하여 국제 등록부에 등재된 지정 상품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넘는 새로운 지정 상품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사후지정일**1.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에 의한 사후지정일**

국제사무국이 사후지정신청서를 본국관청(대한민국 특허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접수한 때에는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이 사후지정일이 됩니다.

2.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에 의한 사후지정일

- 가. 사후지정신청서를 국제등록 명의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때에는 국제사무국이 사후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사후지정일이 됩니다.
- 나. 사후지정신청서를 본국관청(대한민국 특허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때에는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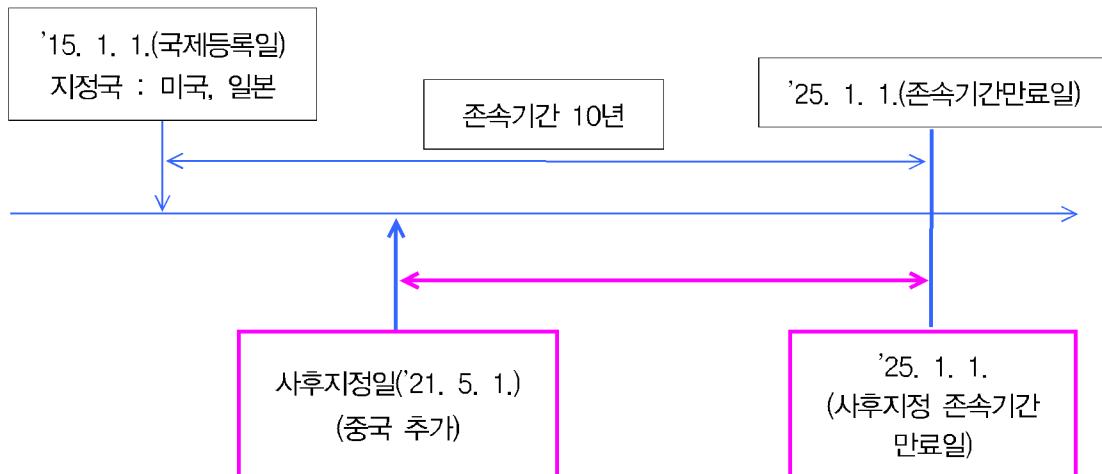
제3장 사후지정의 효과

1.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 후에 제출된 사후지정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동시에 국제등록 명의인뿐만 아니라 해당 사후지정이 본국관청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본국관청에도 통지합니다.
2. 각 지정국에서는 사후지정일에 그 국가에 직접 출원된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사후지정 통지일로부터 1년(또는 18개월) 이내에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국에서 등록된 경우와 같은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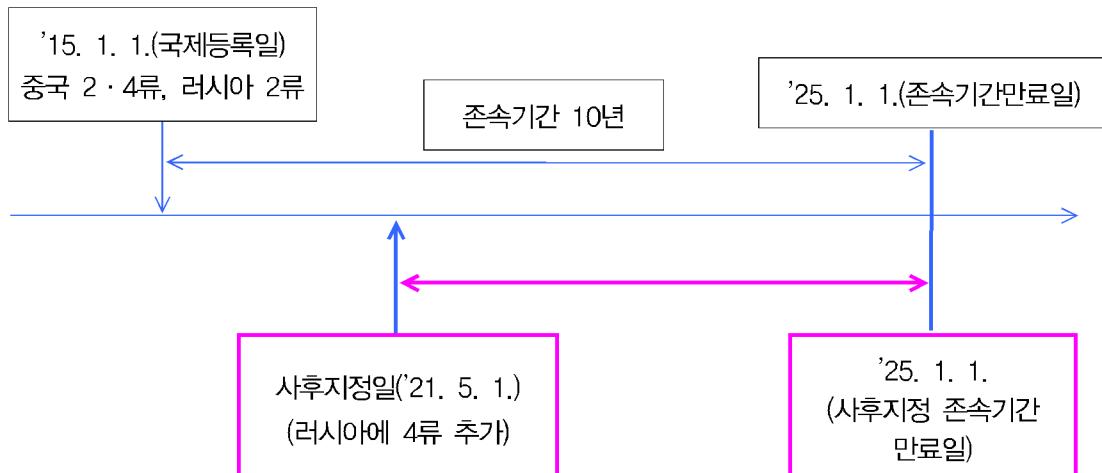
제4장 사후지정의 존속기간

사후지정으로 추가된 지정국가 또는 지정 상품의 존속기간은 사후지정의 기초가 된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사후지정일로부터 기산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정국가 추가사례〉



〈지정상품 추가 사례〉



4

Section

Madrid guide

국제등록의 종속성

제1장 국제등록의 종속성 개요

-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거절 · 포기 · 무효 등이 된 경우(아래의 제3자에 의한 집중공격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와 기초출원인의 자진 감축 보정, 기초등록권자의 존속기간 미갱신 등 스스로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킨 경우 모두 포함)에는 국제등록의 지정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제등록이 취소되고, 그 결과로서 모든 지정국에서 국제등록이 취소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중공격(Central Attack)

좁은 의미의 집중공격은 제3자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격방법을 말합니다. 본국관청에 출원 중인 기초 출원(등록)을 소멸시키게 되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단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까지 한꺼번에 모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본국관청의 기초 출원(등록)을 집중공격하여 국제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집중공격은 제3자의 기초 출원(등록)에 대한 공격 외에 출원인의 자진 감축 보정 등 자의에 의한 기초출원(등록) 효력소멸 사항까지 포함하는 등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 출원(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어 국제등록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 국제등록에서 지정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등록의 종속성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는 각 지정국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상표등록출원(파리루트에 의한 직접출원)을 한다면 국제등록일(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참조)

3. 본국관청은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효력이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경우를 확인하고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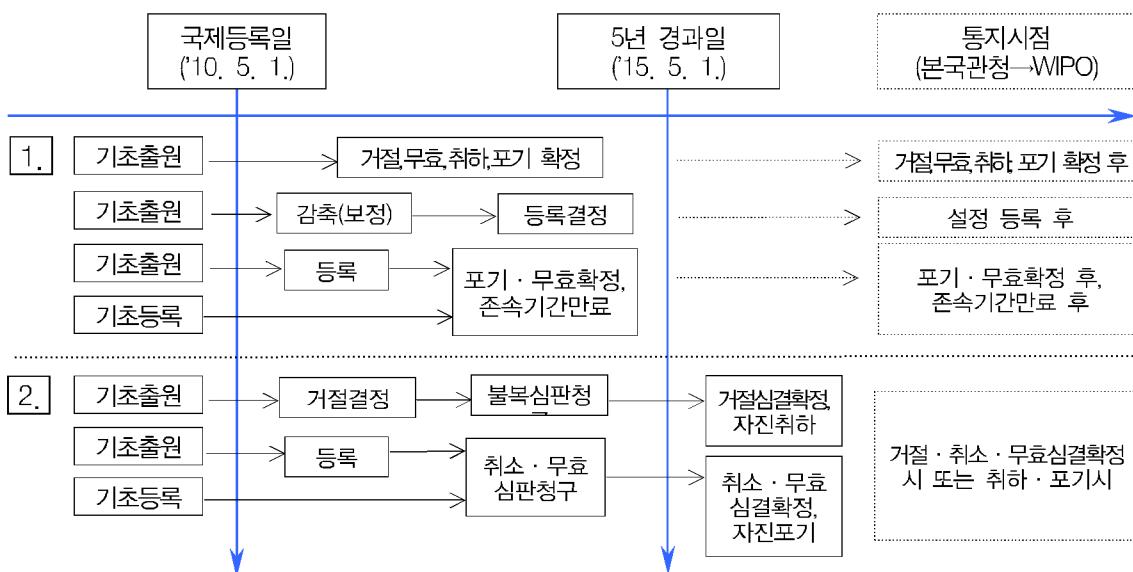
제2장 기초 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의 절차

1. 본국관청

본국관청은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기초 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사전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효력소멸 사항을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효력 소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 5년 이내에 거절, 무효, 취하, 포기가 확정
- 나. 거절결정불복심판·소송이 5년 이내에 청구되고 거절이 확정
- 다. 이의신청, 등록무효(취소)심판이 5년 이내에 청구되고 거절, 무효, 취소, 포기 확정
- 라. 5년 이내에 지정 상품이 보정 때문에 감축

〈 본국관청의 기초 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 사례 〉



2. 국제사무국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에서 통지되어온 기초 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서를 기초로 국제등록부에 효력소멸 내용을 등재한 후 지정국 및 국제등록 명의인에게 다음의 내용을 통보합니다.

- 가. 국제등록부로부터 취소된 날짜
- 나. 취소된 지정 상품

3. 지정국관청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기초 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서를 기초로 지정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 중인 경우에는 취하 간주하여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효력을 소멸 시킵니다.

4. 국제등록 명의인

기초 출원(등록) 효력소멸 통지로 지정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 명의인은 취소된 지정 상품에 관하여 지정국에 상표등록출원(재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출원은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 직접출원을 의미하므로 1년 또는 18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에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에도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 가. 국제등록부에 취소가 등재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표등록출원을 할 것
- 나. 국제등록에서 취소된 지정 상품의 범위보다 상표등록출원의 지정 상품의 범위는 작거나 같아야 함
- 다. 지정국에서 정한 상표등록출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

제3장 국제등록의 독립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종속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으로부터 독립합니다.



Q 집중공격(Central Attack)은 누구에게 제일 효과적인 제도입니까?

⇒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국제출원이 각 국에 지정 통지되어 심사 중이거나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취소시키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즉, 기초 출원(등록)이 있는 본국 관청에 이의신청이나 등록된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본국관청에 있는 기초 출원(등록)만 효력을 소멸시키면 효력이 소멸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동적으로 각국에서의 국제출원의 효력도 소멸되므로 절차적으로나 비용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Q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 후 본국관청에 무효심판이 계류 중인 경우 집중공격의 대상이 됩니까?

⇒ 무효심판으로 5년의 기간 만료 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집중공격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효심판 제기일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제2편

본국관청 절차

제1절 국제출원의 개요

제2절 본국관청(특허청) 방식심사

제3절 국제출원서(MM2)와 첨부서류 작성방법

제4절 국제출원서(MM2)의 합치심사 및 WIPO 송부

제5절 WIPO 하자통지 대응

제6절 사후지정신청서(MM4) 작성방법과 첨부서류의 취급 등

제7절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MM5) 작성방법

제8절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작성방법

제9절 수수료

1 Section

Madrid guide

국제출원의 개요

제1장 출원인 적격

1. 출원인 적격(본국관청인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진 자)

- 가. 대한민국 국민(자연인과 법인을 포함)이거나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 중인 자기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자기의 등록상표를 가진 자
-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대한민국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출원 가능】

- ① 대한민국 국민 2인이 공동출원인인 기초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서의 출원인란에 2인 모두를 기재(1인이 단독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면 기초출원인과 국제출원인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국제출원 전에 기초출원의 출원인을 1인으로 만든 후 가능)
- ② 기초출원의 출원인이 2인인데 1인만 한국인이고 다른 1인은 대한민국에 주소, 영업소 등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국제출원서의 출원인란에 모두 기재하면 가능(외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필요)
- ③ 대한민국 국민 1인이 기초 출원(등록)을 2개 이상 갖고 있고 기초출원의 표장이 모두 동일한 경우 2개 이상의 기초 출원(등록)을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가능

【출원 불가능】

- ① 기초출원의 출원인이 2인인데 1인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른 1인은 대한민국에 주소, 거소, 영업소 등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 국제출원시 출원인란에 2인 모두 기재하거나(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주소 등을 갖고 있지 않음) 대한민국 국민 1인만을 기재(출원인 불일치)하는 경우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불가

② 기초출원 1건은 대한민국 국민 1인(홍길동)으로 지정상품이 4류, 다른 기초 출원 1건은 2인(대한민국 국민 홍길동과 한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으로 지정상품 7류라고 가정하고, 2건의 기초출원의 표장이 같아서 이 2건의 기초출원을 기초(표장은 같으므로 동일 표장 제출, 지정상품은 4류 및 7류)로 국제출원하는 경우 : 국제출원서 출원인란에 홍길동만 기재하거나(출원인 불일치), 2인을 모두 기재(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주소 등이 없음) 시 국제출원 불가

제2장 국제출원할 때 제출할 서류

1.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1부를 대한민국 특허청(본국관청)에 제출
2. 국제출원서
영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WIPO MM2 서식) 1부를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
3. 기타 서류
 - 가. 미국(US)을 지정체약당사자에 포함시키는 경우 “사용의사선언서”(MM18) 1부
 - 나. 유럽연합(EM)을 지정체약당사자에 포함시키는 경우 유럽연합의 영역 안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등록의 우선순위를 주장할 때에는 “선순위권주장 신청서” (MM17) 1부



Q 국제사무국에 출원인이 직접 국제출원서(MM2)를 송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국제사무국에서는 기재내용의 여부에 관계없이 접수하지 않습니다. 출원서류는 출원인에게 반환되며 수수료도 반환됩니다.

제3장 국제출원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1. 작성 언어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출 시 영어만 가능

2. 칸이 부족하면 추가용지(Continuation Sheet)를 만들어 기재
3. 국제출원서 등 각각의 양식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없는 난이라도 삭제하지 말고 공란으로 남겨 둠
4. 국제출원에 따른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서면에 제출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제4장 마드리드 국제출원 서식(MM 서식) 종류

서식번호	서식명	제출처		비고
		한국 특허청 (본국관청)	국제사무국	
MM 2	국제출원서	○	×	
MM 17	선순위권주장신청서	○	×	
MM 18	사용의사선언서	○	×	
MM 4	사후지정신청서	○	○	
MM 17	선순위권주장신청서	○	○	
MM 18	사용의사선언서	○	○	
MM 5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	○	△	출원인이 선택 ※ 국제등록 명의변경 시 양수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국관청에만 제출
MM 11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	○	
MM 6	감축신청서	×	○	
MM 7	포기신청서	×	○	
MM 8	취소신청서	×	○	
MM 9	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청서	×	○	
MM 10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청서	×	○	
MM 12	대리인선임신청서	×	○	
MM 13	사용권등록신청서	×	○	
MM 14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서	×	○	
MM 15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서	×	○	
MM 19	명의인의 처분권 제한등록신청서	×	○	
MM 20	절차계속 신청서	×	○	EUIPO에만 제출 가능
MM 21	국제등록부 정정요청서	×	○	
MM 16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신청서	×	×	EUIPO에만 제출 가능

2

Section

Madrid guide

본국관청(특허청) 방식심사**제1장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방식심사**

- 본격적인 국제출원서(MM2)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상에 흡결이 있는지 방식심사를 합니다. 방식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보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합니다.

- 가. 출원인 명칭 및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나. 대리권의 흡결이 있는 경우
- 다. 국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내 수수료는 출원인이 WIPO에 직접 송부하는 국제출원 수수료와는 별개로 본국관청인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 제출서류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 미납 및 부족 시에는 보정통지를 합니다.

(2018. 1. 현재)

신청서류 종류	금액(원)	
국제출원 신청 수수료	전자문서	5,000
	서 면	15,000
사후지정 신청 수수료	전자문서	5,000
	서 면	15,000
국제등록조속기간갱신 신청 수수료	전자문서	3,000
	서 면	13,000
국제등록명의변경 신청 수수료	전자문서	3,000
	서 면	13,000
절차 보정료 (위임관계로 인한 절차보정시에만 부과)	전자문서	4,000
	서 면	14,000

〈참고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 용도

【제출구분】 국제출원서등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하자보정서등

【제출인】

【성명(명칭)】 김충원

【특허고객번호】 4-2015-123456-7

【사건과의 관계】 국제출원인

【대리인】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하는 경우 해당 없음.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절차가 등록된 포괄위임번호 기재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예) 국제출원서 : 40-2015-1234567

대체서류, 하자보정서, 국제출원보정서 : KR-2015-1234567

(【국제등록번호】)

예) 사후지정서, 명의변경신청서 : 91234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8-5-2015-001356625

【대체사항】

【대체할 서류(보정할 서류)】

예) 대체서류 :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명의변경신청서

하자보정서 : 하자보정서

국제출원보정서 : 국제출원제출서

【대체할 페이지(보정대상항목)】

예) 대체서류 : 1, 3, 5, MM/8

국제출원보정서 : 수수료, 첨부서류, 사건의 표시, 대리인

【보정사항】

【보정할 서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보정대상항목】 출원인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김충원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김 충 원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제2장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1. 중간서류의 종류

중간서류에 대한 방식심사는 기본적으로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방식심사와 동일하며 중간서류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 국제출원보정서

특허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또는 출원인이 자진해서 제출하는 서류로 기본적인 보정내용은 수수료, 위임관계, 출원번호 및 출원인의 주소 등입니다. 위임관계에 대한 보정시에는 절차보정료가 부과됩니다.

나. 대체서류 제출서

특허청의 대체서류제출 요청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최초 제출한 국제출원 서식(MM 서식)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대체할 페이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 하자보정서

하자보정서는 출원인이 상표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하며, 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국제출원 하자보정서는 반려 대상입니다.

라. 국제출원취하서

국제출원 취하는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발송하기 전에 국내절차에 대해서만 취하가 가능하며,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발송한 후에 국제출원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려 대상입니다.

제3장 반 려

방식심사 결과 아래와 같은 반려사항이 있을 때는 서류반려이유안내서를 통지합니다.

1. 국제출원의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서류가 아닌 경우
 2. 국제출원의 경우 기초 출원(등록)의 출원인 및 명의인이 아닌 경우
 3. 사후지정의 경우 사후지정하고자 하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아닌 자가 사후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 기타 반려사유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참조

제4장 무효처분

특허청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무효처분 시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예고문이 부기됩니다.

3

Section

Madrid guide

국제출원서(MM2)와 첨부서류 작성방법**제1장 국제출원서(MM2)의 작성**

1. 국제출원은 반드시 공식 서식(MM2)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WIPO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국제출원서(MM2)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ncludes the following number of 란

- continuation sheet(s) : 사용한 연속용지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 전자출원시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MM17 form(s) : 첨부된 MM17(선순위권주장신청서)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Applicant's reference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정리번호로서 영어 알파벳, 아라비아숫자 또는 ‘.’로 구성된 서류기호를 기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제사무국은 국제수수료의 확인을 위해 이 난에 기재된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호를 기재할 것을 권합니다.

- For use by the office 란은

- Office's reference : 본국관청 기재란이므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I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 IS THE OFFICE OF ORIGIN

- “Republic of Korea” 또는 “KR”로 기재합니다.
- 국제출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서류 제출 시 Korea라고만 기재하면 외국인들은 북한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epublic of Korea”라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2 APPLICANT

- (a)란은 출원인이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과 짐표 그리고 이름의 순서로 음역하여 기재하며 성은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가령 홍길동인 경우
[예] HONG, Gil-Dong (○)

HONG Gil-Dong (×)(짐표가 없는 좌측 표기는 영미인에게 어느 것이 성인지 의문을 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완전한 공식명칭을 음역 또는 번역하여 기재합니다.
[예] Samsung Electronics Co., LTD

- (b)란에는 우편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Republic of Korea
- (c)란은 2(b)항목 이외의 주소로 통지서를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워둡니다.

※ (c)란은 출원인의 등록 주소 외에 우편물을 직접 받아보고자 하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기재하는 곳으로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c)란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인에게 모든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d)란은 국제사무국이 출원인과 연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면 WIPO의 모든 통지서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 (e)란은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용 언어를 선택하는 난으로 영어 · 불어 ·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f)란은 출원인이 개인과 법인 중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는 난입니다. 미국을 지정한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외에도 요구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i)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표시하는 난으로, 출원인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ex. KR (Korea라고만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ii)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표시하는 난으로,
-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종류를 Corporation과 같이 기재합니다.

주식회사	Corporation
비법인회사	Unincorporated association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공동사업체	Partnership
합병회사	Joint venture

- 그 법인의 설립근거법의 해당 국가명 또는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ex. Republic of Korea 또는 KR

-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는 「APPLICANT」란에 기재하고, 그 밖의 출원인에 대해서는 출원인 1인마다 「CONTINUATION SHEET」(연속용지)에 기재합니다.

3 ENTITLEMENT TO FILE

(a) 본국관청과 출원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i) 1번 항목의 체약당사자가 국가이고 출원인이 그 국가의 국민인 경우

(ii) 1번 항목의 체약당사자가 국가간 기구이고 출원인이 그 기구의 회원국의 국민인 경우(선택하고 해당 국가명 기재)

(iii) 1번 항목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출원인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iv) 1번 항목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출원인이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b) 출원인이 (a)항목에서 주소(iii) 또는 영업소(iv)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고,

■(b)항목에 기재한 주소가 1항목의 체약당사자(본국관청)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b)항목 공란에 본국관청 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a)(iii)을 선택하였다면 본국관청 영역 내에 있는 주소(i)를, ■(a)(iv)을 선택하였다면 본국관청 영역 내에 있는 영업소의 주소(ii)를 기재합니다.

4 APPOINTMENT REPRESENTATIVE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대리인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1명만 선임 가능함).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면 WIPO의 모든 통지서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 국제출원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국제사무국에 위임장 또는 그 밖에 별도의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5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 상표등록출원에 기초한 경우, 그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합니다.
- 등록상표에 기초한 경우, 그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합니다.
다만, 기초등록의 출원번호는 기초출원번호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하면 안됩니다.
-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상표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란에 시기상 각각 최우선의 것을 기재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CONTINUATION SHEET」에 기재합니다.

6 PRIORITY CLAIMED

- Office of earlier filing : 선출원을 한 관청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ex.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Number of earlier filing :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 Date of earlier filing : 선출원의 출원일자를 기재합니다.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행 출원이 국제출원의 10에 열거된 상품 모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6의 공란에 10에 열거된 상품 중 선출원에 포함된 상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10에 열거된 상품 류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 상품의 류 번호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이 최우선인 것을 「PRIORITY CLAIMED」란에 기재하고, 그 외의 것은 「CONTINUATION SHEET」에 기재합니다.

- 우선권 증명서류(선출원의 사본)는 국제출원 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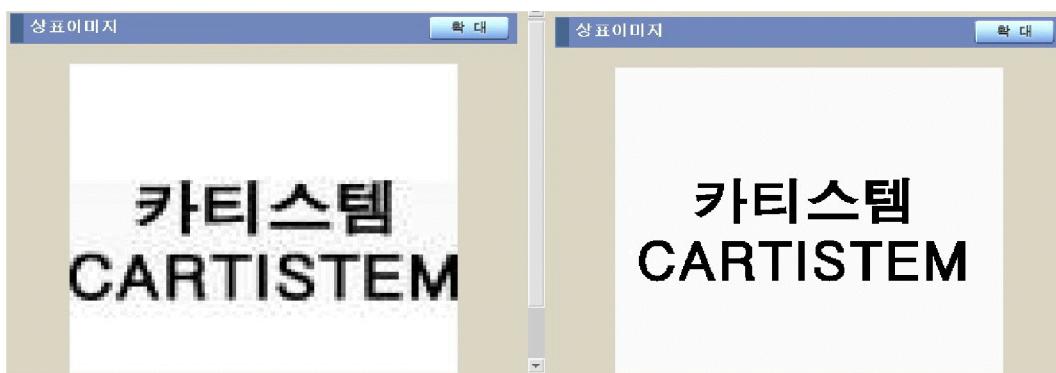
※ 우선권 주장일이 국제출원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닌 경우 국제사무국은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 취지를 출원인 및 본국관청에 통지합니다. 따라서, 그 우선권 주장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7 THE 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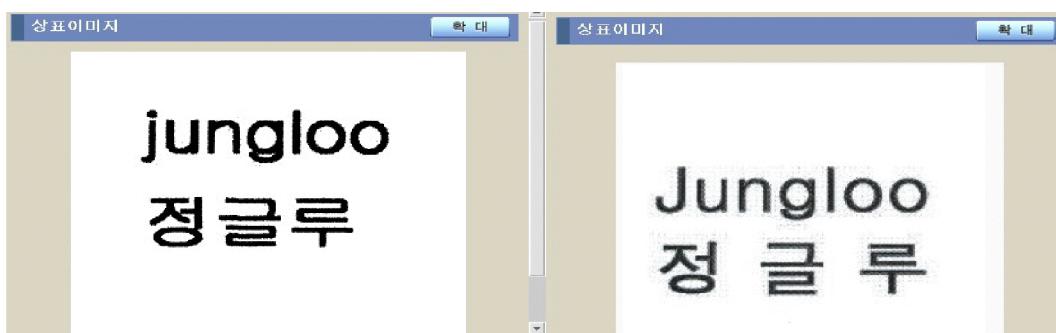
(a)란에 표장의 견본을 부착합니다.

- 견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나타나는 표장과 완전히 동일하여야 합니다. 가로, 세로를 같은 비율로 축소하거나 확대한 것은 상관없으나 모양이 변형되어서는 안되며, 문자는 글씨체도 동일해야 합니다.
- 아래의 견본들은 본국관청으로서의 특허청에서 표장의 불일치로 대체를 요구받은 사례입니다.

이미지 불명확



영문 표기의 대문자를 소문자로 표기 및 글자체의 상이



흑백표장의 색채표장 제출



- 표장의 크기는 8cm×8cm(가로×세로)로 합니다.
 - 표장의 견본은 선명하여야 합니다.
 - 표장의 견본은 타자기로 치거나, 인쇄하거나, 붙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원시 이미지(jpg, tif) 파일을 삽입합니다.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표장이 흑백인 경우 이곳의 견본 또한 흑백이어야 하고, 색채인 경우 이곳의 견본 또한 색채이어야 합니다.
 - 기초출원(등록)의 표장 외에 불필요한 요소가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b) 출원인이 표장의 색채를 표장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주장하나, 본국관청이 색채로 된 표장을 등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표장을 첨부하는 난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색채표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란으로 남겨 둡니다.
- (c) 표장이 표준문자로 된 표장으로 간주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표장에 특수문자 또는 도형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할 수 없습니다.
- (d) 표장이 색채 또는 색채들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표시합니다.

8 COLOR CLAIMED

이 항에서 색채주장을 하지 않아도 기초표장에 사용된 색채는 당연히 보호됩니다.

- (a) 색채를 표장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주장하는 경우 상자에 표시하고, 주장하는 색채 및 색채의 조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미국은 색채를 포함한 표장에 관해서 색채의 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미국특허청으로부터 가거절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 주장하는 각 색채에 대하여 그 색채로 된 표장의 주요 부분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색채주장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였더라도 이 난의 기재는 임의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 난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색채표장이면서 표장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미기재시 거절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장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예시

- (a) The colors BLUE and White are claimed as a feature of the mark
- (b) The color BLUE appears in the outlining of the word CYDLE and the color WHITE appears in the inside of the word CYDLE

9 MISCELLANEOUS INDICATIONS

(a) Transliteration of the mark

■(a)의 표장에 라틴문자 이외의 철자가 포함되었거나, 아라비아숫자, 로마숫자 이외의 숫자(예 : 한자 四)로 표기되어 있거나, 그러한 표시를 포함하는 경우에 음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수사항).

예) 표장 **판타스틱** ‘판타스틱’의 음역인 Pantastic로 기재

예) 표장 **홍길동 千四** Hongkildong 1004로 기재

(b) Translation of the mark

-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번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출원인의 선택사항으로, 지정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한 번역 요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미국을 지정한 경우 표장이 영어 본래의 뜻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 (c) 에 체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재하는 것이 요망됩니다.(cf. 영어 본래의 뜻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 Sweet가 맛있다, 달다가 아닌 친절하다, 상냥하다라고 쓰일 경우 등)

(c) The words contained in the mark have no meaning

- 표장에 있는 단어가 번역될 수 없는 것, 즉 조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곳에 표시합니다. 이 난은 체약당사자의 관청이 불필요하게 번역을 요구하는 가거절통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미국을 지정한 경우 본란을 선택하는 것이 요망되며, 본란을 선택했더라도 (즉 의미를 갖지 않는 조어임을 표시하였더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가거절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b), (c)항목을 동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d) Where applicable, check the relevant box or boxes below :

- 입체표장
- 소리표장
- 단체표장, 증명표장 또는 보증표장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e) Description of the mark

- (i) 본국관청서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포함된 표장에 대한 기술 또는 설명(Description)만이 국제출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ii) 본국관청에서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출원인이 기재 하길 희망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기초출원(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설명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표장의 사용 또는 그 명성에 대한 진술이 아닌 표장 자체에 대한 설명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 홀로그램 등의 표장은 (d)란에 종류를 기재할 난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표장의 종류가 예시되지 않는 표장은 이 난 9 (e)에 상표의 종류가 홀로그램상표라는 등으로 표장의 종류를 기재한 후 설명(Description)을 추가하면 됩니다.

(f) Verbal element of the mark

- 출원인은 무엇을 표장의 본질적인 언어요소라고 생각하는지를 이곳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는 전적으로 국제사무국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g) The applicant declares that he wishes to disclaim protection for the following element(s) of the mark:

- 표장의 어떤 요소에 대해 보호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이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제등록부에 그러한 포기를 포함하여 달라는 지정국관청의 요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제출원에서의 포기는 국제등록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지정국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포기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반대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포기가 있더라도 이를 국제출원에 포함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0 GOODS AND SERVICES

- 상품의 분류는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제1조에 규정된 국제분류를 따르고, 상품의 명칭은 기초출원(등록)의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 영문 명칭으로 번역하여 기재합니다.
- 「Class」난에 류 번호를 기재하고, 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류 번호 순으로 기재합니다.
- 「Goods and services」난에는 상품의 명칭을 가능한 국제분류상의 목록에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히 표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명칭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상품 목록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범위보다 좁을 수는 있으나 더 넓어서는 안됩니다.
- 상품 명칭을 기재할 때 상품 명칭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시해야 합니다.
- (b)란은 하나 이상의 지정국과 관련하여 상품 목록의 감축을 원할 경우 기재합니다. 감축의 내용은 각각의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해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감축을 하더라도 10 (a)에 기재된 상품은 국제등록에 포함되고, 추가수수료를 계산할 때 고려되며,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체약당사자 명칭의 앞에 있는 속에 ×표시를 합니다. 신규 체약당사자여서 국가코드, 체약당사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Others:」란에 국가코드 및 체약당사자명을 기재합니다.
- EM를 지정하는 경우, EUPO 내에서의 이의신청, 취소, 무효심판 등 절차진행 과정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제2언어(second language)로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표장의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나, 별도의 서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체약당사자(브르나이 다루살람, 인도, 아일랜드, 레소토, 모잠비크,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고, 체약당사자를 지정함으로써 표장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선언서(MM18)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12 SIGNATURE BY THE APPLICANT OR HIS REPRESENTATIVE

서면 출원 시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 전자출원 시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CERTIFICATION AND SIGNATUR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OFFICE OF ORIGIN

본국관청 기재란으로 출원인은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FEE CALCULATION SHEET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 (b)란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Holder of the account : 계좌개설인의 성명
- Account number : 계좌번호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s : 인출지시자

(b) AMOUNT OF FEES

- 납부할 수수료의 액수는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의 수수료자동계산기(Fee Calculator)에서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스위스프랑(CHF)이며 출원서를 제출할 날짜와 가장 근접한 과거일자, 출원의 종류(국제출원, 사후지정, 존속기간갱신 등), 표장의 흑백유무, 지정국 체크에 따른 지정국수 등을 입력하면 아래의 수수료 금액으로 자동계산됩니다.

- Basic fee (기본수수료) : 표장이 흑백인 경우 653 CHF, 색채인 경우 903 CHF
- Supplementary fee (추가수수료) : 3개류 초과 1류당 100 CHF(3개류까지는 무료)
- Complementary fee (보충수수료) : 1개국당 100 CHF × 지정국가(개별 수수료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의 수
- Individual fees(개별수수료) : 개별국가에서 보충수수료 및 추가수수료 대신 징수하기로 선언한 수수료로서 개별국의 환율의 변동, 국내 수수료의 변동 등에 따라 수시변동하며 선언국마다 수수료내역은 상이합니다.
※ 개별수수료 선언국의 수수료 내역은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madrid/en/fees>)의 「Individual Fees under the Madrid Protoco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개별수수료를 받는 국가에 대하여 일부 상품류를 감축하는 경우, 감축하는 류의 개수만큼 감액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품류 개수는 개별 수수료를 받는 각 지정체약당사자별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제사무국에서는 GRAND TOTAL(총액)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므로 총액란만 기재하고 개별 항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c) METHOD OF PAYMENT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란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당사자의 신분을 기재합니다. ex. Applicant 또는 Representative 등 해당하는 납부방법(아래 중 1)에 표시합니다.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 선납한 경우 WIPO가 발행한 영수증 번호 기재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 WIPO의 은행계좌에 송부

- Payment identification : 대리인 홍길동이 납부한 경우 HONG, Gil-dong (4020150014303)라고 성명옆에 기초출원(등록)번호 병기(은행의 송금 신청서에도 동일하게 기재)
- dd/mm/yyyy : 납부하였거나 납부예정일자 기재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 유럽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한국에서 출원할 경우 해당 없습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등록을 위해서는 본국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제수수료를 선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선납으로 인한 불편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를 특허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화송금신청서 작성 예시

송 금 인	영문 성명/상호 (Applicant)	HONG, GILDONG			송금주체	2-민간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7010101234567	외국인/해외동포 Passport No.		국적	KOREA-KR	
	주 소(Address)	KIPO, GOV, COMPLEX BLDG, 4 920 DUNSANDONGA, SEO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042-481-1111	
송 금 신 청 내 용	송금액 (Amount)	통화 CHF	3,192.00	결제은행수수료 (Charge) 부담	<input checked="" type="radio"/> 신청인(Applicant)	<input type="radio"/> 수취인(Beneficiary)	
	중계은행(ThruBank)						
	수취인 거래은행 (BNF's Bank)	Bank Code	CRESCHZZ80A		ABA NO 조회	SWIFT BIC 조회	
		은행명(Name)	CREDIT SUISSE				
		주소(Address)	CH-1211 GENEVA 70		SWITZERLAND-CH		
수 취 인 (Beneficiary)	계좌번호 (Account No.)	CH5104835048708081000					
	성명(Name)	WIPO					
	주소(Address)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1211 GENEVA 20, SWITZERLAND		☎	41-22-338-9111		
송 금 세	HONG, GILDONG(40-2006-0012345)			송금사유Code			
세 부 내 용	<input type="checkbox"/> 사후송금방식수입		<input type="checkbox"/> 기술도입대가				
	H.S. Code	이곳은 사후송금방식수입		도입기술명 대금 / 기술유형	기술도입대가 송금인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수입신고번호						
	가격 조건	상대국	제한사항	기술료지급내용			
	용 도	계약일,기간	/ / () 개월	기술료기지급액			
기 타 신 청	거래외국환은행지정			거래 유효기간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실명번호: '-' 없이 숫자				
(57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외교포여신취급국외금융기관명:							
송금E-Mail 등보	(은행은 통보내용의 보안, 전송, 누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금 계좌 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은 귀행 영업점에 비치된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열람하고 그 내용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We hereby confirm that I/We will observe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kept in your bank and apply to make remittance as above.							
2007년 01월 17일	신청인	홍길동 (Applicant)			인/서명 (Signature)		
이 신청서는 외국환등계자료로 활용하여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처리하였습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 송금인의 영문성명과 영문주소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WIPO로부터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송금액(Amount)은 수수료 sheet에 기재한 Grand total액을 기재하고, 결재은행(증개은행을 말함) 수수료(Charge 12~15CHF)는 신청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증개은행이 결재은행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수취은행(CREDIT SUISSE)에 입금하여 결국 수수료 부족에 따른 하자통지 대상이 됩니다.
※ 국내은행이 증개은행에 송금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약 15,000원)는 별도로 납부함
- 송금명세란에는 MM서식의 수수료 계산 Sheet의 Payment identification에 작성한 내용[HONG, GILDONG(40-2015-0012345)]을 기재하시면 WIPO에서 더 쉽게 수수료납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혹시 은행에 비치한 서식에 위와 같은 송금명세란이 없다면 창구직원에게 Remittance Information이 있다고 말하면 처리될 것입니다.



Q 국제출원서 사본 송부서를 받았는데 수수료 납부시 주의사항에서 ‘수수료 하자통지의 보정 절차에서 수수료 납부시 주의사항 미준수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보정 안내 절차가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수수료를 미납 또는 부족 납부한 경우 ①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치유하지 않으면 포기 간주한다는 내용의 하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② 하자통지일부터 2개월내 치유를 하지 않으면 ①번의 하자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재차 발송합니다. 하자통지일부터 2개월내 치유를 하지 않다가 ②의 통지서를 수령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결제은행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고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는 등으로 하자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의 수수료납부 독촉없이 그 국제출원은 포기간주 됩니다. 따라서 하자통지일부터 2개월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우선권증명서는 제출해야 합니까?

⇒ 우선권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PRIORITY CLAIMED 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우선권주장을 인정됩니다.

Q 색채주장은 기초출원 · 기초등록에서 주장되어야 합니까?

⇒ 기초출원(등록)에서 색채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도 국제등록출원에서 색채의 주장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기초출원(등록)의 상표와 동일한 색채이어야 합니다.



Q 9 MISCELLANEOUS INDICATIONS (f) Verbal element of the mark의 칭호는 (a)

Transliteration of the mark의 로마자표기와 다른 것인가요?

⇒ (a)의 음역은 표장이 로마자랑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로마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f)는 표장이 로마자, 한자, 도형 그밖의 어떤 것일지라도 칭호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그 음을 기재하게 하는 것으로 이 것은 도형, 특수문자상표라도 검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지정상품을 많이 기재하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나요?

⇒ 불필요한 지정상품이 존재한다면 국제사무국 또는 지정체약당사자에서 상품의 표시, 분류에 대한 하자통지, 가거절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쓸데없는 분쟁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업에 불필요한 상품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출원의 지정상품이 속한 류구분은 그대로 국제출원에 사용해도 됩니까?

⇒ 2017. 1. 1.부터 NICE 11판에 따른 분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등록이 된 것은 지정하고자 하는 상품이 속한 구분이 현 시점에서 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NICE 11판에 따른 분류에 맞게 국제출원하여야 합니다.



제2장 국제출원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1. 사용의사선언서(MM18) 작성방법

가. 의정서 공통규칙에 의하면,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된 표장의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체약당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의사선언서를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미국이 위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였으므로 미국을 지정체약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MM18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브르나이, 다루살람, 인도, 아일랜드, 레소토, 모잠비크,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지만, 별도 서식을 원하지 않으며 지정하는 것만으로 표장의 사용의사를 선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구체적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MM18을 국제출원서(MM2)나 사후지정신청서(MM4)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아래 항목만 기재하면 됩니다.

- 「Signature」란에는, 출원인, 대리인 또는 그밖에 권한 있는 자 (예: 대표이사, 임원 등)가 날인 또는 서명
- 「Date of execution」란에는 서명 날짜를 일/월/년의 순서로 기재(dd/mm/yyyy)
- 「Signatory's Name (printed)」란에는 서명자의 성명 기재
- 「Signatory's Title」란에는 기재자의 직위를 기재하되 직위가 없는 경우 “Applicant”로 기재

※ Date of execution, Signatory's Name (printed), Signatory's Title란은 반드시 타이핑을 하고, Signature란은 수기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MM18만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MM18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국제사무국에 송부되어 MM18을 제출하라는 하자통지를 수령한 경우 등) INFORMATION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항목도 기재
- (a) 「Basic application number」 기초출원번호
「Date of the basic application」 기초출원일자
- (b) 「Basic registration number」 기초등록번호
「Date of the basic registration」 기초등록일자
- (c)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사후지정에 대한 선언인 경우 해당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한다.
「International Bureau's reference」 WIPO에서 발송된 하자통지서에 기재된 국제사무국의 참조번호 기재
「Name of applicant/holder」 출원인/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기재

2. 사용의사선언서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취급

- 가. 국제사무국은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을 접수하였을 때 사용의사선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필요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령, 사인이 안된 경우, 서명일의 미기재 등) 국제사무국은 신속하게 출원인과 본국관청에 통지합니다.
- 나. 본국관청의 국제출원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락, 또는 정정된 사용 의사선언서가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경우 사용의사선언서는 국제출원과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누락 또는 정정된 사용의사선언서가 이 2개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그 국제등록출원은 미국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국제사무국은 미국에 대한 지정수수료(개별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3. 선순위권주장신청서(MM17)의 작성방법

- 가. 유럽공동체상표(CTM)제도 하에서 하나의 표장을 회원국에 이미 등록하고 그 회원국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지정상품을 포함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동일 표장을 유럽공동체를 지정하여 국제출원할 때, 이전의 그 회원국의 상표등록에 대한 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국제출원서(MM2)와 함께 선순위권주장 신청서(MM17)를 제출합니다.
- 나. 국제사무국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 선순위권주장의 효과

이전 상표를 포기 또는 이전 상표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 공동체 상표의 소유자는 이전의 상표가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었을 경우에 그가 가지게 될 동일한 권리를 계속하여 가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국제등록부에의 기록

MM2와 동시에 신청된 선순위권주장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선순위권 주장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결과, 주장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이미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EUIPO으로부터 국제사무국에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부 및 공보에의 공고에 수정이 되기 때문에 EUIPO으로부터 국제사무국에 통지되어 등재됩니다.

마. 작성요령

- 1) 동일 국가에 다수의 국제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매 국제출원 건마다 MM17을 작성합니다.

예) 국제출원 KR20150000001과 KR20150000002가 공통으로 유럽공동체(EM)를 지정하고 스페인(ES)이 선순위권주장 대상국인 경우
⇒ 국제출원 KR20150000001 + MM17(ES 체크)
국제출원 KR20150000002 + MM17(ES 체크)

2) 선순위권주장 대상국이 다수 국가인 경우에는 각 국가마다 MM17을 작성합니다.

예) 국제출원 KR20150000001에서 유럽공동체(EM)를 지정하고 스페인(ES), 그리스(GR)가 선순위권주장 대상국인 경우

⇒ 국제출원 KR20150000001 + MM17(ES 체크) + MM17(GR 체크)

4**Section**

Madrid guide

국제출원서(MM2)의 합치심사 및 WIPO 송부**제1장 국제출원서(MM2) 합치심사의 의의**

합치심사라 함은 국제출원서가 기초 출원(등록)과 합치하는지 여부와 국제 출원서의 기재사항이 적절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본국관청은 주로 출원인이 동일한지, 표장이 일치하는지,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범위가 기초 출원(등록)에 포함되는지를 심사합니다.

한편, 영문으로 표기된 지정상품에 분명한 오타가 있거나, 기재된 상품 분류나 영문지정상품이 이전에 WIPO로부터 상품 분류가 잘못되거나 영문 표기가 적절하지 않아 하자통지 된 사례가 있는지도 심사합니다.

제2장 대체서류 제출 요청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거나, 기초 출원(등록) 권리와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체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서면 제출인 경우 출원인은 대체할 페이지만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고, 전자출원일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국제출원서 전체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서(MM2) 하자 예시〉

1. 지정상품에 관한 하자

○ 지정상품의 표시에 관한 하자(10번 항목)

※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영문상품 중 기초출원/기초등록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품이 있으므로 기초권리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신 후 상품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 상품명칭의 수정요청은 NICE 11판, WIPO의 상품명칭 하자통지 목록에 근거하였습니다.

09류

- 3D printers(3D 프린터)는 07류입니다(NICE 11판 참고).

24류

- dish cloth(행주)는 dish cloths for cleaning dishes으로 수정하십시오(WIPO 하자통지 목록 참고).

18류

- waterproof clothing는 기초등록(방수용 재킷 및 팬츠)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2. 출원인의 적격에 관한 하자.

○ 기초출원의 출원인이 공동출원인입니다. 국제출원서의 출원인도 공동출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 출원인 주소의 표시에 관한 사항(2번 항목 및 연속용지 2번 항목)

- 2-(c)에 기재한 대리인 주소는 삭제하여 주십시오.

- 2-(d)의 전화번호, Fax, 이메일 등도 회사 고유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연속용지의 출원인 사항도 수정하여 주십시오.

○ 출원인 적격에 관한 하자(3번 항목)

- HAI INC는 대한민국 법인입니다.

- 따라서 3-(a)-(iii)의 선택을 삭제하고, 3-(a)-(i)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또한, 3-(b)에 기재한 주소도 삭제하여 주십시오.

- 연속용지의 3번 항목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3. 기초권리 및 우선권 주장에 관한 하자.

- 기초등록일자에 관한 하자(5번 항목)
 - 기초등록번호 4500025950000의 등록일자는 2015년 2월 20일입니다.
- 국제출원서의 접수일이 기초출원일로부터 6월이 초과하여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우선권 주장 항목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 기초권리가 2개 이상일 경우, 10번 항목의 지정상품 중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기초 출원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All the goods listed in class 09

4. 표장에 관한 하자

- 표장의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선명한 이미지로 대체하여 주십시오.
- 기초출원의 표장은 흑백이나 국제출원서에 첨부된 표장은 칼라입니다. 기초출원과 동일한 표정으로 대체하여 주십시오.

5. 기타 사항

- 표장에 라틴문자 이외의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9-(1)항목에 표장의 한글 문자 “홍길동”的 음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Hong gil dong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개별수수료를 받지 않는 국가는 매 지정국마다 보충수수료(Complementary fee)가 100CHF가 가산되므로 지정국을 확인 후 수수료를 다시 계산하여 주십시오.
- 일부 국가에 대하여 류의 감축이 있습니다. 개별수수료 징수국가의 경우 감축된 류는 수수료 계산 시 반영됩니다. 단, 개별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국가는 감축이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수료의 계산기준일자(본 국제출원의 수수료 계산 기준일은 2011.03.10입니다.)가 달라 수수료의 총액이 상이합니다.

7. 첨부서류에 관한 하자

- 첨부서류에 관한 하자.
 - MM18서식의 Signatory's Title[◎] 누락되었습니다. 타이핑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applicant

제3장 합치선언 및 WIPO 송부

국제출원서 및 대체서류에 하자가 없을 때는 본국관청은 국제출원서를 합치선언을 한 후 WIPO로 전송합니다. 동시에 출원인에게는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상에 오류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Section**

Madrid guide

WIPO 하자통지 대응**제1장 하자의 종류****1. 상품의 분류에 관한 하자**

- 가. 상품이 적절한 류 단위로 그룹화되어 있지 않거나, 각 그룹 앞에 해당하는 류의 번호가 명기되지 않거나 그 번호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자체 제안을 만들어 본국관청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제안된 분류 및 그룹화의 결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가 있다면 그 수수료 금액도 통지).
- 나. 본국관청은 제안된 분류 및 그룹화에 대한 의견을 제안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은 출원인의 의견에서 기원하거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국관청은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 본국관청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의견을 고려한 후에 이를 철회, 수정 또는 확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사실을 본국관청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수정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통지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금액의 변경 결과도 표시함).
- 라. 제안된 재분류의 결과 추가로 발생한 수수료는 다음 기간 내에 납부합니다.
- 1) 본국관청이 아무런 의견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안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2) 본국관청이 의견을 통보한 경우, 국제사무국이 제안의 수정 또는 확정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3) 이 수수료를 규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분류에 관한 하자 통지서 사례

IRREGULARITY(IES)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TO BE REMEDIED BY THE OFFICE OF ORIGIN (Rule 12).

2. The International Bureau considers that the goods and/or services list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re not grouped in the appropriate classe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Rule 9(4)(a)(xiii)). The International Bureau proposes therefore to transfer the following terms:

"insect collecting cages" from class 28 to class 21 - by analogy with basic number 210150 of the 11-2017 edition of the Nice Classification.

The proposed grouping may entail the payment of further fees (see attached accounting statement).

2. 상품의 표시에 관한 하자

가. 국제사무국이 상품 목록에 사용된 용어가 분류 목적상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곤란하거나 언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국관청과 출원인에게 동시에 알립니다(국제사무국은 대체 용어를 제안하거나 그 용어의 삭제를 제안할 수 있음).

나. 본국관청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하자 치유를 위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관청의 제안이 수용할만하거나 관청이 국제사무국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용어를 적절히 변경합니다.

다. 만일, 관청의 제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하나 상품 분류와 관련하여 하자가 있으면, 분류에 관한 하자 절차가 적용됩니다.

라. 본국관청의 제안이 수용될 수 없는 경우

- 1) 본국관청이 당해 용어가 분류될 특정 류를 명시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용어를 국제출원에 나타나 있는 대로 국제등록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국제등록에는 국제사무국의 견해로는 그 용어가 분류 목적상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곤란하거나 언어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표시가 포함됩니다.
- 2) 본국관청이 특정 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용어를 삭제하고 본국관청과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마. 기한 내에 아무런 제안이 없으면 국제사무국의 견해와 함께 국제등록에 기재됩니다.

○ 표시에 관한 하자 통지서 사례

The examination of this application has revealed the irregularities which are listed hereafter:

1. The International Bureau considers that the following terms of the list of goods and/or services are linguistically incorrect (Rule 13):

1. "potable LED lanterns" (class 11)
2. "LED lighting equipments" (class 11)

The International Bureau suggests therefore the following:

1. "portable LED lanterns" (class 11)
2. "LED lighting equipment" (class 11)

A proposal as to different terms may be communicate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Any such proposal must be communicated **THROUGH THE OFFICE OF ORIGI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present notification, **that is by 15 November 2017**. If no proposal acceptable to the International Bureau is made within this period, the International Bureau will include i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terms as appearing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ith an indication to the effect that, in the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Bureau, the specified terms are linguistically incorrect.

Applicants are strongly encouraged to check the existence and classification of terms appropriate to their needs in the Madrid Goods & Services Manager at <http://www.wipo.int/mgs>

3. 기타 하자

- 가.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하자 :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결함이 3개월 이내에 치유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국제등록부에 등재되지 아니합니다.
- 나. 사용의사선언에 관한 하자 : 본국관청의 국제출원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수령하여야 합니다. 2월의 기간 이후에 수령된 경우, 그 국제 출원은 표장의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는 체약당사자에 대한 지정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수수료에 관한 하자
- 1) 부족한 또는 미납된 수수료 금액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상품의 분류에 관한 국제사무국 제안의 결과로 발생한 추가 수수료는 본국관청의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만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출원에 대하여 수수료 하자통지를 받은 경우 국제 출원서에 기재한 송금인 명칭 불일치 또는 시차 등에 따른 확인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송금영수증을 첨부한 문서를 WIPO 심사관에게 직접 FAX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에 관한 하자 통지서 사례

We acknowledge receipt of the above-mentioned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examination of this application has revealed the irregularities which are listed hereafter:

IRREGULARITY(IES) CONCERNING THE FEES: TO BE REMEDIED BY THE APPLICANT OR THE OFFICE OF ORIGIN

1. The amount of the fees received is less than the amount required (Rule 9(3)). Missing amount: (see accounting statement enclosed).

In order to remedy this irregularity, the missing amount should be paid to the International Bureau:

- either online, by credit card or by debiting a sufficiently credited current account opened with WIPO, at <https://webaccess.wipo.int/epayment/> using reference 1073618901 ;

- or by transfer to WIPO's bank account: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 code CRESCH ZZ80A, Crédit Suisse, CH-1211 Geneva 70;

- or by transfer to WIPO's postal account: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 or by authorizing the International Bureau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from a sufficiently credited account opened with WIPO.

Annex to the irregularity notice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ased on the national application or the national registration No 4011933710000

Our ref.: EN-I/1073618901/WK

Office ref. : KR20170000423

Applicant ref. :

Swiss Francs

Basic fee where no reproduction
of the mark is in color
(Protocol application):

653.00

Individual fee (international application): AU 263.00

897.00

Individual fee (international application): EM 897.00

108.00

Individual fee (first part): JP 149.00

149.00

Individual fee (international application): MX 93.00

93.00

Individual fee (international application): NZ 242.00

242.00

Individual fee (international application): SG 161.00

161.00

Total due: → 정당한 국제출원 수수료

2,566.00

Balance in our favour → 양후 납부해야 할 수수료
<PAYMENT-INFO>

2,566.00

제2장 하자의 치유

1. 상품의 분류와 표시에 관한 하자

국제사무국은 분류와 표시에 관한 하자 통지서를 본국관청과 출원인 모두에게 통지하며 본국관청은 출원인에게 그 사본을 재송부하면서 송부일로부터 1월의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무국이 상품 목록에 사용된 용어가 분류 목적상 지나치게 모호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언어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제안한 대체용어가 기초출원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초출원에 없는 상품 명칭일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에 참고할 수 없습니다.

2. 수수료에 관한 하자

국제사무국은 수수료에 관한 하자 통지서를 본국관청과 출원인 모두에게 통지하며 본국관청은 출원인에게 그 사본을 재송부하면서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하자

본국관청이 치유해야 하는 하자 이외의 모든 하자는 출원인이 치유해야 합니다.

-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인에게 송부하는 하자통보문 예시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특 허 청
하 자 통 지 서

1. 국제출원인:

- (1) 성명:
- (2) 주소:

2. 국제출원인의 대리인:

- (1) 성명:
- (2) 주소:

3. 사건의 표시:

- (1) 서류의 종류: 국제출원서
- (2) 서류 접수일자: 2017.06.05
- (3) 특허청 참조번호: KR-2017-0000419

4. 통지의 내용 및 치유 방법: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발송된 불임의 하자통지서(영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하자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1) 상품 목록에 대한 하자

- 특허청 발송일(상단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에 영문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영문 의견서는 다음 페이지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수수료에 대한 하자

- 하자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보정(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 (영문 통지서 참조)

※ 수수료 납부요령(외화송금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 ① 증계은행수수료 : 신청인 부담
- ② 출원인 성명, 송금목적(예: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기초출원(등록)번호 또는 WIPO 참조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기타 하자

- 국제사무국에서 지정한 제출기한 내에 출원인이 직접 보정하여야 합니다.

5. 불임 : 하자통지서(영문) 사본 1부. 끝.

○ 하자통지서에 대한 국제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예시

【서지사항】

【제품명】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제출구분】 하자보정서 등

【제출인】

【명칭】 HANKOOK COSMETICS CO., LTD.

【특허고객번호】 1-2010-023776-6

【사건과의 관계】 국제출원인

【대리인】

【성명】 경일호

【대리인번호】 9-2005-000985-5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 KR-2017-0000419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8-5-2017-0032807-70

【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경일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_1통

※ 별첨 영문 의견서

Response to Notice Concern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30/08/2017

International Application based on application No. 4020170063611
for the mark DAELIMSYNOL
in the name of DAELIM INDUSTRIAL CO., LTD.

WIPO ref.: EN-I/1068355001/JY
Office ref.: KR20170000399
Applicant ref.: TO 10646 MD

Dear Mr. Jin-Ou YOO,

We acknowledge the receipt of Notice Concerning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on 02/08/2017.

We would like to amend the following term:

" metalworking fluids" (class 4) to " cutting oil for industrial metal working " (class 4) as the International Bureau suggested.

Very truly yours,

Shinwoo Patent & Law Firm

6**Section**

Madrid guide

사후지정신청서(MM4) 작성방법과 첨부서류의 취급 등**제1장 사후지정 개요****1. 사후지정의 의의**

- 사후지정이란 주로 국제출원된 상표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이후 체약당사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지정을 신청하는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제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은 체약당사자를 추가
 - 거절, 무효 또는 포기에 따라 표장이 그 체약당사자에서 보호받지 못하였다가 그러한 거절, 무효 또는 포기의 이유가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체약당사자를 다시 지정
 - 국제출원 제출 시에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지정할 수 없었으나 이후 의정서에 가입하여 지정이 가능한 체약당사자를 지정
- 또한, 사후지정은 체약당사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 외에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품 일부에 대하여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국제출원 시 특정 체약당사자에만 상품 목록 중 일부를 감축하였다가 국제등록 후 그 특정 체약당사자에 감축한 상품을 추가하여 사후지정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사후지정의 적격

- 사후지정 시에 국제등록 권리자(명의인)의 체약당사자가 가입한 협정 또는 의정서에 기속되는 체약당사자가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제출원서 제출 후 국제등록부에 등록 전인 출원은 국제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국제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사후지정을 하거나 별도의 국제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3. 사후지정신청서의 제출처

- 국제등록 명의인은 사후지정신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제3장 참조)하거나, 권리자(명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거쳐 제출(제2장 참조)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명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 ① 명의변경이 없었던 국제등록의 경우 : 국제출원이 제출된 관청(본국관청)이 소속된 체약당사자의 관청.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한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입니다.
- ② 명의변경이 있었던 국제등록의 경우 : 신명의인의 체약당사자의 관청. 신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인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 신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이면서 의정서 가입국인 미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도 두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과 미국 특허청(USPTO) 모두 해당됩니다.

4. 사후지정일자

-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된 사후지정은 국제사무국의 접수일입니다.
-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사후지정은 관청의 접수일입니다. 다만, 관청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존속기간

- 사후지정의 존속기간은 사후지정의 기초가 된 국제등록 존속기간과 같으므로, 국제등록 존속기간 만료일이 사후지정 존속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제2장 사후지정신청서 작성방법

- For use by the holder

This subsequent designation includes the following number of :

- continuation sheet(s) : 사용한 연속용지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 전자출원 시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MM17 form(s) : 첨부된 MM17(선순위권 주장신청서)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Holder's reference : 권리자의 서류 참조번호를 기재합니다.

- For use by the office란은

- Office's reference : 본국관청 기재란이므로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사후지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하나의 사후지정은 국제등록 1건씩만 할 수 있습니다.

2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Name : 권리자의 성명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Address : 권리자의 주소를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국제등록 권리자가 2명이상 있을 때는 1명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기타 권리자에 대해서는 권리자 1명마다 연속용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재된 성명과 주소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다른 경우, 국제사무국은 사후지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 권리자가 성명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후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국제등록부 상의 성명과 주소 변경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3 APPOINTMENT OF A (NEW)REPRESENTATIVE

- 국제출원 시 이미 선임한 대리인이 변동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권리자가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 선임을 위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4 DESIGNATION

- 사후지정을 할 각 체약당사자명 앞에 있는 속에 ×표시를 합니다.
- 열거되지 않은 체약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가입이 발효 되었는지 확인하고 「Others」란에 국가코드(또는 체약당사자 명칭)를 기재합니다.
- 유럽연합을 지정하는 경우, 제3자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이의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될 절차언어(제2외국어)로 영어,프랑스어 · 독일어 · 이탈리아어 ·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지만,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체약당사자 (인도,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고, 체약당사자율 지정함으로써 표장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선언서(MM18)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5 GOOD AND SERVICES CONCERNED BY THE SUBSEQUENT DESIGNATION

다음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 (a) 4에서 지정된 체약당사자 전부에 대하여 당해 국제등록에 포함된 모든 상품 목록을 사후지정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b) 4에서 지정된 체약당사자 전부에 대하여 당해 국제등록에 포함된 일부 상품(연속용지에 기재된)를 사후지정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c) 연속용지에 표시된 체약당사자에 대해서는 연속용지에 기재된 상품 목록에 한하여 사후지정하고, 4에 지정된 나머지 체약당사자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에 포함된 모든 상품 목록에 대하여 사후지정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6 MISCELLANEOUS INDICATIONS

이 항목은 지정된 체약당사자가 요청할 때를 대비하여 또는 체약당사자에 의한 거절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작성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만 작성하는 선택사항입니다. 이러한 표시를 국제출원 시 이미 기재한 경우에는 여기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a) 국제등록 명의인에 대한 추가 표시

- (i) 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기재하는 란으로 권리자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 (ii) 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 기재하는 란으로 그 법인의 법적 성격, 그 법인의 설립 근거법의 해당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 (b) 표장의 색채부분 표시

국제출원에서 색채를 표장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주장한 경우, 이곳에 표장의 색채에 관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c) 번역

표장이 번역될 수 있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공란에 이 단어들의 영어나 불어, 스페인어로의 번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d) 표장에 있는 단어가 번역될 수 없는 것, 즉 조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곳에 표시합니다.
- (e) 국제출원서(MM2)에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출원인이 새로 국제등록부에 등록되길 희망하는 경우 기초출원(등록)의 설명을 포함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설명은 기초출원(등록)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7 DATE OF EFFECT OF THE SUBSEQUENT DESIGNATION

- (a), (b) 모두 표시하지 않으면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국관청 수령일로부터,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 수령일로부터 사후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 (a) : 국제등록의 갱신 후에 사후지정이 발효되도록 하고자 할 때 표시합니다.
 - (b) : 국제등록부에 변경 신청이 등록된 직후에 사후지정이 발효되도록 하고자 할 때 표시하며,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공란에 표시합니다.

8 SIGNATURE BY THE HOLDER OR HIS REPRESENTATIVE

- 국제등록명의인이 사후지정신청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 명의인(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 본국관청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 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국관청은 국제등록 명의인(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만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9 DATE OF RECEIPT AND DECLARATION BY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PRESENTING THE SUBSEQUENT DESIGNATION

- 이 항목은 특허청에서 작성하는 난이니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10 OFFICE PRESENTING THE SUBSEQUENT DESIGNATION

- 이 항목은 특허청에서 작성하는 난이니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FEE CALCULATION SHEET 〉

사후지정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 (www.wipo.int/madrid/en)의 수수료 계산기(fee calculat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정의 수수료 금액은 국제등록의 개신일까지 사후지정이 유효한 연수(기간)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국제출원과 동일합니다.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국제출원서(MM2)의 〈 FEE CALCULATION SHEET 〉 (a)란과 같음

(b) AMOUNT OF FEES

납부할 수수료의 액수는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의 Fee Calculator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스위스프랑(CHF)

- Basic fee (기본수수료) : 300 CHF
- Complementary fee (보충수수료) : 1개국당 100 CHF × 지정국가(개별 수수료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의 수
- Individual fees : 개별국가에서 보충수수료 및 추가수수료 대신 선언한 수수료
※ 개별수수료 선언국과 각 선언국별 수수료 내용은 (<http://www.wipo.int/madrid/en/fees>)의 「Individual Fees under the Madrid Protoco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난에 적절한 해당 수수료를 기재한 후, 이들의 합을 GRAND TOTAL(총액)에 기재합니다. 참고로 국제사무국에서는 GRAND TOTAL(총액)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므로 총액란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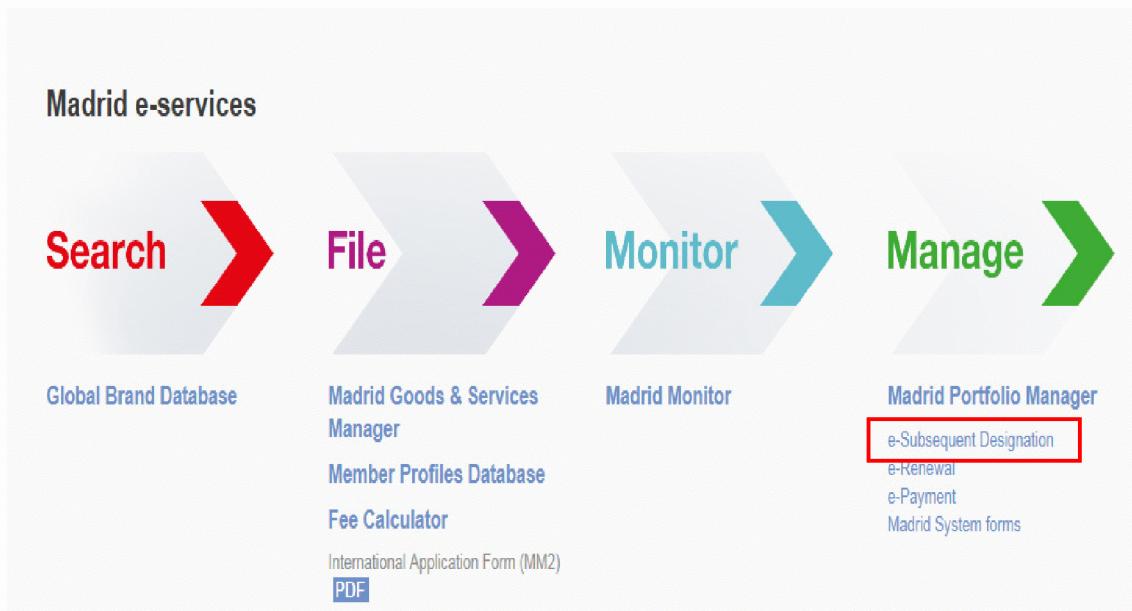
(c) METHOD OF PAYMENT

국제출원서(MM2)의 〈FEE CALCULATION SHEET〉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제3장 사후지정신청 직접출원 방법

1. 사이트 접속

- 국제사무국(WIPO) 홈페이지에 접속(<http://www.wipo.int/madrid/en/>)하여 사후지정신청(e-Subsequent Designation) 항목을 클릭합니다.



2. 국제등록번호(IRN)기재

-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명의인의 국제등록번호(IRN)를 기재합니다.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ntact Us | My Account | English ▾

Home IP Services Madrid System E-Subsequent Designation WIPO MADRID

E-Subsequent Designation

Tutorial ⓘ

Please enter you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IRN

3. 국가 및 Option 지정

- 사후지정을 원하는 국가 명칭의 앞에 있는 속에 체크를 합니다.
- 사후지정하고자 하는 상품류나 상품이 전부에 해당할 경우에는 'Total'에 체크를 하고, 일부에 해당할 경우에는 'Partial'에 체크를 합니다.
- 'Partial'을 체크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국가별로 상품류나 상품을 각각 다르게 또는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ES (Spain) <input type="checkbox"/> FI (Finland) <input type="checkbox"/> FR (France) <input type="checkbox"/> GB ¹ (United Kingdom) <input type="checkbox"/> GE (Georgia) <input checked="" type="checkbox"/> GH ¹ (Ghana) <input type="checkbox"/> GM (Gambia) <input type="checkbox"/> GR (Greece) <input type="checkbox"/> HR (Croatia) <input type="checkbox"/> HU (Hungary) <input type="checkbox"/> ID (Indonesia) <input type="checkbox"/> IE ¹ (Ireland) <input type="checkbox"/> IL (Israel) <input type="checkbox"/> IN (India) <input type="checkbox"/> IR (Islamic Republic of Iran) <input type="checkbox"/> IS (Iceland) <input type="checkbox"/> JP ¹ (Japan) <input type="checkbox"/> KE (Kenya) <input type="checkbox"/> KG (Kyrgyzstan) <input type="checkbox"/> KH (Cambodia) <input type="checkbox"/>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put type="checkbox"/> KR (Republic of Korea)	<input type="checkbox"/> SD (Sudan) <input type="checkbox"/> SE (Sweden) <input checked="" type="checkbox"/> SG ¹ (Singapore) <input type="checkbox"/> SI (Slovenia) <input type="checkbox"/> SK (Slovakia) <input type="checkbox"/> SL (Sierra Leone) <input type="checkbox"/> SM (San Marino) <input type="checkbox"/> ST (Sao Tome and Principe) <input type="checkbox"/> SX ¹ (Sint Maarten (Dutch part)) <input type="checkbox"/> SY (Syrian Arab Republic) <input type="checkbox"/> SZ (Swaziland) <input type="checkbox"/> TH (Thailand) <input type="checkbox"/> TJ (Tajikistan) <input type="checkbox"/> TM (Turkmenistan) <input type="checkbox"/> TN (Tunisia) <input type="checkbox"/> TR (Turkey) <input type="checkbox"/> UA (Ukraine) <input type="checkbox"/> US ¹ (United States of America) <input type="checkbox"/> UZ (Uzbekistan) <input type="checkbox"/> VN (Viet Nam) <input type="checkbox"/> ZM (Zambia) <input type="checkbox"/> ZW (Zimbabwe)
Selected Contracting Parties Classes 9; 14; 18; 25; 35 options <input type="radio"/> Total <input checked="" type="radio"/> Partial	
<input checked="" type="radio"/> Some goods and services for all CPs <input type="radio"/> Some goods and services for some CPs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ntact Us | My Account | English ▾
WIPO | MADRID

E-Subsequent Designation

1345723

[Home](#) | [IP Services](#) | [Madrid System](#) | [E-Subsequent Designation](#)

Select classes

Selected Contracting Parties GM SM

Classes	Nice Class	Goods & Services	Edit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input type="radio"/> all <input checked="" type="radio"/> some	Edit

Language of the limitation English

[Back](#) [Next](#)

Dietary and nutritional supplements
sleep aids
liquids used to aid sleep and relaxation.

4. 최종검토

- 사후지정신청서에 기재한 국가, 지정상품, 수수료 등의 내용이 맞는지 최종확인을 합니다.

Description	Details	Amount
Extension basic fee:	1 x 300	300
✓ IS (Iceland)		
Individual fee per additional class (subsequent designation):	2 x 58 (1class(es) free)	116
Individual fee (subsequent designation):		270
Total (CHF)		686

5. 수수료 결제

- 사후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최종 확인이 끝나면 수수료를 결제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수수료납부의 자세한 사항은 제9절 참조)

제4장 첨부서류(MM18 및 MM17)의 취급 등

1. 사용의사선언서(MM18) 작성방법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며, 제3절 제2장에서 설명한 국제출원 시 제출하는 사용의사선언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선순위권 주장신청서(MM17)의 작성방법

유럽연합에 선순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3절 제2장에서 설명한 국제출원 시 제출하는 선순위권주장신청서의 작성요령과 같습니다.

제5장 사후지정의 하자

1. 하자 치유시 사후지정일

사후지정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한 경우 해당 국제등록번호, 지정된 체약 당사자의 표시, 상품 목록 표시, 사용의사선언서에 관한 것은 하자가 치유된 날이 사후지정일이 되며, 관청에 제출한 경우 보정이 되어 관청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면 사후지정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하자는 사후지정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하자 치유를 할 사람

사후지정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국제등록 명의인이 직접 하자를 치유해야 하며,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등록명의인이 하거나 필요시 관청이 하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3. 하자 미치유시 효력

하자가 국제사무국의 하자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후지정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납부된 수수료에서 기본수수료의 반액을 공제한 후 납부한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해 줍니다.

7

Section

Madrid guide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MM5) 작성방법

제1장 국제등록 명의변경 개요

1.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의 의의

-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은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중 일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체약당사자 전체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일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정서 제9조의 명의변경은 원인(계약, 상속, 판결 또는 법률의 시행 등)을 불문하고 이와 같은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 국제등록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국제등록 명의인」이라고 정의하므로, 국제등록부에 명의변경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전(前) 권리자가 「국제등록 명의인」이 됩니다.

2. 새로운 권리자의 적격

- 새로운 권리자는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 새로운 권리자는 대한민국(의정서에만 가입) 국민으로서, 국제등록부상 지정체약당사자가 마드리드 협정에만 가입한 국가인 경우 그 명의변경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새로운 권리자가 마드리드 협정에만 기속되는 체약당사자 내에 영업소 또는 주소가 있을 경우는 그 마드리드 협정에만 기속되는 체약당사자가 지정체약당사자이더라도 명의변경은 등재가 가능합니다.

3. 명의변경 절차

가. 명의변경 신청의 제출

- 명의인(권리자) : 국제등록 명의인(또는 등록된 대리인)은 공식서식(MM5)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명의인(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청(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holder) ①명의변경이 없었던 경우 : 국제출원이 제출된 관청(본국 관청)이 소속된 체약당사자의 관청.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한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임 ②명의변경이 있었던 경우 : 신명의인의 체약당사자의 관청. 신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인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 신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이면서 의정서 가입국인 미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도 두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과 미국 특허청(USPTO) 모두 해당됨
- 새로운 권리자 : 새로운 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경유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
※ 새로운 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청[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new owner(the transferee)] : 새로운 권리자가 국민인 체약당사자의 관청 또는 새로운 권리자가 주소,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관청. 즉, 새로운 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인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 새로운 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자연인, 법인)이면서 의정서 가입국인 미국에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IPO)과 미국 특허청(USPTO) 모두 해당됨

나. 대한민국 특허청(KIPO)을 통한 명의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MM5)
-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아래는 양도에 의한 경우이며, 상속 및 합병 등은 해당 서류

국적	제출 서류	비고
외국인(외국 법인)	양수양도증 (법인)국적증명서 – 공증 필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국문번역문 첨부(공통)
대한민국 국민(법인)	양수양도증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 재외자(외국인)가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하여 제출 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2장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 작성방법

- For the holder (transferor)/new owner (transferee)

This request contains the following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란에는 사용한 연속용지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Holder/new owner's reference: 국제등록 명의인의 서류 참조번호로 로마자 · 숫자, 「-」 또는 그 조합으로 기재합니다.

- For the Office 란은 특허청이 기재하는 날이니 공란으로 둡니다.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s)

- 해당 국제등록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동일한 국제등록 명의인로부터 동일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다수의 국제등록에 대한 전부이전(Total change in ownership)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등록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국제등록 명의인에게 통지되지 않아서 국제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국제등록번호를 통지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NAME OF THE HOLDER (TRANSFEROR)

- 명의원(권리자)의 성명(명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명의인이 2명 이상 있을 때는 1명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그 밖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연속용지에 기재합니다.

3 NEW OWNER (TRANSFeree)

- 새로운 권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교신용 주소는 새로운 권리자가 자신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워둡니다.

4 ENTITLEMENT OF THE NEW OWNER (TRANSFeree) TO BE THE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a) 다음 항목에 대해 적절히 표시합니다.
 - (i) 체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새로운 권리자의 국적이 있는 국가의 이름
 - (ii) 체약당사자가 기구인 경우 새로운 권리자의 국적이 있는 체약기구의 회원국 이름
 - (iii) 새로운 권리자가 주소를 가지고 있는 체약당사자 이름
 - (iv) 새로운 권리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체약당사자 이름
- (b) 새로운 권리자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기구 가입국의 국민이 아니고, 제3항
 - (b) 항목에서 기재한 주소가 (a)(iii) 또는 (a)(iv)의 영역에 있지 않은 경우 제4(b)항목에 그 체약당사자 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를 기재합니다.
- (i) 제4항(a)(iii)을 표시하였다면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새로운 권리자의 주소
- (ii) 제4항(a)(iv)을 표시하였다면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새로운 권리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 주소

5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BY THE NEW OWNER (TRANSFeree)

- 새로운 권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 항목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제등록 명의인의 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를 새로운 권리자의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이 난에 기재함으로써 재선임됩니다.

6 SCOPE OF THE CHANGE IN OWNERSHIP (check either (a) or (b))

(a) 전부 명의변경(Total Change in Ownership)

- 명의변경이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 관련되고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에 관련되는 경우 표시합니다.

(b) 일부 명의변경(Partial Change in Ownership)

- (i) 명의변경이 아래 공란에 기재된 지정체약당사자에 한해 기록되는 경우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한 소유권 변경으로 이해)

- (ii) 소유권 변경이 아래 공란에 기재된 상품 목록에 한해 기록되는 경우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모든 상품에 대한 소유권 변경으로 이해)

- 여백이 부족한 경우 해당란에 표시하고 연속용지를 사용합니다.

7 MISCELLANEOUS INDICATIONS

(a) 새로운 권리자에 관한 표시

- 새로운 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국적을 표시합니다.
- 새로운 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적 성격, 그 법인의 설립근거법의 해당 국가를 기재합니다.

(b) 새로운 권리자의 교신용 언어로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8 SIGNATURE BY THE HOLDER (TRANSFEROR) AND/OR HIS REPRESENTATIVE

-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등록 명의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 본국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국관청은 국제등록 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면인 경우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RECORDED HOLDER
(TRANSFEROR) OR THAT OF THE NEW OWNER (TRANSFeree)) PRESENTING
THE REQUEST (where the request is presented through an Office)

-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기재하는 난입니다.

⟨ FEE CALCULATION SHEET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국제출원서(MM2)의 《 FEE CALCULATION SHEET 》 (a)란과 같음

(b) AMOUNT OF FEES

납부할 수수료의 액수는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의
Fee Calculator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스위스프랑(CHF)
수수료 : 국제등록 1건당 177 CHF

GRAND TOTAL 항목에 납부할 총액을 기재합니다.

(c) METHOD OF PAYMENT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이하부터의 작성방법은 국제출원
서(MM2)의 《 FEE CALCULATION SHEET 》의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이하 부분과 같습니다.



Q 일부 지정 상품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 명의변경은 일부 지정상품별로 가능합니다. 또한 체약당사자별로 명의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일부 지정 상품만 명의변경하거나, 일부 지정국만 명의변경한 경우 국제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하는지?

⇒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국제등록의 지정체약당사자인 일부 또는 지정 상품의 일부와 관련하여 새 명의인이 되는 경우, 명의변경 되기 전의 해당 국제등록번호(가령 855719)의 국제 등록부에 명의변경 사항이 등록되고, 이전된 부분은 별도의 국제등록이 만들어지며 이때 별도의 국제등록번호는 대문자와 기존 국제등록번호로 이루어집니다(예 : 855719A).

구분	일부 지정상품		일부 지정국		모든 상품 및 지정국	
번호	855719		855719		855719	855719
권리자	홍길동	김상표	홍길동	김상표	홍길동	김상표
지정상품	1류, 2류	1류	1류, 2류	1류, 2류	1류, 2류	1류, 2류
지정국	US, JP	US, JP	US, JP	US	US, JP	US, JP

Q 명의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명의인에게(본국관청 경유 시 본국관청에게도) 하자통지가 송부 됩니다. 하자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치유하지 않으면 명의변경 신청은 포기 간주 됩니다.

Q 명의인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은 명의변경 등록신청으로 되는지?

⇒ 소유권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절차는 별도의 절차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인 명칭 또는 주소 변경은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신청서(MM9)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8

Section

Madrid guide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작성방법**제1장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 개요**

1.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의 기간단위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2. 갱신신청은 갱신수수료를 지불하여 국제등록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갱신절차에서 국제등록에 관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즉 명의인의 명칭, 주소 또는 지정 상품에 관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3. 국제사무국은 존속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국제등록 명의인(대리인)에게 비공식적인 통지를 송부하는데 정확한 만료일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합니다.(비공식 통지서가 명의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갱신수수료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존속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규칙에서 정한 할증 수수료를 지불하면 갱신이 인정됩니다.
(할증 수수료 : 갱신 기본수수료의 50%를 추가)
5. 갱신의 등록, 통지 및 공고
 - 가. 국제사무국은 갱신 사실을 갱신일자와 함께 국제등록부에 등록합니다.
 - 나. 갱신수수료가 만료일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에 납부된 경우에도 갱신일에 갱신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갱신의 효력발생일은 각 지정국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일자와 관계없이 모든 지정국에 대하여 동일합니다.
 - 다. 국제등록이 갱신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에 갱신을 통지하고 국제등록명의인에게 등록증을 송부합니다. 국제등록이 특정 체약 당사자에 대하여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관청에 통지하며 갱신에 대한 데이터는 공보에 공고됩니다.

6. 보충갱신

국제등록이 지정체약당사자 일부에 대하여만 갱신된 후, 만료일 이후에 갱신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갱신하는 경우, 이를 「보충갱신」이라 하며,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7.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신청서를 체약당사자 관청을 거쳐 제출하거나(제2장 참조),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제3장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관청을 통해 국제등록을 갱신하는 경우, 기초적인 방식심사를 거친 후 하자가 없으면 관청의 서명을 날인하여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송부합니다. 갱신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제등록부에 전체 무효 또는 포기가 등재된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해서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무효인 경우 무효가 등재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갱신됩니다.

제2장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작성방법

- For use by the holder

This renewal contains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연속용지 매수를 기재합니다.

Holder's reference: 난에 국제등록명의인의 서류 참조번호로 로마자·숫자, 「-」 또는 그 조합으로 기재합니다.

- For use by the office 난은 특허청이 기재하는 난입니다.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갱신할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존속기간갱신은 하나의 신청서로 국제등록 1건씩만 할 수 있습니다.

2 Name of the Holder

-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합니다.
- 국제등록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그 밖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연속용지에 기재합니다.

3 CONTRACTING PARTIES FOR WHICH RENEWAL IS REQUESTED

- 갱신하고자 하는 체약당사자를 모두 선택합니다. 해당 국제등록이 거절된 체약당사자도 선택하여 체크할 수 있습니다.

4 RENEWAL FOR ALL GOODS AND SERVICES IN RESPECT OF CONTRACTING PARTIES WHERE PROTECTION HAS BEEN PARTIALLY REFUSED, FOLLOWING THE RECORDING OF A STATEMENT SENT UNDER RULE 18TER OF THE COMMON REGULATIONS

- 지정상품이 일부 거절되었으나 거절된 지정상품을 포함한 모든 지정상품을 갱신하려는 체약당사자를 선택합니다.
- 3번항목만 선택하고, 4번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각 지정국에서 거절된 지정상품은 제외하고 보호가 결정된 지정상품만을 갱신하게 됩니다.

5 SIGNATURE

- 국제등록 명의인 또는 대리인이 성명(명칭)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합니다.

〈 FEE CALCULATION SHEET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국제출원서(MM2)의 《 FEE CALCULATION SHEET 》 (a)란과 같음

(b) AMOUNT OF FEES

납부할 수수료의 액수는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의 Fee Calculator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스위스프랑(CHF)

· Basic fee (기본수수료) : 653 CHF

※ 갱신예정일 이후의 늦은 납부에 대한 부가수수료 326.50 CHF

· Complementary fee (보충수수료) : 1개국당 100 CHF × 지정국가(개별 수수료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의 수

· Supplementary fee (추가수수료) : 3개류 초과 1류당 100 CHF

· Individual fees : 개별국가에서 보충수수료 및 추가수수료 대신 선언한 수수료

* 개별수수료 선언국과 각 선언국별 수수료 내역은 WPO홈페이지(<http://www.wipo.int/madrid/en/fees>)의 「Individual Fees under the Madrid Protoco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날에 적절한 해당 수수료를 기재한 후, 이들의 합을 GRAND TOTAL(총액)에 기재합니다. 참고로 국제사무국에서는 GRAND TOTAL(총액)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므로 총액란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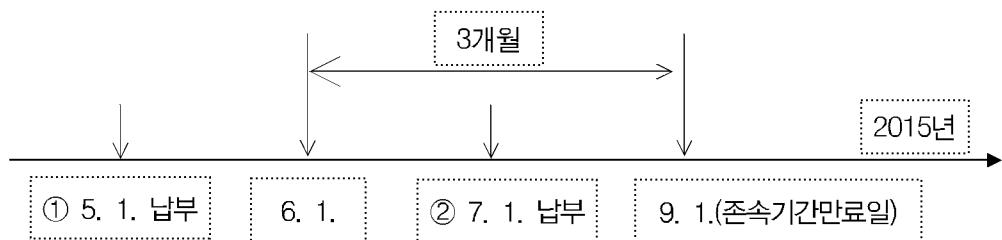
(c) METHOD OF PAYMENT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이하부터의 작성방법은 국제출원서(MM2)의 《 FEE CALCULATION SHEET 》의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이하 부분과 같습니다.



Q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이상 전에 미리 갱신하였는데, 그 후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 수수료가 인상된 경우는?

⇒ 이 경우 그 부족분을 추가납부하지 않으면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래 ①의 경우 인상분 추가납부 필요). 한편, 기간만료일의 3개월 전 이후의 납부는 납부일에 유효한 금액이 적용됩니다(아래 ②의 경우 추가납부할 필요 없음).



Q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3항(갱신하고자 하는 지정국 선택)에서 거절이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지정체약당사자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 전체거절이든 부분거절이든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시 해당 지정체약당사자에서 소송들을 통해 거절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존속기간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3장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직접출원 방법

1. 사이트 접속

- 국제사무국(WIPO) 홈페이지에 접속(<http://www.wipo.int/madrid/en/>)하여 사후지정신청(e-Renewal) 항목을 클릭합니다.



2. 국제등록번호(IRN) 기재

-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명의인의 국제등록번호(IRN)를 기재합니다

This screenshot shows the "Madrid E-Renewal Service" pag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Home", "IP Services", "Madrid System", and "Madrid E-Renewal Service". On the right, it says "WIPO | MADRID".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Madrid E-Renewal Service". It says: "This service allows you to renew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mark, including during the grace period. You can pay the fees using a WIPO Current Account or a credit card. Fees a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ommon Regulations." To the right is a "Useful links" sidebar with links to "Key Features", "Form MM11", "How to pay", and "How to manage a registration : Renewal". At the bottom, a note says: "As of July 6, 2017, the e-Renewal service will be available 3 months before the renewal date of your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e cost of your renewal will not be affected by fee changes implemented after you submit your payment." The form itself has a field labeled "Enter you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IRN)" with an input box containing "948273". There are "Submit" and "Reset" buttons at the bottom.

3. 국가지정

- 갱신신청을 원하는 국가 명칭의 앞에 있는 속에 체크를 합니다.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formation

IRN 948273 CABAL Online

Holder ESTsoft Corp.
3 Banpo-daero,
(Seocho-dong, EST Building),
Seocho-gu
Seoul 137-867
KR

Representative Kiwon PARK,Kiwon PARK Patent Law Office

Based on the information recorded up to date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be renewed for the following Contracting Parties (CPs). Those CPs for which a total refusal (whether final or provisional) i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appear in blue. CPs for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may not be renewed are listed in red. Please select below the Contracting Parties for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to be renewed or select all using the appropriate link.

Contracting Parties

IS (Iceland) SZ (Swaziland)
 NO (Norway) US (United States of America)

Select all Unselect all

Back Next

4. 최종검토

- 갱신신청서에 기재한 국가 및 수수료 내용이 맞는지 최종확인을 합니다.

Contracting Parties selected

NO (Norway)

Fees Details

Description	Details	Amount
Renewal basic fee:		653
Renewal grace period charge:		326.5
NO (Norway)		314
Total (CHF)		1293.5

Related Links

Schedule of Fees
Individual Fees
How to manage a registration: Renewal

Note on renewal fees: The e-Renewal tool generates an estimate of renewal fees. In limited cases, this amount may change following the examination of your renewal request and a determination of classes of goods and services for your international registration. For payments made using a WIPO Current Account, the final fee assessed following examination will be debited from your account. For payments made by credit card, WIPO will communicate with you if additional fees are due following examination.

Back Next

5. 수수료 결제

- 갱신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최종 확인이 끝나면 수수료를 결제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수수료 납부의 자세한 사항은 제9절 참조)

9

Section

Madrid guide

수수료**제1장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 먼저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기초 출원(등록)과 국제출원 간의 일치 여부를 방식심사하는 데 드는 비용과 국제출원서 등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 납부방법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별 납부수수료는 본장 제2절 제1장에 기재된 수수료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 수수료 납부주체와 납부처** : 국제출원인 직접 국제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금융계좌에 납부합니다(마드리드 국제출원은 PCT 국제출원과 달리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 납부기간** : 국제출원에 필요한 수수료는 국제출원서가 WIPO에 송부되기 전에 미리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의정서 제8조 제2항).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WIPO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송부한 날에 출원인에게도 국제출원서를 송부하였음을 통지하는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국제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금액의 선납으로 발생하는 출원인의 불편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국제수수료 납부 화폐** : 스위스프랑(CHF)

4. 국제수수료의 종류

- 가. 기본수수료 : 표장이 흑백인 경우 653CHF, 색채인 경우 903CHF입니다.
- 나. 추가수수료 : 3개류 초과 1류당 100CHF이며 3개류까지는 같은 금액입니다
(개별수수료 징수를 선언한 국가 이외의 국가를 지정한 경우 적용).
- 다. 보충수수료 : 1지정국당 100CHF입니다(개별수수료 징수를 선언한 국가 이외의
국가를 지정한 경우 적용).
- 라. 개별수수료 :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 징수 대신 개별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한 체약당사자를 지정한 경우 적용되며 개별수수료는 각 체약당사자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수수료 징수를 선언한 체약당사자만을 지정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 보충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개별수수료는
환율변동, 각 개별수수료 징수국의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수수료 선언국과 각 선언국별 수수료 내역은 WIPO홈페이지
<http://www.wipo.int/madrid/en/fees>)의 「Individual Fees under the Madrid
Protoco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국제수수료별 사용 용도
- 기본수수료는 WIPO 운영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개별수수료는 WIPO에서
일단 수령 후 지정된 개별수수료 선언국 특허청 계좌에 재송금하고,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는 개별수수료 선언국이 아닌 지정국에 배분되어 심사비용으로
충당됩니다.

바. 이상의 국제수수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본수수료 (A)	추가수수료 (B)	보충수수료 (C)	개별수수료 (D)
국제출원 (=A+B+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재표장 903CHF ■ 흑백 표장 653CH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수수료 : 3개류 초과한 류 개수당 100CHF (지정된 체약당사자가 모두 개별수수료 납부 대상이면 추가수수료 납부하지 않음) 		
사후지정 (=A+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CHF (표장의 색재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수수료 : 개별수수료를 선언하지 않은 지정체약당사자당 100CH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체약당사자가 정한 금액
존속기간 갱신 (=A+B+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3CHF (표장의 색재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수수료 : 3개류 초과한 류 개수 당 100CHF (지정된 체약당사자가 모두 개별수수료 납부 대상이면 추가수수료 납부하지 않음) 		
명의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건당 177CHF (명의이전 내용이 전부 · 일부 불문, 개별수수료 선언 불문) 			

사. 국제수수료 계산 예시

예시 1) : 대한민국 출원인이 표장은 색채, 지정상품은 4개류로 하고 독일, 러시아, 미국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한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2017년 12월 기준 독일, 러시아는 개별수수료 선언국이 아니며 미국은 개별수수료 선언국으로 1개류당 388CHF을 징수함)

기본수수료 (색채)	+	추가수수료 (1개류×100)	+	보충수수료 (2개국×100)	+	개별수수료 (4개류×388)	=	수수료 총액
903		100		200		1,552		2,755

예시 2) : 대한민국 출원인이 표장은 색채, 지정상품은 4개류로 하고 독일, 러시아, 미국을 지정하여 사후지정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의 총액은? (독일, 러시아는 개별수수료 선언국이 아니며 미국은 개별수수료 선언국으로 사후지정시 1개류당 388CHF을 징수함)

기본수수료 (색채구분 없음)	보충수수료 (2개국×100)	개별수수료 (4개류×388)	수수료 총액
300	200	1,552	2,052

※ 국제출원 수수료를 번거롭게 수작업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의 수수료자동계산기(Fee Calculator)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6편 수수료 계산기 이용편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개별수수료 등은 변동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국제수수료를 계산하는지?

⇒ 본국관청(한국특허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5. 국제사무국으로의 납부방법

가. 납부방법

- 1) WIPO에 개설된 출원인 등의 당좌계좌에서 인출
 - WIPO에 미리 당좌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최소한 5,000CHF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상세사항은 WIPO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제6편 참고자료 중 WIPO당좌계좌 관련 정보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WIPO 은행계좌입금(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 송금은행명 및 주소 :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 Swift/BIC code(은행간 통신용 코드) : CRESCHZZ80A
 - 수취인 명칭 : WIPO

- 수취인 주소 :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 계좌번호 : CH51 0483 5048 7080 8100 0
※ 수수료 납부를 의뢰하는 국내은행에 송금방법, 환율, 취급수수료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외국송금의뢰서 중 수취인에의 연락사항란에는 송금목적, 서류기호, 출원인(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기초 출원(등록)번호 또는 국제등록번호, 상표명을 기재

3) 국제우편계좌

대한민국에서 출원할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포기 간주 등으로 인한 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환급

1. 국제출원 수수료

국제출원이 국제등록 전에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기본수수료의 반액 및 보충수수료, 추가수수료 및 개별수수료를 납부자에게 환불합니다.

2. 사후지정 수수료

가.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기본수수료의 반액 및 보충수수료 및 개별수수료를 다음 경우에 한하여 납부자에게 환불합니다.

- 1)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기 전에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 2) 사후지정에 있어 모든 지정체약당사자가 의정서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협정에만 가입한 체약당사자만 지정한 경우)

나. 사후지정에 있어 지정체약당사자가 의정서에 기속되지 않는 체약당사자 중 일부를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보충수수료 및 개별수수료를 납부자에게 환불합니다.

3.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수수료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수수료의 정액을 납부하지 않아 갱신이 말소된 경우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기본수수료, 보충수수료, 추가수수료 및 개별수수료를 환불합니다.

4.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 수수료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 수수료의 반액을 국제등록명의 변경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자에게 환불합니다.

5. 감축신청 수수료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상품의 감축신청 수수료의 반액을 국제등록의 상품의 감축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자에게 환불합니다.

6. 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청료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신청료의 반액을 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자에게 환불합니다.

제4장 과오납에 의한 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환급

- 원인없이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자가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면 환불됩니다.
- 금액을 잘못하여 필요 이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정해진 요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자가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면 환불됩니다.
- 환불하는 데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수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환불 청구는 영어로 작성한 편지를 직접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 환불받습니다.

〈수수료 과납 및 포기 간주 시 수수료 반환 절차〉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요청은 WPO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반환요청 시 기재할 사항으로는 은행명, 계좌명, 계좌번호(IBAN), 국제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 반환사유 등입니다.

- <http://www.wipo.int/about-wipo/en/finance/> → Request a refund

제3편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제1절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개요

제2절 국제사무국에 대한 주요 절차

제3절 유럽연합의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신청서

1**Section**

Madrid guide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개요**제1장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 개요****1. 출원인(대리인)이 본국관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제사무국을 상대로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의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 출원인(대리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을 상대로 제출하는 서류는 국제사무국이 정한 서식(MM1 ~ MM20)과 국제등록부의 인정 초본 신청 등 서식화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서식화 되지 않은 것을 제출할 때에는 제출서류에 국제출원을 특정한 편지(letter)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출원을 특정한다는 것은 국제사무국에서 관련 국제출원을 알 수 있게 출원인(명의인)의 명칭, 주소(거소), 국제등록일 및 국제등록번호를 표시하면 되고, 편지는 A4크기의 용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2. 편지의 언어

- 출원인(명의인)이 국제사무국에 보내는 편지는 국제출원서에서 사용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3. 편지의 서명

- 출원인(명의인)이 서명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4. 국제사무국의 수신처

- 주소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 전화 : (Madrid Customer Service): +41 (0)22 338 8686
- 팩스 : (Madrid Registry): +41 (0)22 740 1429
- Contact : <http://www3.wipo.int/contact/en/nadrid/>

제2장 국제사무국에 수수료 납부

1. 절차 진행 시 납부하는 수수료

절차 진행 시에는 제9절 제2장(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아래 제2절(국제사무국에 대한 주요 절차)에 기재된 금액을 국제사무국에 스위스프랑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통지에 기초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수수료 미납 등으로 하자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상품의 분류에 관한 하자 통지에 의하여 추가 발생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국제사무국의 은행계좌

- 송금은행명 및 주소 :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 Swift/BIC code(은행간 통신용 코드) : CRESCHZZ80A
- 수취인 명칭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수취인 주소 : WIPO,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211 Geneva 20 Switzerland
- 계좌번호 : CH51 0483 5048 7080 8100 0

2**Section**

Madrid guide

국제사무국에 대한 주요 절차

아래의 절차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국관청(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제1장 감축신청서(MM6)**1. 신청용도**

지정체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축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 177CHF**4. 효과**

지정체약당사자로부터 가거절통지가 온 경우 해당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상품을 감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감축한 상품의 경우 국제등록부에 최초 등록된 상품이 삭제되지 않으므로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장 포기신청서(MM7)**1. 신청 용도**

일부 지정체약당사자(모든 지정체약당사자는 인정되지 아니함)에 대한 상품의 전부를 포기할 경우에 신청합니다(지정상품의 일부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무국은 해당 신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효력이 미치는 지정국관청에 통지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 없음

3. 효과

일부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모든 지정 상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의 포기는 아래의 취소신청서(MM8)에 의해 가능합니다) 한편, 포기한 상품은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취소신청서(MM8)

1. 신청 용도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일부 지정체약당사자는 인정 안됨)에 해당 지정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국제사무국은 해당 신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모든 지정국관청에 통보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 없음

3. 효과

모든 상품을 취소하면 국제등록은 국제등록부로부터 말소됩니다. 국제등록부로부터 말소된 경우 사후지정이 불가능하며, 또한 일부 취소의 경우에도 취소된 지정 상품을 사후지정으로 재차 지정할 수 없으며 신규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MM6, MM7, MM8의 차이점

사용 서식	지정체약당사자	지정 상품	사후지정
MM6(감축신청서)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가능
MM7(포기신청서)	일부	전부	가능
MM8(취소신청서)	전부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

제4장 감축·포기·취소 서식 작성 관련 사항

1. 국제등록번호

해당 국제등록번호를 표시합니다. 국제출원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권리자에게 통지되지 않아 국제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국제등록 명의인

명의인의 성명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의 선임

이미 등록된 대리인에 대하여 변경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하며, 선임된 대리인과 다른 대리인을 기재할 경우 이전 대리인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4. 체약당사자의 표시

CONTRACTING PARTIES란에 해당되는 체약당사자를 적절히 표시합니다.

5. 상품

GOODS AND SERVICES란에 해당되는 지정상품 또는 류번호를 적절히 기재합니다.

6. 국제등록 명의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국제등록 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제5장 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청서(MM9)

1. 신청 용도

명의인(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법적성격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2. 주의사항

- 동일한 명의인의 이름으로 된 여러 건의 국제등록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고, 변경사항은 변경된 정보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즉 성명만 변경된 경우 성명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국제등록부의 교신용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교신용 주소를 기재하며, 교신용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기존 교신용 주소가 유지됩니다.
- 이미 선임된 대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서식의 대리인란은 공란으로 두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등록 명의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납부수수료 : 150CHF (단, 전화번호, FAX 번호의 변경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제6장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신청서(MM10)

1. 신청 용도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 없음

제7장 대리인선임신청서(MM12)

1. 신청 용도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2.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 없음

제8장 사용권등록신청서(MM13)

1. 신청 용도

지정체약당사자(사용권 적용 유보국에는 인정되지 않음)에 대한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권(License)을 등록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 사용권 적용 유보국 :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권은 당해 국가에서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한 국가를 말하며 우리나라도 의정서 가입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권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사용권에 관하여 국제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국내 상표등록원부에 사용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2. 국제사무국으로의 납부수수료 : 177CHF

3. 효과

아래의 사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용권자(Licensee)의 성명(명칭)
- 나. 지정체약당사자 또는 지정체약당사자의 일부 지역
- 다.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 라. 사용권 기간
- 마. 사용권의 종류(전용, 단독) 등

제9장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서(MM14)

1. 신청 용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권에 관하여 기록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국제사무국으로의 납부수수료 : 177CHF

제10장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서(MM15)

1. 신청 용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권에 관하여 기록된 사항을 취소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국제사무국으로의 납부수수료 : 없음

3. 효과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권에 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합니다.

제11장 명의인의 처분권 제한등록신청서(MM19)

1. 신청 용도

권리자(명의인)의 처분권을 제한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2. 국제사무국으로의 납부수수료 : 없음

3. 효과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명의인의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장 절차계속신청서(MM20)

1. 신청 용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출원인 및 권리자가 해당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2. 절차계속신청이 가능한 절차

구분	절차계속신청 대상 절차	관련규정
1	국제출원서의 출원인이 치유하는 하자 치유 - 표장의 설명 · 음역, 출원인 이름 · 주소 등에 대한 하자	Rule 11(2)
2	국제출원서의 수수료 납부	Rule 11(3)
3	2차 개별수수료 납부	34(3)(c)(iii)
4	사용권 등재신청에 대한 하자 치유	Rule 20bis(2)
5	사후지정 신청에 대한 하자 치유	Rule 24(5)(b)
6	변경 · 취소 등재신청에 대한 하자 치유	Rule 26(2)
7	특정 승계국에서의 국제등록의 효력의 계속 신청	Rule 39(1)

* 국제사무국에서 취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적용됨

3. 적용 요건

원절차의 기한 만료일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원절차의 하자를 모두 치유
- 절차계속신청서 제출
- 절차계속에 대한 수수료(200CHF)를 납부

제13장 국제등록부의 기록 정정 신청서(MM21)

1. 신청 용도

국제등록부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2. 신청 기한

- 오류에 대한 책임이 WIPO에 있는 경우 : 기한 없음
- 오류에 대한 책임이 관청에 있는 경우 : 국제등록의 공고일로부터 9개월
- 오류에 대한 책임이 출원인(대리인)에 있는 경우 : 정정신청 불가

3**Section**

Madrid guide

유럽연합의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신청서

유럽공동체상표청(EUIPO)에 직접 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특허청(본국관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제1장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신청서(MM16)**1. 신청 용도**

국제등록이 유럽연합에서 취하, 거절, 실효 등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그 상표의 소유권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 관청에 대해 국가의 국내 상표출원으로 전환(Convers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은 통상의 사후지정과는 다릅니다)

2. 서식 작성 및 제출

신청서에는 해당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 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 전환하는 근거, 지정체약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등록 명의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인 된 대리인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은 반드시 체약기구의 관청인 (EUIPO)을 거쳐 국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국제사무국으로의 납부수수료 :

(기본수수료) 300CHF +보충수수료 + 개별수수료

4. 효과

전환 신청이 유럽공동체법령에 의해 규정된 기간 내(취하, 거절, 실효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 국제등록일(또는 사후지정일)과 동일한 출원일이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또는 선순위권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제4편

지정국 절차

제1절 지정국 절차 개요

제2절 주요 지정국 절차

1 Section

Madrid guide

지정국 절차 개요

제1장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상품분류 심사, 상품표시 심사, 수수료 납부 여부 확인 등)한 경우 그 국제출원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에 그 국제등록을 통지합니다.

제2장 지정통지 언어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언어(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로 송부합니다.

제3장 각 체약당사자를 지정한 국제등록의 효력

1. 국내 상표등록출원과 동일한 효과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에 각 해당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직접 출원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에 지정국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기한 이내에 거절 통지하지 않으면 등록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 또는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가거절을 의미)이 통지되지 아니하거나 통지된 거절이 사후에 철회(가거절 철회를 의미)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체약당사자 관청에 의하여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우선권 인정

파리협약의 동맹국이거나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출원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된 모든 국제등록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은 국제출원에 지정된 체약당사자뿐만 아니라 우선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지정된 체약당사자에도 유효합니다.

제4장 거절이유 통지 기간

1. 거절이유(가거절) 통지 기간 및 거절이유 통지의 기산일

지정국은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의 기간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1년의 기간 대신에 18개월 이내에 거절통지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정체약당사자에서는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이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거절이유 통지 기간의 기산일은 국제등록일이 아니라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임을 주의해야 합니다(지정통지서에서는 하단에 Date of Notification 란에 기재된 일자가 거절이유 통지 기간의 기산일입니다).

2. 가거절 통지일자는 발송주의를 적용

가거절 통지일자는 ‘발송일’ 기준입니다. 통상 의정서 및 하위규정에서는 기간의 만료일은 일반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되나, 가거절 통지일은 예외적으로 발송주의가 적용됩니다.

3. 기간 이내에 가거절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의 효력

의정서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가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지정국관청은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를 거절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지정국관청은 가거절통지 기간 이내에 거절에 대한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18개월 이후에도 가거절 통지가 가능한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 통지를 지정통지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선언한 지정체약당사자가 ①18개월 기간의 만료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Notification of Possibility of Late Opposition)를 18개월 기간의 만료 전에 국제사무국에 미리 하고 ②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 통지가 이의신청 기간의 만료 시부터 1개월 이내에 행해진 경우에는 18개월 이후에도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지정체약당사자에서의 심사

파리협약에서 정한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 지정국관청은 자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상의 국내출원과 마찬가지로 국제등록된 상표에 대한 보호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2**Section**

Madrid guide

주요 지정국 절차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할 때 주로 지정하는 체약 당사자인 중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밖의 지정체약당사자 정보는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madrid/memberprofile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중국(China, CN)**1. 지정국관청 (SAIC)**

문의처 :

Trademark Office of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of 1,
Chama Nanjie, Xichengqu, Beijing, CN-100055, China

Phone number: + 86 10 63219000

Contact Person : Sijing Zhang

Email: zhangsijing@saic.gov.cn

Phone number:+ 86 10 63219561

2. 일반 정보

가. 의정서 발효 : 1995. 12. 1. (마드리드 협정 가입일 : 1989. 10. 4.)

나. 선언내용

- 1) 거절통지기간을 1년 대신 18개월로 함[Article 5(2)(b) of the Protocol
(Extension of refusal period to 18 months)]

- 2) 이의신청에 기초한 거절통지는 18개월 이후에도 가능[Article 5(2)(c) of the Protocol (Possible notification of refusal based on opposition, after 18-month time limit)]
- 3) 보충수수료와 추가 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 징수[Article 8(7)(a) of the Protocol (Charge individual fee)]
- 4) 국제사무국에 통지된 직권 거절은 중국 법령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없음[Rule 17(5)(e) (Ex officio provisional refusals not open to review before the Office)]
- 5) 국제등록부에의 사용권 등록은 중국 내에서는 효력이 없음[Rule 20bis(6)(b) (Recording in International Register has no effect)]
- 6) 관청이 출원인으로부터의 수수료의 징수 및 국제사무국에의 송금 [Rule 34(2)(b) (Office collects and forwards fees to International Bureau)]

다. 관계 법령

- 1) 중국어 : <http://sbj.saic.gov.cn/zcfg/sbjflfg/>
- 2) 영어 : <http://www.saic.gov.cn/sbj/sbjEnglish/LawsRegulations/>

3. 지정국관청 심사정보

가. 재공고(Republication)

이의신청을 위한 국제등록의 재공고를 하지 않음

나.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

- 1) 직권에 의한 심사(ex officio examination) : 절대적 거절이유(absolute grounds)와 상대적 거절이유(relative grounds)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함
- 2) 이의신청 기간(Opposition Period)
WIPO의 국제공고일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연장 불가)

- 3) 가거절에 대한 대응기간(Time Limit for Responding to Provisional Refusal)
권리자가 가거절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연장 불가)

다. 기타 사항

- 1) 니스분류에 관한 정보

Nice Classification의 모든 상품 류 제목을 인정(Office accepts Nice Classification Class Headings.)

- 2) 지정국관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국내대리인 목록 참조 사이트(중국어)
<http://sbj.saic.gov.cn/sbdl/>

- 3) 단체표장과 증명표장(Collective and certification Marks)

관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국제등록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함

- 4) 대체(Replacement)

대체신청은 공식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별도로 필요 없음

- 5) 전환(Transformation)

전환은 공식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며 재출원 수수료는 없음

- 6) 사용의사선언서(Requirement of intention to use, and form in which such intention must be submitted)

요구하지 않음

제2장 미국(USA, US)

1. 지정국관청(USPTO)

문의처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Madrid Processing Unit
600 Dulany Street, MDE-7B87, Alexandria, VA 22314-5793

Phone number: +1-571-272-9375

E-mail : MPU@uspto.gov

Internet : <http://www.uspto.gov/web/trademarks/madrid/madridindex.htm>

Contact person :Ms. LaShawn Cave, Supervisor of Madrid Processing Unit

E-mail : lashawn.cave@uspto.gov

2. 일반 정보

가. 의정서 발효 : 2003. 11. 2.

나. 선언내용

- 1) 거절통지기간을 1년 대신 18개월로 함[Article 5(2)(b) of the Protocol (Extension of refusal period to 18 months)]
- 2) 이의신청에 기초한 거절 통지는 18개월 이후에도 가능[Article 5(2)(c) of the Protocol (Possible notification of refusal based on opposition, after 18-month time limit)]
- 3) 보충수수료와 추가 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 징수[Article 8(7)(a) of the Protocol (Charge individual fee)]
- 4)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는 표장에 대한 사용의사선언서가 같이 제출 되어야 함[Rule 7(2) (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mark)]

다. 관계 법령

<https://www.uspto.gov/trademark/laws-regulations>

3. 지정국관청 심사정보

가. 재공고(Republication)

이의신청을 위한 국제등록의 재공고를 하고 있음

나.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

- 1) 직권에 의한 심사(ex officio examination) : 절대적 거절이유 (absolute grounds)와 상대적 거절이유 (relative grounds)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함
- 2) 이의신청 기간(Opposition Period)
USPTO 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180까지 연장 가능)
- 3) 가거절에 대한 대응기간(Time Limit for Responding to Provisional Refusal)
: 가거절 통지일로부터 6개월 (연장 불가)

다. 기타 사항

1) 니스분류에 관한 정보

USPTO는 15류의 제목만을 인정합니다. USPTO는 인정받을 수 있는 상표 명칭에 대한 검색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enerally, Nice class headings are not sufficiently precise for US requirements for iden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such as “musical instruments” in Class 15]

USPTO는 인정받을 수 있는 상표 명칭에 대한 검색사이트(the ID Manual)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tmidm.uspto.gov/id-master-list-public.html>]

2) 지정국관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선임된 대리인은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 함[Holders are not required to appoint a local representative to respond to a provisional refusal.]

외국 출원인의 국내 대리인 지정

출원인이 미국 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출원인은 USPTO에 서면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정된 자에게 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한 통지서가 전달된다. 만약 출원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를 지정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최후 지정된 자가 제출된 서면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 통지서는 Director(미국특허상표청장을 말함)에게 전달된다.

§2.24 Designation of domestic representative by foreign applicant.(RULES OF PRACTICE & FEDERAL STATUTES)

If an applicant is not domiciled in the United States, the applicant may designate by a document filed i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he name and address of some person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on whom may be served notices or process in proceedings affecting the mark. If the applicant does not file a document designating the name and address of a person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on whom may be served notices or process in proceedings affecting the mark, or if the last person designated cannot be found at the address given in the designation, then notices or process in proceedings affecting the mark may be served on the Director.

3) 단체표장(Collective Mark)

증명 기준은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함

4) 보증표장(Guarantee Marks)

보증표장은 보호되지 않음

5) 대체(Replacement)

대체의 등록은 USPTO에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해야 함

6) 재출원(Transformation)

재출원은 공식서식을 이용해서 신청해야 함

7) 사용의사선언서(Requirement of intention to use, and form in which such intention must be submitted)

사용의사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MM18을 이용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5년과 6년 사이에도 사용의사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이유와 상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당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사용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표 등록 후 6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당해 상표등록은 취소됨

제3장 일본(Japan, JP)

1. 지정국관청 (JPO)

마드리드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처 :

Japan Patent Office (JPO),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 8915

Internet : <http://www.jpo.go.jp>

Contact for Filing International Applications or other Requests : IOffice for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s under the Madrid Protocol

Tel. : +81 (3) 3501 1913 Fax : +81 (3) 3580 8033

E-mail : PA1B00@jpo.go.jp ((indicate "Question about Madrid Protocol" as subject))

Contact for the Outline of the Madrid System in Japan : Trademark Policy Planning Office, Trademark Division

Tel. : +81 (3) 3580 8012

Fax : +81 (3) 3595 2747

E-mail : PA1T80@jpo.go.jp (indicate "Question about Madrid Protocol" as subject)

2. 일반 정보

가. 의정서 발효 : 2000. 3. 14.

나. 선언내용

- 1) 거절통지기간을 1년 대신 18개월로 함[Article 5(2)(b) of the Protocol (Extension of refusal period to 18 months)]

- 2) 보충수수료와 추가 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 징수[Article 8(7)(a) of the Protocol (Charge individual fee)]
- 3) 국제등록부에의 사용권 등록은 일본 내에서는 효력이 없음[Rule 20bis(6)(b) (Recording of licenses provided for under domestic law, but recording of licenses in International Register has no effect)]
- 4) 개별수수료의 분할 납부 [Rule 34(3)(a)(Individual fee payable in two parts).]
 - ※ 두 번째 부분의 개별수수료는 등록료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WIPO 국제사무국에 수수료 납부기일을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은 다시 출원인(국제등록 명의인)에게 통지한다. 두 번째 부분의 개별수수료가 기한 내에 국제사무국에 납부되지 않으면 당해 지정국에 대한 국제출원은 취소된다.

3. 지정국관청 심사정보

가. 재공고(Republication)

이의신청을 위한 재공고를 함

나.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

- 1) 직권에 의한 심사(ex officio examination) : 절대적 거절이유(absolute grounds)와 상대적 거절이유(relative grounds)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함
- 2) 이의신청 기간(Opposition Period)

상표권 권리부여 후의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임(연장 불가)
- 3) 가거절에 대한 대응기간(Time Limit for Responding to Provisional Refusal)

가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연장 가능)

다. 기타 사항

1) 니스분류에 관한 정보

아래의 상품 명칭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Office does not accept the following terms under Nice Class Headings)

Class 1: Chemicals used in industry, science and photography, as well as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Class 6: Ironmongery, small items of metal hardware,

Class 7: Machines and machine tools,

Class 9: Scientific, nautical, surveying,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optical, weighing, measuring, signaling, checking (supervision), life-saving and teach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Class 12: Vehicles,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air or water,

Class 17: Rubber, gutta-percha, gum, asbestos, mica and goods made from these materials and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packing, stoppers and insulating materials,

Class 22: sacks,

Class 31: agricultural, hort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Class 36: Financial affairs, monetary affairs,

Class 37: Repair,

Class 40: Treatment of materials,

Class 41: Sporting and cultural activities,

Class 42: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rvices and research and design relating thereto,

Class 45: Personal and social services rendered by others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s.

2) 지정국관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일본 내에 거소 또는 주소가 없는 재외자는 일본 특허청에 의견서나 보정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 일본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일본 국내 대리인 목록 참조 사이트 : <http://www.jpaa.or.jp>

3) 단체표, 보증표장, 증명표장(Collective, Guarantee, and Certification Marks)

단체표장의 권리자가 당해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WIPO에 통지되는 가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표장과 증명표장은 일본에서 보호받지 못함

4) 대체 (Replacement)

대체에 관한 기록은 국제등록 명의인(권리자)이 JPO에 신청해야 함

5) 전환(Transformation)

가) 국제표장이 취소일 전 또는 취소일에 일본에서 등록되지 않았다면 JPO는 재출원한 출원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하여 심사한다.

이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a) Filing fee : 3,400 JPY plus 8,600 JPY per class.

b) Registration fee : 37,600 JPY per class payable at the time of registration

나) 국제표장이 취소일 전 또는 취소일에 일본에서 등록되었고 재출원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JPO는 다시 심사를 하지 않으며 다음 수수료가 납부 되어야 함.

Filing fee : 3,400 JPY + 8,600 JPY per class

6) 사용의사선언서(Requirement of intention to use, and form in which such intention must be submitted)

요구하지 않음

제4장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1. 지정국관청(EUIPO)

마드리드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처 :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venida de Europa, 4 E-03008 Alicante, Spain

Tel. : +34 9659 100

E-mail : information@euiipo.europa.eu

Internet : www.euiipo.europa.eu

※ 유럽연합(EU)의 현재 가입국은 2018. 2. 현재 28개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규 가입, 탈퇴 여부를 필요한 경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europa.eu/about-eu/member-countries/index_en.htm)

- 유럽연합 회원국 :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 Malta를 제외하고는 EU의 회원국은 모두 마드리드 시스템의 체약당사자이기도 합니다.

2. 일반 정보

가. 의정서 발효 : 2004. 10. 1.

나. 선언내용

- 1) 거절통지기간을 1년 대신 18개월로 함[Article 5(2)(b) of the Protocol (Extension of refusal period to 18 months)]
- 2) 보충수수료와 추가 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 징수[Article 8(7)(a) of the Protocol (Charge individual fe)]

다. 관계 법령

<https://euipo.europa.eu/ohimportal/law-and-practice>

3. 지정국관청 심사정보

가. 재공고(Republication)

이의신청을 위한 재공고를 함

나. 심사절차(Examination Procedure)

- 1) 직권에 의한 심사(ex officio examination) : 절대적 거절 이유(absolute grounds)에 대한 심사와 공동체 서치 리포트 작성만을 함
- 2) 이의신청 기간(Opposition Period)
3개월(공고 후 1개월부터 4개월까지), 연장은 불가
- 3) 가거절에 대한 대응기간(Time Limit for Responding to Provisional Refusal)
EUIPO에 의한 가거절 통지일로부터 2개월 (연장 가능)

다. 기타 사항

1) 니스분류에 관한 정보

니스분류의 모든 상품의 류 제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음 (Office accepts some, not all, Nice Classification Class Headings)

2) 지정국관청에 대한 대리인 선임

권리자가 주소 또는 주요 사업장소, 진정하고 실효적인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유럽 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EUIPO에 직접 대응할 수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3) 단체표장, 보증표장, 증명표장(Collective, Guarantee Marks, Certification marks)

보증표장과 증명표장은 인정되지 않음. 단체표장과 관련해서는 표장의 사용에 적용되는 규정은 국제사무국이 EUIPO에 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EUIPO에 직접 제출되어야 함

4) 대체(Replacement)

대체신청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해야하며, 수수료 없음

5) 전환(Transformation)

전환청은 EU의 모든 언어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EU직접출원과 동일함

6) 사용의사선언서

요구하지 않음

제5편

전자출원

제1절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요

제2절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1 Section

Madrid guide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요

제1장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개요

가. 통합서식작성기(PKEAPS)

- 1) 신규 출원서, 중간서식, 등록서식, 심판절차의 서식 등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규정한 모든 서식과,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과 관련된 WIPO에서 규정한 서식(MM서식) 중 본국관청에 제출하는 서식을 작성할 수 있고, 서식 제출시 필요한 위임장, 증명서 등을 스캔 및 변환하여 서식에 손쉽게 첨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 ※ MM서식 중 작성 가능 서식 종류 : MM2(국제출원서), MM4(사후지정신청서), MM5(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 MM11(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 ※ 위 서류를 제외한 MM서식은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없으나 WIPO가 제공하는 MS-WORD 또는 PDF형식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WIPO 국제사무국으로 직접 송부해야 함

- 2) 통합서식작성기의 마드리드 본국관청 관련 서식

- 가)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선임, 사임, 해임 등에 이용
 - ※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 : 사전등록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으로 가능

- 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국제출원서 등 : 국제출원서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 국제등록존속기간 갱신신청,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서 제출에 이용
 -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 대체서류 또는 보정서 제출에 이용
 - 하자보정서 등 : WIPO 하자통지서에 대한 영문 답변서 제출에 이용

- 다) 국제출원 등 취하서 : 특허청에 신청한 명의변경신청, 존속기간갱신신청, 국제출원, 사후지정을 WIPO에 발송 전에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

3) 첨부서류작성기

첨부서류(예: 위임장, 재학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스캐닝하여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첨부서류 : 위임장, MM17(Claim of seniority), MM18(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the Mark), 영문 의견서 등

2. 마드리드 전자출원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

가. 마드리드 전자출원 이동 경로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를 이용하여 전자출원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특허로(전자출원포털) 메뉴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patent.go.kr 입력하면 특허로에 이동하여 전자출원 안내 및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초기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KIPPO homepage with various service links and search functions. The '특허로' link is specifically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main banner features the text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Strengthening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veness) and '2017 업무계획 사이트' (2017 Work Plan Site). The right sidebar lists several services under '특허청 주요서비스' (Main Services of the Patent Office) and '주요서비스 상세설명' (Detailed Description of Main Services), including 'KIPPO Plus' and 'IP.NAVI'. The bottom section includes social media links and a news feed.

나. 특허로(전자출원) 초기화면(<http://www.patent.go.kr>)

특허로 주요 서비스

국내출원신청	심판청구	제출결과조회	통지서수신함
특허보관함	증명서발급신청	증명서수신함	수수료납부

전자출원서비스 이용시간

- 월~토요일 00:00~24:00
- 일요일 09:00~21:00

고객상담센터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상담센터 1544-8080

고객센터

- 1:1 원격상담
- 오류제거조치안내
- 표준 XML 및 검증SW

관련서비스

- 특허정보검색
- 분류코드검색
- 법령자료
- 민원서식 다운로드
- 명세서작성관련 유용한 Tip

다. 파일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특허로

출원신청 특허관리 증명서발급 수수료관리 고객센터 전체메뉴보기

문서작성SW 설치

문서작성/열람기

구분 제공내역 다운로드

New 통합문서작성기(NK-Editor) 전자출원에 필요한 전용 S/W를 일괄(통합) 설치 합니다.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경우에는 아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Global Editor는 통합설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MS-Word 2007 설치와 초기설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운로드

구분 제공내역 다운로드

New 통지서 열람기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한 통지서 및 증명서류를 열람하고 인쇄 할 수 있는 전자출원S/W이며, 통지서 검색 및 편의기능이 항상 되어 개선된 사용자 환경을 지원합니다.

다운로드 사용설명서

구분 제공내역 다운로드

서식작성기(KEAPS)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서 및 중간절차서(의견서 등) 및 등록과 심판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전자출원S/W입니다.
※ 특허문서작성기로 명세서, 보조서 등을 작성, 접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가능한 특수문자 리스트

다운로드 사용설명서

통합서식작성기(PKEAPS) UPDATE 신규 출원서, 중간서식, 통합서식, 심판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상표출원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본국관청 제출서류 중 WIPO에 제출하는 국제상표출원서류를 작성하며, 서식 제출시 필요한 위임장, 증명서 등을 스캔 및 번역하여 서식에 손쉽게 첨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전자출원S/W입니다.

다운로드 사용설명서

- ※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특허로 초기화면 주요서비스 중 출원신청 > 국제상표출원 > 전자출원SW 설치 > 통합서식작성기 (PKEAPS) 다운로드 후 설치
- ※ 사용설명서를 PDF 파일로 다운 가능

2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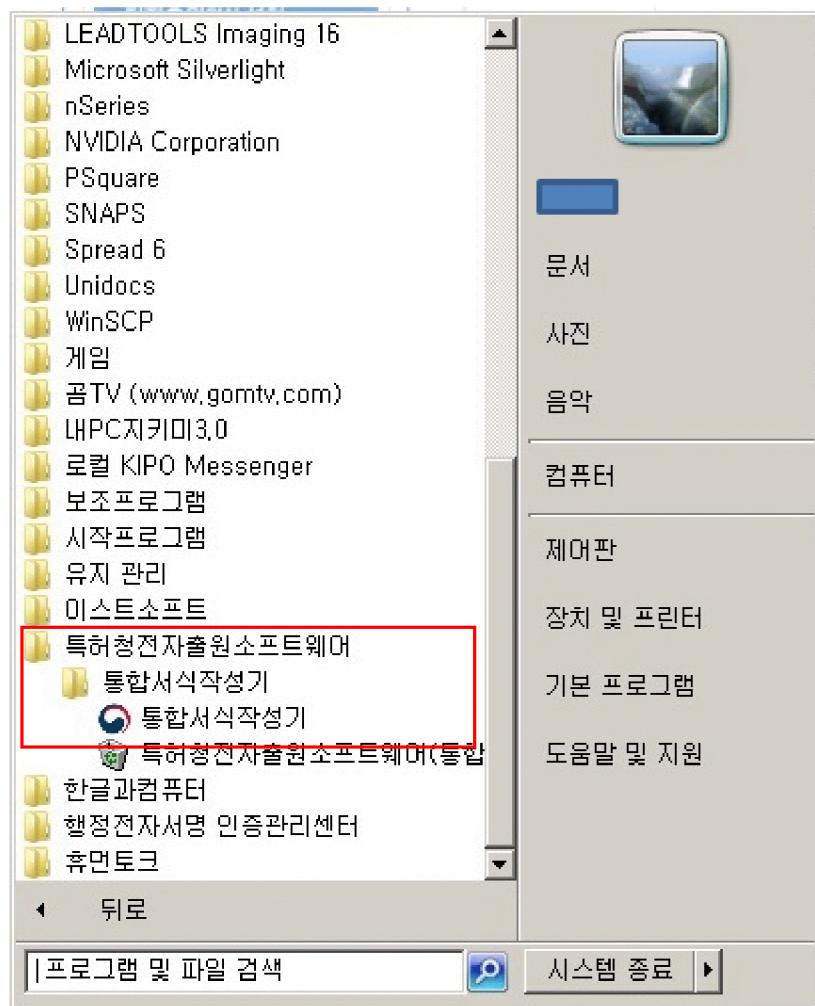
Madrid guide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제1장 국제출원서 및 첨부서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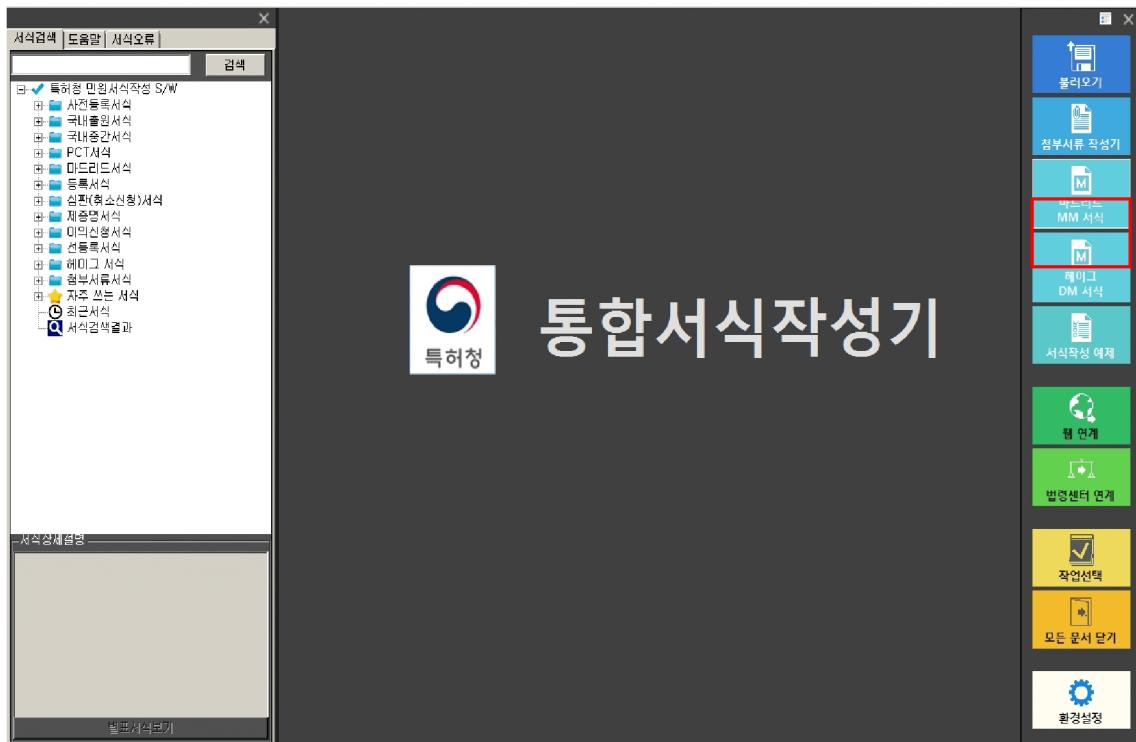
1. 통합서식작성기 실행

시작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그룹 중 특허청전자출원소프트웨어 > 통합서식작성기를 선택하여 프로그램 실행



2.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한 국제출원서(MM2) 작성

가. 오른쪽 메뉴에서 마드리드 MM서식 중 MM2(국제출원서)를 선택하여 서식을 불러오기



나. 작성 시 주의사항

전자출원 시 주의사항이며, 자세한 서식 작성요령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 도움말 또는 서식편 가이드를 참조

1) 출원인에 의해 작성 되는 난

<u>For use by the applicant</u>	<u>For use by the Office</u>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ncludes the following number of: - continuation sheets: - MM17 forms: Applicant's reference:	Office's re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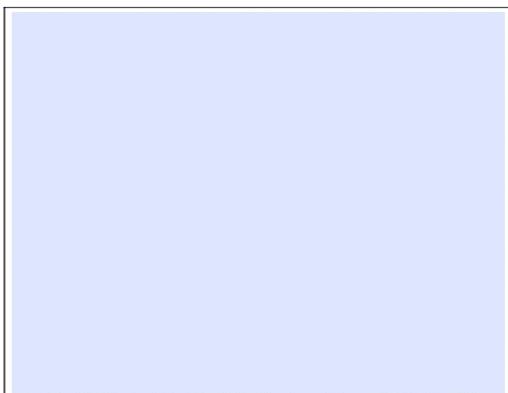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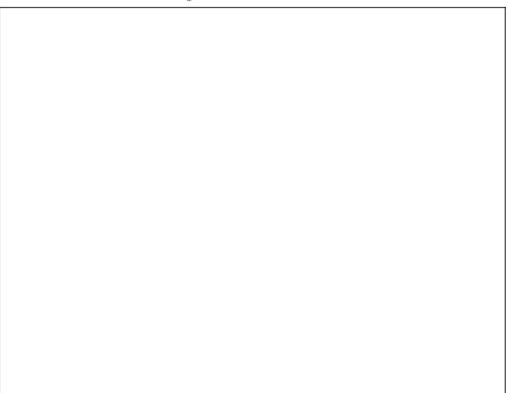
- 좌측 상자안의 연속용지 매수와 MM17 서식 수는 자동 반영되니 기재할 필요 없으며, Applicant's reference 난은 직접 기재
- 우측 Office's reference는 특허청에서 기재하는 난이니 공략으로 둠

2) 본국관청이 속하는 체약당사자의 표시

1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 IS THE OFFICE OF ORIGIN REPUBLIC OF KOREA

- 본국관청인 체약당사자를 기재하는 난으로서 프로그램상 'REPUBLIC OF KOREA'라고 자동 입력

3) 표장의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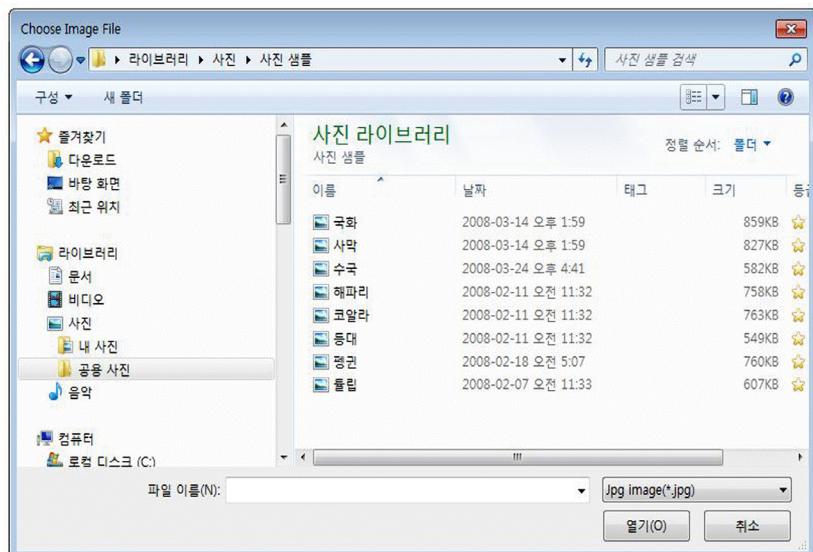
7 THE MARK (a) Place the reproduction of the mark, as it appears in the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in the square below. 	(b) Where the reproduction in item (a) is in black and white and color is claimed in item 8, place a color reproduction of the mark in the square below. 
---	--

Remove

(a) 박스안에 포인터를 대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그림 삽입을 선택합니다.

(b) 아래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국제출원하고자 하는 표장 이미지 파일(jpg)을 삽입합니다.

<주의사항> 삽입되는 표장이미지는 반드시 확장자명이 jpg이어야 합니다.



(c) 표장이 삽입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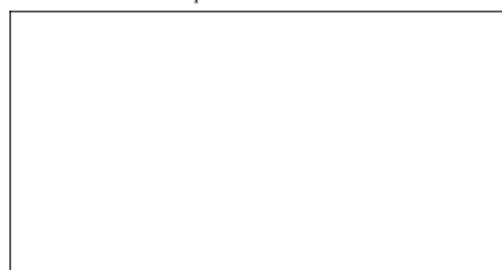
7

THE MARK

(a) Place the reproduction of the mark, as it appears in the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in the square below.



(b) Where the reproduction in item (a) is in black and white and color is claimed in item 8, place a color reproduction of the mark in the square below.



다. 통합서식작성기 도움말 이용법

6 PRIORITY CLAIMED

The applicant claims the priority of the earlier filing mentioned below.

Office of priority filing: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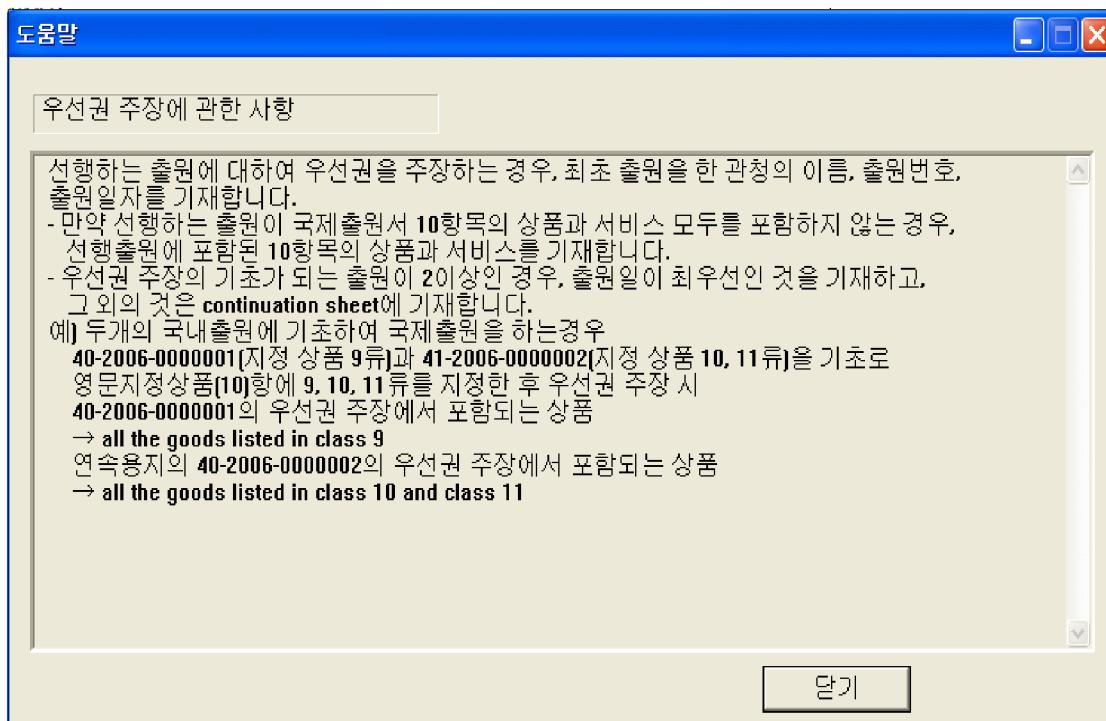
Number of earlier filing (if available): _____

Date of earlier filing: _____ (dd/mm/yyyy)

If the earlier filing does not relate to all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item 10 of this form, indicate in the space provided below the goods and services to which it does rel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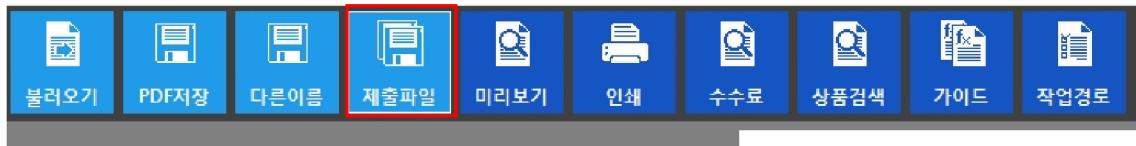
If several priorities are claimed, check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giving the above required information for each priority claimed.

- 작성하고자 하는 항목의 번호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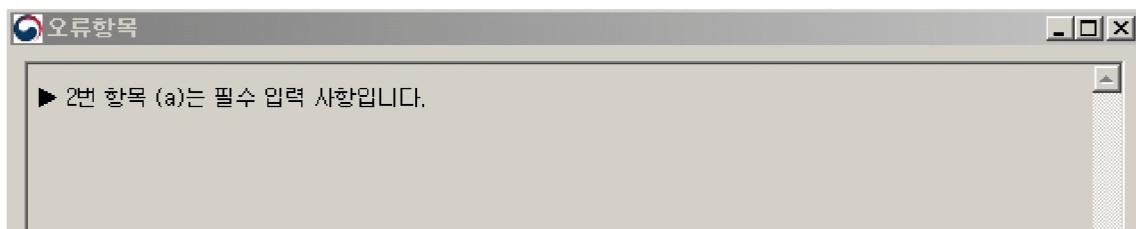


라. 상단 메뉴의 제출파일을 클릭하여 작성한 국제출원서(MM2)를 저장

- 상단 메뉴의 제출파일을 클릭하여 작성한 국제출원서(MM2)를 저장하고 저장되는 파일의 위치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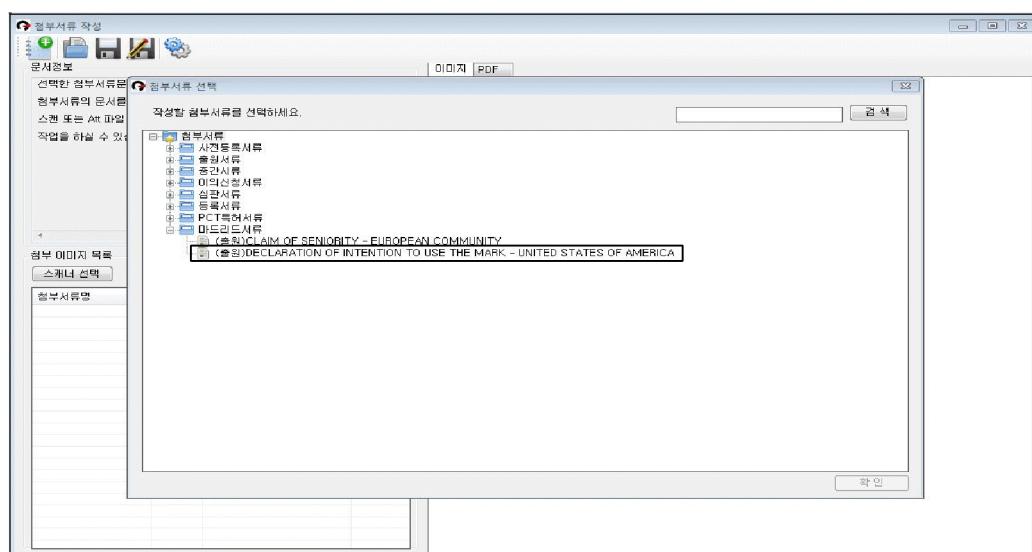
- 저장 파일 생성 전 서식작성기에서 점검하여 안내해주는 오류사항은 다시 수정하여 다시 제출파일로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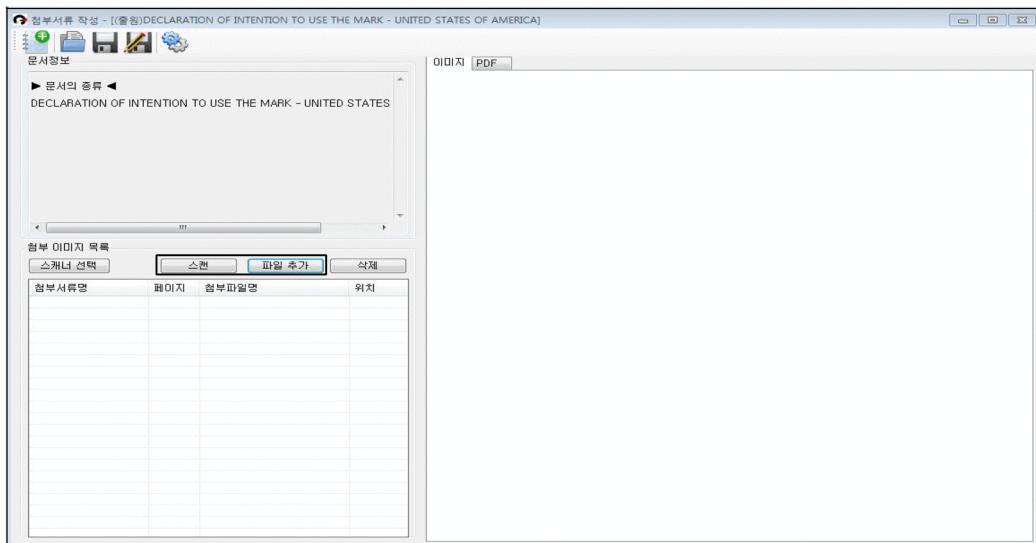
3. 첨부서류 작성 및 변환

가. 오른쪽 메뉴에서 “첨부서류 작성기”를 클릭하여 첨부서류 작성기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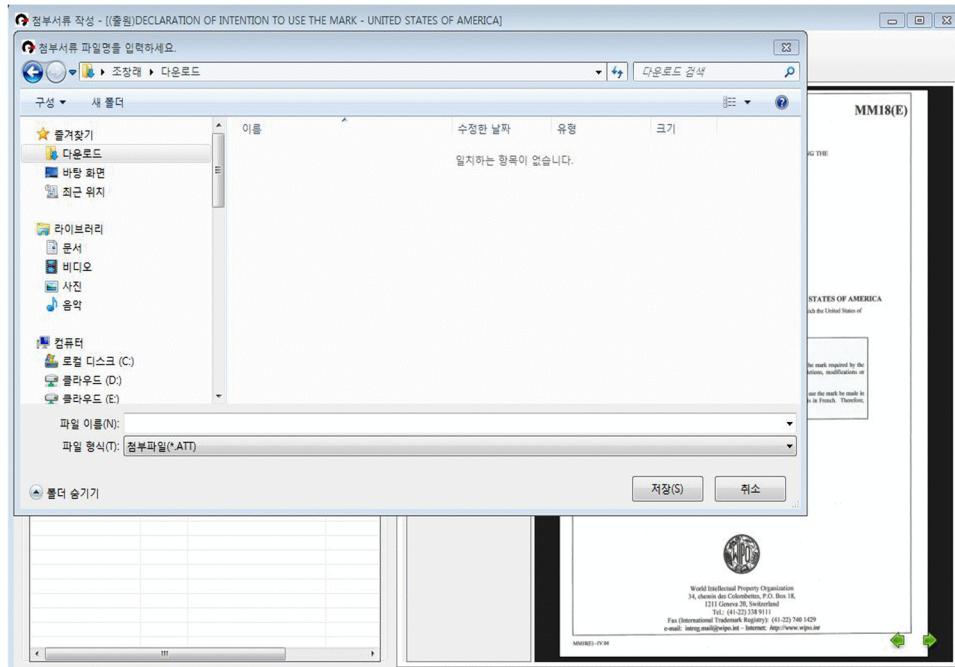
나. 첨부서류 선택화면에서 「마드리드서류에서 「(출원)Declaration of Intention to use the Mark -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선택



라. 스캔 혹은 파일 추가 메뉴를 이용하여 첨부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등록



마. 변환할 이미지 파일 선택을 마친 후 이미지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 등록한 이미지를 확인한 후 전자출원 시 첨부 가능한 형태(.att)로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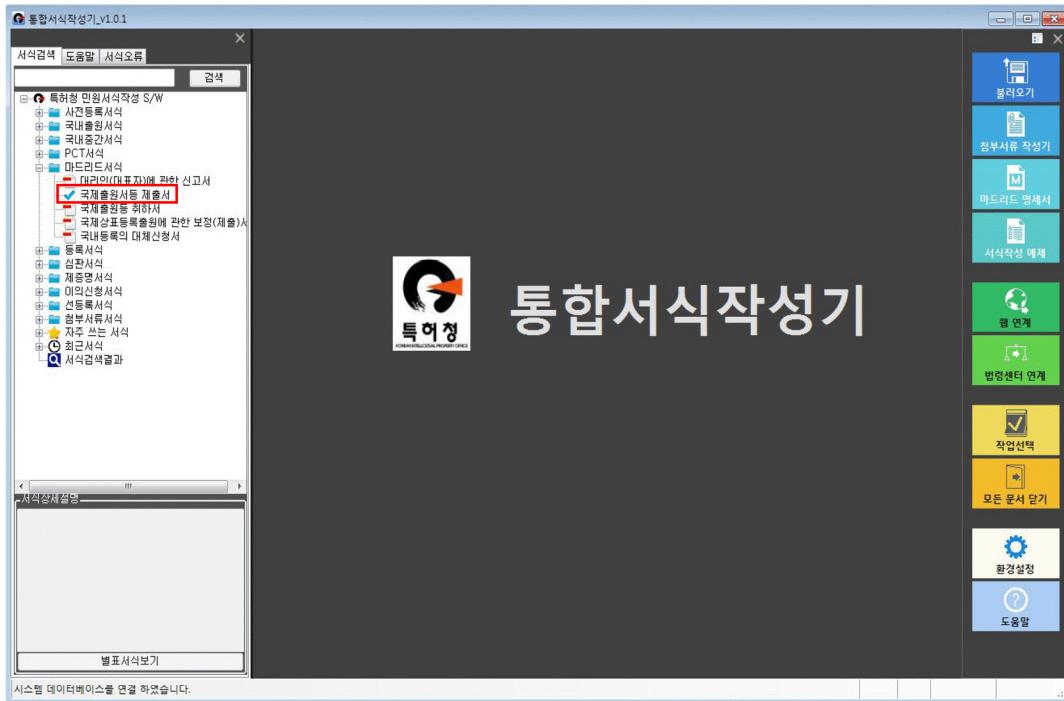


제2장 통합서식작성기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제출

1.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작성

- 가.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특허청전자출원소프트웨어 > 통합서식작성기
 > 통합서식작성기 실행

* 통합서식작성기의 전체 사용 매뉴얼은 특허로드)다운로드)전자출원SW 설치의 매뉴얼을 참고



나. 왼쪽의 서식검색창에서 마드리드서식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선택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구분항목】 국제출원서등 [+] [-]

【제출구분】 ? 국제출원서등

▽제출인 ?

【제출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특허고객번호】	_____ - _____ - _____ - _____	
【명칭】	[라틴입력]	
【사건과의 관계】	국제출원인	[+]

법정 대리인 ?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

대리인 ?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

▽사건의 표시 ?

【사건의 표시】	[+] [-]	
【기초출원번호】	_____ - _____ - _____	
【기초출원일자】	_____	
【상품류】	[라틴입력]	

【수수료】 ? 5.000 원 온라인(FD) 서면 [요율표]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

다.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작성

1) 제출인

- 출원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성명은 특허고객번호 상의 영문명칭과 동일하게 입력

▽ 제출인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출인】 【특허고객번호】 【명칭】 【사건과의 관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 [] - [] - [] [] 라틴입력 []	[]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 [] []
---	---	--

2) 대리인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항목을 선택하여 대리인 입력항목을 활성화 한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단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대리인 [?](#)

【대리인】 【대리인번호】 【성명】 【특기사항】 【포괄위임등록번호】	[] - [] - [] - [] [] [] [] - [] - [] 포괄위임등록번호 찾기 [] []	[]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 [] []
---	---	--

3) 사건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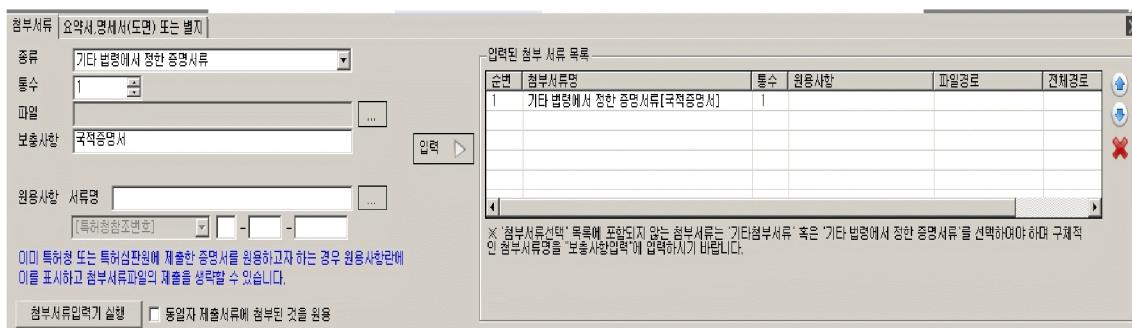
- 기초출원번호 또는 기초등록번호, 기초출원일자 또는 기초등록일자를 기재하고 기초출원(등록)이 2개 이상이면 해당 번호를 모두 기재
- 상품류란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상품류 기재

▽ 사건의 표시 [?](#)

【사건의 표시】 【기초출원번호】 [] [] - [] - [] 【기초출원일자】 【상품류】	[] []
---	---

4) 첨부서류

- 첨부서류 목록에서 첨부할 서류의 종류를 선택
- 첨부서류 목록에 명칭이 없는 서류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로 선택한 후 구체적인 첨부서류명은 [보충사항]란에 입력
- ※ 예) 국적증명서 첨부 시 첨부서류 목록에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선택하고 [보충사항]란에 ‘국적증명서’로 기재
- 첨부서류파일을 파일 찾기 버튼을 이용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확장자명은 ‘.att’ 또는 ‘pdf’만 가능(이미지 파일(jpg, tiff)은 첨부서류입력기에서 ‘att’ 파일로 변환 후 첨부)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온라인 제출

가. 제출문서 생성

- 1) 모든 기재사항을 다 입력하였으면 상단의 저장버튼을 눌러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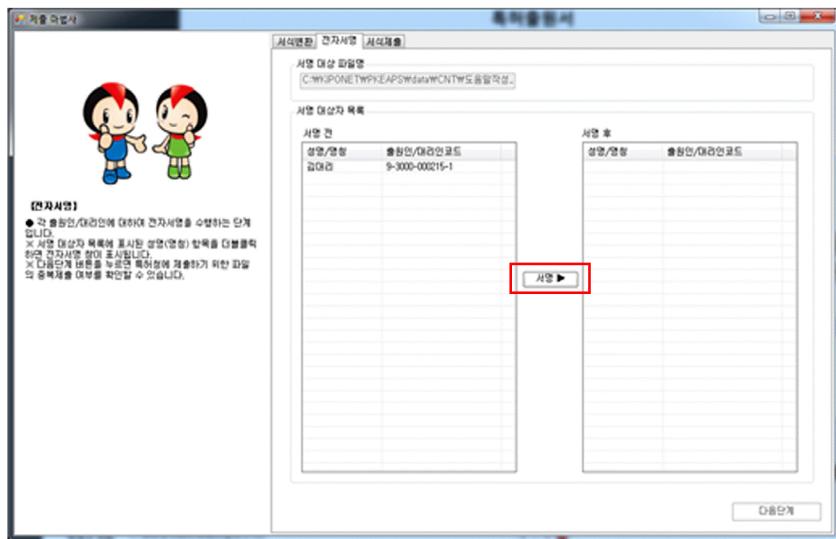
2) 온라인 제출 마법사 실행

- 상단 메뉴 중 문서제출을 클릭하면 온라인제출 마법사가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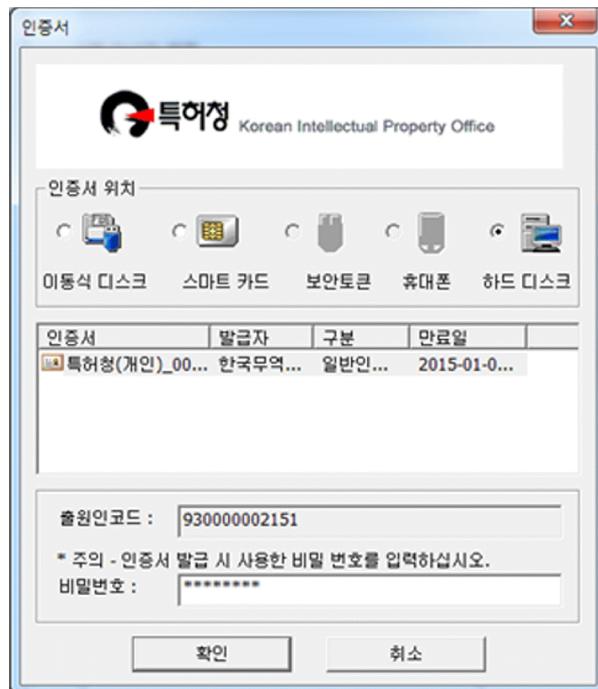


- 제출 마법사 창에서는 서식파일 경로, 명세서/첨부서류 파일 경로, 변환 결과, 파일 경로와 입력한 출원서식의 내용을 확인 가능
- 서식내용을 확인 후 하단의 제출문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문서를 생성
- 제출문서의 확인,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 중복제출 여부 확인의 절차를 실행할 것인지는 하단의 체크박스로 조절

3) 전자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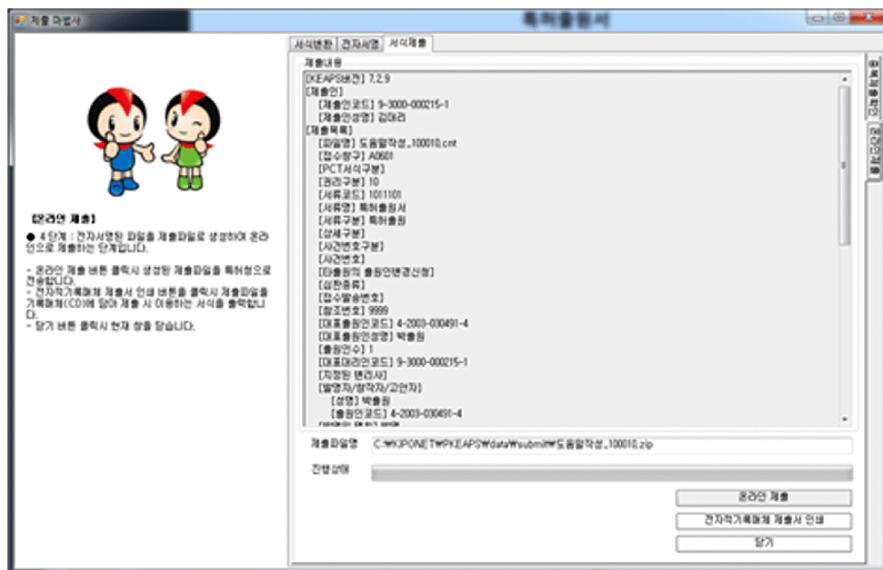


- 중앙에 있는 서명 버튼을 클릭하거나 왼쪽에 있는 서명정보를 더블 클릭하면 인증서 창이 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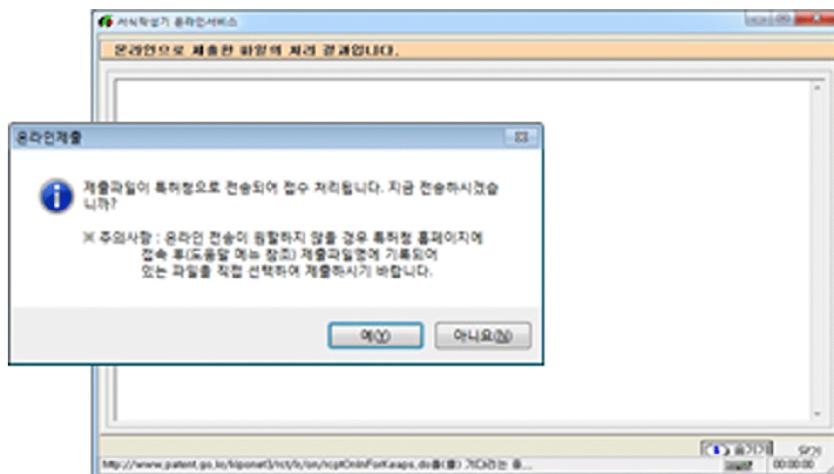


- 비밀번호란에 해당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전자 서명이 완료되고 해당 서명정보가 오른쪽으로 이동

-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파일(ZIP)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온라인으로 제출파일을 제출하는 창이 열림



- 인터넷이 가능한 사용자는 온라인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제출파일을 특허청으로 바로 전송



3. 수수료 납부

가. 수수료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서 직접 납부 가능
- 온라인 납부 메뉴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 납부 > 온라인 납부
- 반드시 출원인/대리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온라인 납부 가능

2)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인증서 등록
- 회원 가입시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 '국세/범칙금'의 '특허수수료' 코너 선택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납부자번호) 입력 후 조회
- 납부계좌를 선택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 후 납부(납부계좌가 없을 경우 '새계좌 등록하기'에서 등록한 후 납부)

3) 은행납부

- 접수번호(납부자번호) 부여일 다음날까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4) 우편납부

- 우편환(통상환)을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

나. 특허청 납부서 다운로드

- 특허청 > 민원서식 다운로드
- 검색메뉴에서 '특허(등록)료 · 수수료 · 등록세 · 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를
검색

민원서식
민원서식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별 서식 <input checked="" type="radio"/> 분야별 서식 <input type="radio"/> 서식번호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특허 <input type="radio"/> 실용신안 <input type="radio"/> 디자인 <input type="radio"/> 상표 <input type="radio"/> 반도체배치설계 <input type="radio"/> 행정서식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서식 키워드 검색 : <input type="text" value="납부안내서"/>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주요 서식 : 특허/실용신안(6), 상표(3), 디자인(5)

서식명	서식번호	파일	작성예제
(특허료등의징수규칙) 특허(등록)료 · 수수료 · 등록세 · 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1-2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7. 29.>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등록)료 · 수수료 · 등록세 · 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1. 납부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출원번호, 등록료, 충금액 등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 청구항 축소, 상품류 축소 등에 따라 정상 특허(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확인하신 후에 특허(등록)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3. 요금의 종류
 - 가. 특허료·등록료
 - 나. 수수료: ①출원료 ②심사청구료 ③심판청구료 ④국제출원수수료 ⑤보정료 ⑥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료 ⑦그 밖의 수수료
 - 다.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및 상표권의 설정 및 간접 등록에 한함·상표권 설정 9,120원(등록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14,400원(등록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21,600원(등록세: 18,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
 - 라.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액
 4. 이 고지서를 웹승인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특허청 본청 또는 특허청 서출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요금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의 문의사항은 특허청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tel:1544-8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 또는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 등록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납부금액이 '00원'인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하지 마시고, 반드시 「특허권 등의 등록료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On-Line(특허로)이나 서면(우편, 직접방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세입장수관서	특 허 청
제 작 번 호	1 2 7 9 9 6 - 6
납 부 자 번 호	0131- - - - -

제3장 PKEAPS를 이용한 중간서류 제출

1. 중간서류의 종류

가. 대체서류 및 국제출원보정서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기재사항 하자, 수수료 미납, 대리인 위임에 관한 하자 등으로 보정요구를 통보 받았을 때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국제출원서의 지정상품, 출원인 정보, 표장, 첨부서류 등 국제출원서에 관한 하자로 대체서류제출요청서를 통보 받아 대체서류들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

나. 하자보정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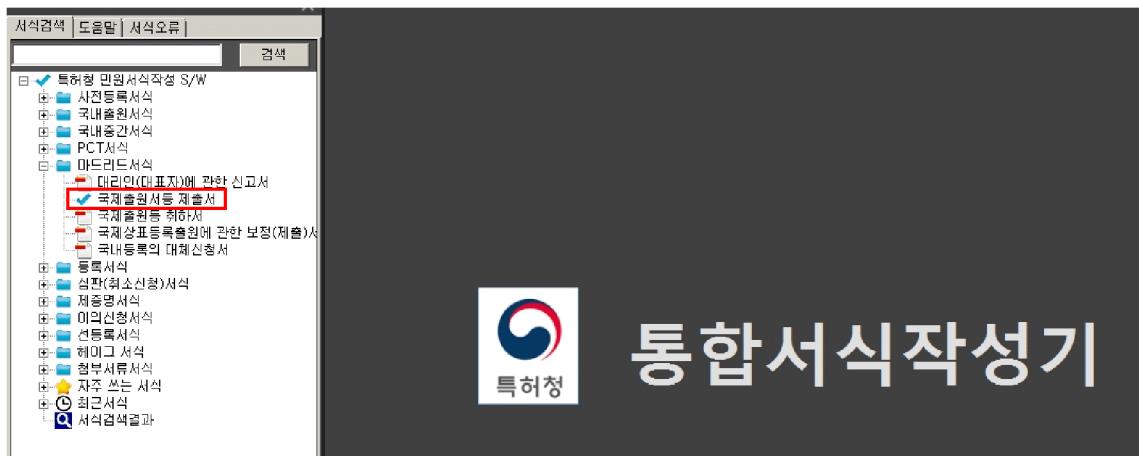
-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에 대한 하자통지를 받은 경우 본국관청을 통해 치유해야 하는 하자에 대한 영문 의견서를 제출하는 서식

다. 국제출원취하

- 국제출원, 사후지정,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

2.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 마드리드 서식에서 국제출원서등 제출서를 선택하고 구분항목에서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를 선택



- 대체사항과 보정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둘 모두 선택 가능)
- 대체사항에 대체할 페이지를 표시하였더라도 MMZ 파일 전체를 첨부해야 하고, 최초 접수 시 MM18서식을 첨부한 경우에는 MM18서식을 다시 첨부해야 함

국제출원서등 제출서

【구분 항목】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제출구분】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제출인 [?]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 [+/-]

【제출인】

【특허고객번호】 - - - -

【명칭】

【사건과의 관계】 국제출원인

【법정 대리인】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

【대리인】 사용자DB 조회 및 입력

▽사건의 표시 [?] 출원인 정보 찾기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 KR - - -

【국제등록번호】

【제출종류】 [?] 자진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 8 - 1 - - - - 제출원인번호 찾기

【대체사항】

【보정사항】

3. 하자보정서

가.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받은 하자통지서의 하자 중 본국관청을 통해 치유하여야 하는 하자(상품 분류에 관한 하자, 상품 명칭에 관한 하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서식

나. 의견서는 영어로 작성해서 하자보정서에 첨부해서 제출

- 파일 형태는 pdf파일 형식이나 att파일(이미지 파일(jpg, tiff)을 첨부서류 입력기에서 전환)만 가능
- 영문 의견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머리말에 보정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마지막에 서명
(Basic application/registration number, WIPO reference, Office reference, examiner 등)

제 6 편



참고자료

1. 지역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2.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목록
3. 특허청 마드리드 국제출원 전용홈페이지
4. WIPO 마드리드 국제출원 사이트
5. 수수료 계산기 이용
6. Madrid Monitor
7. 주요 외국 상표 검색
8. 영문 상품 검색
9. WIPO 계좌 관련 정보
10.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연락처

참고자료 1

지역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유럽 (44개국)	라트비아 (LV)	바레인 (BH)	아프리카 (21개국)	
알바니아 (AL)	모나코 (MC)	브루나이 (BN)	보츠와나 (BW)	
오스트리아 (AT)	몰도바 (MD)	부탄 (BT)	알제리 (DZ)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A)	몬테네그로 (ME)	중국 (CN)	이집트 (EG)	
벨기에 (BE)	마케도니아 (MK)	그루지야 (GE)	가나 (GH)	
불가리아 (BG)	네덜란드 (NL)	이스라엘 (IL)	감비아 (GM)	
벨라루스 (BY)	노르웨이 (NO)	인도 (IN)	케냐 (KE)	
스위스 (CH)	폴란드 (PL)	인도네시아 (ID)	레소토 (LS)	
키프로스 (CY)	포르투갈 (PT)	이란 (IR)	라이베리아 (LR)	
체코 (CZ)	루마니아 (RO)	일본 (JP)	모로코 (MA)	
독일 (DE)	세르비아 (RS)	키르기스스탄 (KG)	마다가스카르 (MG)	
덴마크 (DK)	러시아 (RU)	북한 (KP)	모잠비크 (MZ)	
에스토니아 (EE)	스웨덴 (SE)	대한민국 (KR)	나미비아 (NA)	
유럽연합 (EM)	슬로베니아 (SI)	카자흐스탄 (KZ)	아프리카자식재산기구 (OA)	
스페인 (ES)	슬로바키아 (SK)	캄보디아 (KH)	르완다 (RW)	
핀란드 (FI)	산마리노 (SM)	라오스 (LA)	수단 (SD)	
프랑스 (FR)	터키 (TR)	몽골 (MN)	시에라리온 (SL)	
영국 (GB)	우크라이나 (UA)	오만 (OM)	상투메 프린시페 (ST)	
그리스 (GR)	북남미 (5개국)		스와질란드 (SZ)	
크로아티아 (HR)	앤티가 바부다 (AG)	싱가포르 (SG)	튀니지 (TN)	
헝가리 (HU)	콜롬비아 (CO)	시리아 (SY)	잠비아 (ZM)	
아일랜드 (IE)	쿠바 (CU)	타지키스탄 (TJ)	짐바브웨 (ZW)	
아이슬란드 (IS)	멕시코 (MX)	태국 (TH)	오세아니아 (2개국)	
이탈리아 (IT)	미국 (US)	투르크메니스탄 (TM)	호주 (AU)	
리히텐슈타인 (LI)	아시아 (28개국)		뉴질랜드 (NZ)	
리투아니아 (LT)	아르메니아 (AM)	베트남 (VN)		
룩셈브르크 (LU)	아제르바이잔 (AZ)			

참고자료 2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목록(2018. 2. 현재)

약어	국가명	한글명칭	18개월 선언 ¹⁾	개별수수료 선언 ²⁾	사용권 미적용 ³⁾
AG	Antigua and Barbuda	앤티가 바부다	•	•	
AL	Albania	알바니아			
AM	Armenia	아르메니아	•	•	
AT	Austria	오스트리아			
AU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	•	
AZ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BA	Bosnia and Herzegovin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X ⁴⁾	BE	Belgium	벨기에		
	LU	Luxembourg	룩셈부르크		
	NL	Netherlands	네덜란드		
BG	Bulgaria	불가리아	•	•	
BH	Bahrain	바레인	•	•	
BN	Brunei Darussalam	브루나이	•	•	
BT	Bhutan	부탄			
BW	Botswana	보츠와나			
BY	Belarus	벨라루스	•	•	
CH	Switzerland	스위스	•	•	
CN	China	중국	•	•	•
CO	Colombia	콜롬비아	•	•	•
CU	Cuba	쿠바		•	
CY	Cyprus	키프로스	•		
CZ	Czech Republic	체코			
DE	Germany	독일			
DK	Denmark	덴마크	•	•	
DZ	Algeria	알제리	•		
EE	Estonia	에스토니아	•	•	
EG	Egypt	이집트			
EM	European Union	유럽연합	•	•	
ES	Spain	스페인			
FI	Finland	핀란드	•	•	
FR	France	프랑스			
GB	United Kingdom	영국	•	•	
GE	Georgia	그루지아	•	•	•
GH	Ghana	가나	•	•	

약어	국가명	한글명칭	18개월 선언 ¹⁾	개별수수료 선언 ²⁾	사용권 미적용 ³⁾
GM	GAMBIA	감비아	●	●	●
GR	Greece	그리스	●	●	●
HR	Republic of Croatia	크로아티아			
HU	Hungary	헝가리			
ID	Indonesia	인도네시아			
IE	Ireland	아일랜드	●	●	
IL	Israel	이스라엘	●	●	
IN	India	인도	●	●	●
IR	Iran(Islamic Republic)	이란	●		
IS	Iceland	아이슬란드	●	●	
IT	Italy	이태리	●	●	
JP	Japan	일본	●	●(◇)	●
KE	Kenya	케냐	●	●	
KG	Kyrgyzstan	키르기스스탄		●	●
KH	Cambodia	캄보디아	●		●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			
KR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	●	●
KZ	Kazakhstan	카자흐스탄			
L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라오스	●	●	●
LI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LR	Liberia	라이베리아			
LS	Lesotho	레소토			
LT	Lithuania	리투아니아	●		
LV	Latvia	라트비아			
MA	Morocco	모로코			
MC	Monaco	모나코			
MD	Republic of Moldova	몰도바		●	●
ME	Montenegro	몬테네그로			
MG	Madagascar	마ダ가스카르	●		
MK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마케도니아			
MN	Mongolia	몽골			
MX	Mexico	멕시코	●	●	●
MZ	Mozambique	모잠비크			
NA	Namibia	나미비아			
NO	Norway	노르웨이	●	●	
NZ	New Zealand	뉴질랜드	●	●	

약어	국가명	한글명칭	18개월 선언 ¹⁾	개별수수료 선언 ²⁾	사용권 미적용 ³⁾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	●	●	●
OM	Oman	오만	●	●	
PH	Philippines	필리핀	●	●	
PL	Poland	폴란드	●		
PT	Portugal	포루투갈			
RO	Romania	루마니아			
RS	Serbia	세르비아			
RU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
RW	Rwanda	르완다			
SD	Sudan	수단			
SE	Sweden	스웨덴	●	●	
SG	Singapore	싱가포르	●	●	●
SI	Slovenia	슬로베니아			
SK	Slovakia	슬로바키아	●		
SL	Sierra Leone	시에라리온			
SM	San Marino	산마리노	●	●	
ST	Sao Tome and Principe	상투메프린시페			
SY	Syrian Arab Republic	시리아	●	●	
SZ	Swaziland	스와질란드			
TH	Thailand	태국			
TJ	Tajikistan	타지키스탄	●	●	
TM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	●	
TN	Tunisia	튀니지	●	●	
TR	Turkey	터키	●	●	
UA	Ukraine	우크라이나	●	●	
US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	●	
UZ	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	●	
VN	Viet Nam	베트남		●	
ZM	Zambia	잠비아			
ZW	Zimbabwe	짐바브웨	●	●	

1) 거절기한을 18개월로 선언한 가입국

2)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가입국 (◇ 2차 수수료 납부국가)

3) 국제등록부의 사용권 등록이 효력이 없다고 선언한 가입국

4)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BX를 지정해야 함

참고자료 3

특허청 마드리드 국제출원

전용홈페이지(<http://www.madrid.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Madrid IP Office International Bureau.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부문별기기' (Departmental Equipment), 'HOME', '사이트맵' (Site Map), and 'ENGLISH'. Below the navigation is a search bar and a link to '사이트내관련' (Site Internal Related). The main content area has a header '마드리드' (Madrid) and a sub-header '국제상표등록방안' (Madrid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Marks). It includes sections on '마드리드 소개' (Introduction), '국제상표등록방법' (Procedure for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and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ow to protect a trademark abroad?). There are also links to '국제출원절차' (International Application Procedure), '자료실' (Resources), and '해외상표 출원 시스템 LINK'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 System). A sidebar on the left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 phone number (1544-8080) and a fax number (1544-8080). The bottom of the page features a footer with links to '국제기록' (International Record), '국제기록 안내 및 제작마당' (Information and Production Hall), and a '제작자' (Creator) section.

□ 주요메뉴 소개

- 마드리드 소개
 - 국제상표등록방안, 마드리드 시스템, 용어 설명, 마드리드 홍보 WIPO 동영상
- 국제출원절차
 - 전자출원 안내, 서식작성요령, 명의변경 절차, 사후지정 절차, 영문상품명 기재요령, 수수료 계산 및 납부방법
- 자료실
 - 마드리드 조약·규칙 및 가이드, 상품분류자료 등 기타자료, 마드리드 소식, 마드리드 FAQ

참고자료 4

WIPO 마드리드 국제출원

사이트(<http://www.wipo.int/madrid/en>)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for the WIPO Madrid System. At the top, there's a dark blue header with the WIPO logo an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Below the header, a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IP Services, Policy, Cooperation, Knowledge, About IP, and Inside WIPO. A search bar is also present.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ction titled "WIPO | MADRID" and "Madrid – The International Trademark System". It explains that the Madrid System is a convenient and cost-effective solution for registering trademarks worldwide, allowing applications for up to 116 countries. Below this, there are two bullet points: "Who can use the Madrid System?" and "How much does it cost?". A "New - Try the Contact Madrid service" button is highlighted in orange. To the right, there's a "LATEST NEWS | ALL NEWS" section featuring a video thumbnail of a woman speaking, with the text "Make the Most of Madrid Monitor with All-New Video Tutorials". Further down, there's a section titled "Madrid e-services" with four large arrows pointing right, each leading to a different service: "Search" (Global Brand Database), "File" (Madrid Goods & Services Manager, Member Profiles Database, Fee Calculator), "Monitor" (Madrid Monitor, ROMARIN), and "Manage" (e-Subsequent Designation, e-Renewal, e-Payment, Madrid System forms). The footer of the page contains a copyright notice for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가입국관련 사항(<http://www.wipo.int/madrid/en/members>)

Members of the Madrid Union

The Madrid Union is made up of Contracting Parties to the [Madrid Agreement](#) and the [Madrid Protocol](#).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ich you apply for or register your [basic mark](#) is referred to as the "Office of Origin". In your [international application](#), you can select Contracting Parties in which you'd like to protect your mark, or you can [expand the geographical scope of your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der the [Madrid System](#) at a later time.



Indonesia becomes the 100th member of the Madrid System, now covering 116 territories.
(Photo: WIPO/Berrod)

Membership

The Madrid Union currently has 100 members, covering 116 countries. These members represent more than 80% of world trade, with potential for expansion as membership grows.

- [List of members](#) [PDF](#)

Procedures

WIPO conducts a [formal examin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ut Contracting Parties may have specific requirements and procedures regarding applications, registrations or designations through the Madrid System.

- [Learn more about members' procedures](#)

Declarations

The Madrid Agreement, Protocol and Common Regulations enable Contracting Parties to make declar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system, notably in relation to notifying refusals and regarding the collection of individual fees. These and other declarations are important to consider when designating a Contracting Party.

- [Declarations made under the Madrid Agreement and the Madrid Protocol](#)

- 서식(<http://www.wipo.int/madrid/en/forms>)

Forms Required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Mark

- [Instructions for the completion of editable PDF forms](#)
- [Making the Most of the Madrid System : Information and Practical Tips on How to Use Specific Forms](#) [PDF](#)

[Download all Madrid forms](#)

Resources

- [News - Single Form for All Madrid System Applications](#)
- [Nice Classification](#)
- [Search Madrid information notices](#)

Form	Latest revision	Description	Download	Online versions
MM1	Not available	Note: This form does not apply as all Madrid System members are at this time members of the Protocol. Form MM2 should be used in all cases.		
MM2	July 2017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governed exclusively by the Madrid Protocol [Note for filing]	 DOC PDF	
MM2.INF	Feb 2012	Explanatory notes on the official application form MM2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governed exclusively by the Madrid Protocol)	 DOC PDF	
MM3	Not available	Note: This form does not apply as all Madrid System members are at this time members of the Protocol. Form MM2 should be used in all cases.		
MM4	July 2017	Designation subsequent to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Note for filing]	 DOC PDF	E-subsequent designation
MM5	Jan 2017	Request for the recordal of a Change in Ownership [Note for filing]	 DOC PDF	

- 국제출원, 사후지정, 명의변경, 갱신 신청시 또는 WIPO에 기타 변경사항을 신청할 경우 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수수료(<http://www.wipo.int/about-wipo/en/finance/madrid.html>)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P Services Policy Cooperation Knowledge About IP Inside WIPO Search WIPO

Home > Inside WIPO > Finance On this page ▾

Fees and Payments – Madrid System

Types of fees

The fees payable in connection with an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der the Madrid System comprise:

- the basic fee;
- a complementary fee for each Contracting Party designated; and
- a supplementary fee for each class of goods and services in excess of three.

For certain Contracting Parties, the complementary fee is replaced by an “individual fee”. To confirm whether or not a Contracting Party applies the individual fee (and the amount of such fee), check the list of [Individual Fees](#).

Fee amounts

Before filing your application, use the Fee Calculator to estimate the amount of fees payable. For an overview of the basic, complementary, and supplementary fee amounts, see the [Schedule of Fees](#). **All fees must be paid in Swiss francs.**

Warning – Fee Calculator results are based on information you have provided and the [Schedule of Fees](#) in effect at the time the estimate is generated. The estimate is provid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For the most accurate estimate, consult the Fee Calculator immediately before you submit a request or your payment order.

If your Office of origin is in a Least Developed Country (LDC), in accordance with the list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you benefit from a 90 percent reduction in the basic fee for your international application.

- Individual fees under the Madrid Protocol
- Fee reduction for applications originating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PDF](#)

Where to submit fees

In general, all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fees should be submitted to WIPO. However, for certain Contracting Parties, you may submit application fees directly to the [Office of Origin](#); the Office will then forward the fees to WIPO.

For a list of Contracting Parties that will collect and forward your application fees to WIPO, refer to the [Declarations made by Contracting Parties of the Madrid System \(declaration \(m\) \[Rule 34\(2\)\(b\)\]\)](#).

Warning – Failure to pay your fees in full will result in the issuance of an irregularity notice. The notice will contain a payment deadline (typically 3 months), after which the application will be deemed abandoned.

Contact the relevant IP Office to determine how to submit fees directly. Contact information is available through the Member Profiles Database.

참고자료 5**수수료 계산기 이용**

(<http://www.wipo.int/madrid/en/fees/calculator.jsp>)

1. 초기화면

- ① 날짜 : 국제출원서(사후지정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일자와 가장 가까운 이전일자
예) 국제출원서를 특허청에 2017년 10월 20일에 제출하였을 경우 수수료 계산기에 05.10.2017과 25.10.2017이 있을 경우 05.10.2017 선택

- ② Office of origin : Republic of Korea선택
③ Number of classes :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류의 개수를 선택(주의 : 출원한 해당 류의 번호가 아님)
예) 18, 25류가 국제출원서 10번 항목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2를 선택
④ Type : 국제출원시 New application선택
⑤ 색채표장일 경우 Colour 선택
⑥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 선택
⑦ Continue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 계산
⑧ 국제출원서는 Total(총 수수료) 만 기재

2. 일부 국가에 상품류의 감축이 있을 경우

- ① 개별수수료를 받는 국가만 감액 받을 수 있음
② 감축되는 국가가 개별수수료를 받는 국가일 경우
- 감축되는 류만큼 개수를 감하여 계산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Fee Calculation

For date:	05.10.2017 ▾	Office of origin:	Republic of Korea ▾																																																																																																								
Number of classes:	2 ▾	Type:	New application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25%;"><input type="checkbox"/> AG Antigua and Barbuda</td><td style="width: 25%;"><input type="checkbox"/> EE Estonia</td><td style="width: 25%;"><input type="checkbox"/> L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td><td style="width: 25%;"><input type="checkbox"/> RU Russian Federation</td></tr> <tr><td><input type="checkbox"/> AL Albania</td><td><input type="checkbox"/> EG Egypt</td><td><input checked="" type="checkbox"/> EM European Union</td><td><input type="checkbox"/> RW Rwanda</td></tr> <tr><td><input type="checkbox"/> AM Armenia</td><td><input type="checkbox"/> ES Spain</td><td><input type="checkbox"/> LI Liechtenstein</td><td><input type="checkbox"/> SD Sudan</td></tr> <tr><td><input type="checkbox"/> AT Austria</td><td><input type="checkbox"/> FI Finland</td><td><input type="checkbox"/> LR Liberia</td><td><input type="checkbox"/> SE Sweden</td></tr> <tr><td><input type="checkbox"/> AU Australia</td><td><input type="checkbox"/> FR France</td><td><input type="checkbox"/> LS Lesotho</td><td><input type="checkbox"/> SG Singapore</td></tr> <tr><td><input type="checkbox"/> AZ Azerbaijan</td><td><input type="checkbox"/> GB United Kingdom</td><td><input type="checkbox"/> LT Lithuania</td><td><input type="checkbox"/> SI Slovenia</td></tr> <tr><td><input type="checkbox"/> BA Bosnia and Herzegovina</td><td><input type="checkbox"/> GE Georgia</td><td><input type="checkbox"/> LV Latvia</td><td><input type="checkbox"/> SK Slovakia</td></tr> <tr><td><input type="checkbox"/> BG Bulgaria</td><td><input type="checkbox"/> GH Ghana</td><td><input type="checkbox"/> MA Morocco</td><td><input type="checkbox"/> SL Sierra Leone</td></tr> <tr><td><input type="checkbox"/> BH Bahrain</td><td><input type="checkbox"/> GM Gambia</td><td><input type="checkbox"/> MC Monaco</td><td><input type="checkbox"/> SM San Marino</td></tr> <tr><td><input type="checkbox"/> BN Brunei Darussalam</td><td><input type="checkbox"/> GR Greece</td><td><input type="checkbox"/> MD Republic of Moldova</td><td><input type="checkbox"/> ST Sao Tome and Principe</td></tr> <tr><td><input type="checkbox"/> BQ Bonaire, Sint Eustatius and Saba</td><td><input type="checkbox"/> HR Croatia</td><td><input type="checkbox"/> ME Montenegro</td><td><input type="checkbox"/> SX Sint Maarten (Dutch part)</td></tr> <tr><td><input type="checkbox"/> BT Bhutan</td><td><input type="checkbox"/> HU Hungary</td><td><input type="checkbox"/> MG Madagascar</td><td><input type="checkbox"/> SY Syrian Arab Republic</td></tr> <tr><td><input type="checkbox"/> BW Botswana</td><td><input type="checkbox"/> IE Ireland</td><td><input type="checkbox"/> MK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td><td><input type="checkbox"/> SZ Swaziland</td></tr> <tr><td><input type="checkbox"/> BX Benelux</td><td><input type="checkbox"/> IL Israel</td><td><input type="checkbox"/> MN Mongolia</td><td><input type="checkbox"/> TJ Tajikistan</td></tr> <tr><td><input type="checkbox"/> BY Belarus</td><td><input type="checkbox"/> IN India</td><td><input type="checkbox"/> MX Mexico</td><td><input type="checkbox"/> TM Turkmenistan</td></tr> <tr><td><input type="checkbox"/> CH Switzerland</td><td><input type="checkbox"/> IR Islamic Republic of Iran</td><td><input type="checkbox"/> MZ Mozambique</td><td><input type="checkbox"/> TN Tunisia</td></tr> <tr><td><input checked="" type="checkbox"/> CN China</td><td><input type="checkbox"/> IS Iceland</td><td><input type="checkbox"/> NA Namibia</td><td><input type="checkbox"/> TR Turkey</td></tr> <tr><td><input type="checkbox"/> CO Colombia</td><td><input type="checkbox"/> IT Italy</td><td><input type="checkbox"/> NO Norway</td><td><input type="checkbox"/> UA Ukraine</td></tr> <tr><td><input type="checkbox"/> CU Cuba</td><td><input checked="" type="checkbox"/> JP Japan</td><td><input type="checkbox"/> NZ New Zealand</td><td><input checked="" type="checkbox"/> US United States of America</td></tr> <tr><td><input type="checkbox"/> CW Curaçao</td><td><input type="checkbox"/> KE Kenya</td><td><input type="checkbox"/>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td><td><input type="checkbox"/> UZ Uzbekistan</td></tr> <tr><td><input type="checkbox"/> CY Cyprus</td><td><input type="checkbox"/> KG Kyrgyzstan</td><td><input type="checkbox"/> OM Oman</td><td><input type="checkbox"/> VN Viet Nam</td></tr> <tr><td><input type="checkbox"/> CZ Czech Republic</td><td><input type="checkbox"/> KH Cambodia</td><td><input type="checkbox"/> PH Philippines</td><td><input type="checkbox"/> ZM Zambia</td></tr> <tr><td><input type="checkbox"/> DE Germany</td><td><input type="checkbox"/>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td><td><input type="checkbox"/> PL Poland</td><td><input type="checkbox"/> ZW Zimbabwe</td></tr> <tr><td><input type="checkbox"/> DK Denmark</td><td><input type="checkbox"/> KZ Kazakhstan</td><td><input type="checkbox"/> PT Portugal</td><td></td></tr> <tr><td><input type="checkbox"/> DZ Algeria</td><td></td><td><input type="checkbox"/> RO Romania</td><td></td></tr> <tr><td></td><td></td><td><input type="checkbox"/> RS Serbia</td><td></td></tr> </table>				<input type="checkbox"/> AG Antigua and Barbuda	<input type="checkbox"/> EE Estonia	<input type="checkbox"/> L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put type="checkbox"/> RU Russian Federation	<input type="checkbox"/> AL Albania	<input type="checkbox"/> EG Egypt	<input checked="" type="checkbox"/> EM European Union	<input type="checkbox"/> RW Rwanda	<input type="checkbox"/> AM Armenia	<input type="checkbox"/> ES Spain	<input type="checkbox"/> LI Liechtenstein	<input type="checkbox"/> SD Sudan	<input type="checkbox"/> AT Austria	<input type="checkbox"/> FI Finland	<input type="checkbox"/> LR Liberia	<input type="checkbox"/> SE Sweden	<input type="checkbox"/> AU Australia	<input type="checkbox"/> FR France	<input type="checkbox"/> LS Lesotho	<input type="checkbox"/> SG Singapore	<input type="checkbox"/> AZ Azerbaijan	<input type="checkbox"/> GB United Kingdom	<input type="checkbox"/> LT Lithuania	<input type="checkbox"/> SI Slovenia	<input type="checkbox"/> BA Bosnia and Herzegovina	<input type="checkbox"/> GE Georgia	<input type="checkbox"/> LV Latvia	<input type="checkbox"/> SK Slovakia	<input type="checkbox"/> BG Bulgaria	<input type="checkbox"/> GH Ghana	<input type="checkbox"/> MA Morocco	<input type="checkbox"/> SL Sierra Leone	<input type="checkbox"/> BH Bahrain	<input type="checkbox"/> GM Gambia	<input type="checkbox"/> MC Monaco	<input type="checkbox"/> SM San Marino	<input type="checkbox"/> BN Brunei Darussalam	<input type="checkbox"/> GR Greece	<input type="checkbox"/> MD Republic of Moldova	<input type="checkbox"/> ST Sao Tome and Principe	<input type="checkbox"/> BQ Bonaire, Sint Eustatius and Saba	<input type="checkbox"/> HR Croatia	<input type="checkbox"/> ME Montenegro	<input type="checkbox"/> SX Sint Maarten (Dutch part)	<input type="checkbox"/> BT Bhutan	<input type="checkbox"/> HU Hungary	<input type="checkbox"/> MG Madagascar	<input type="checkbox"/> SY Syrian Arab Republic	<input type="checkbox"/> BW Botswana	<input type="checkbox"/> IE Ireland	<input type="checkbox"/> MK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input type="checkbox"/> SZ Swaziland	<input type="checkbox"/> BX Benelux	<input type="checkbox"/> IL Israel	<input type="checkbox"/> MN Mongolia	<input type="checkbox"/> TJ Tajikistan	<input type="checkbox"/> BY Belarus	<input type="checkbox"/> IN India	<input type="checkbox"/> MX Mexico	<input type="checkbox"/> TM Turkmenistan	<input type="checkbox"/> CH Switzerland	<input type="checkbox"/> IR Islamic Republic of Iran	<input type="checkbox"/> MZ Mozambique	<input type="checkbox"/> TN Tunisia	<input checked="" type="checkbox"/> CN China	<input type="checkbox"/> IS Iceland	<input type="checkbox"/> NA Namibia	<input type="checkbox"/> TR Turkey	<input type="checkbox"/> CO Colombia	<input type="checkbox"/> IT Italy	<input type="checkbox"/> NO Norway	<input type="checkbox"/> UA Ukraine	<input type="checkbox"/> CU Cuba	<input checked="" type="checkbox"/> JP Japan	<input type="checkbox"/> NZ New Zealand	<input checked="" type="checkbox"/> US United States of America	<input type="checkbox"/> CW Curaçao	<input type="checkbox"/> KE Kenya	<input type="checkbox"/>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input type="checkbox"/> UZ Uzbekistan	<input type="checkbox"/> CY Cyprus	<input type="checkbox"/> KG Kyrgyzstan	<input type="checkbox"/> OM Oman	<input type="checkbox"/> VN Viet Nam	<input type="checkbox"/> CZ Czech Republic	<input type="checkbox"/> KH Cambodia	<input type="checkbox"/> PH Philippines	<input type="checkbox"/> ZM Zambia	<input type="checkbox"/> DE Germany	<input type="checkbox"/>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put type="checkbox"/> PL Poland	<input type="checkbox"/> ZW Zimbabwe	<input type="checkbox"/> DK Denmark	<input type="checkbox"/> KZ Kazakhstan	<input type="checkbox"/> PT Portugal		<input type="checkbox"/> DZ Algeria		<input type="checkbox"/> RO Romania				<input type="checkbox"/> RS Serbia	
<input type="checkbox"/> AG Antigua and Barbuda	<input type="checkbox"/> EE Estonia	<input type="checkbox"/> L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put type="checkbox"/> RU Russian Federation																																																																																																								
<input type="checkbox"/> AL Albania	<input type="checkbox"/> EG Egypt	<input checked="" type="checkbox"/> EM European Union	<input type="checkbox"/> RW Rwanda																																																																																																								
<input type="checkbox"/> AM Armenia	<input type="checkbox"/> ES Spain	<input type="checkbox"/> LI Liechtenstein	<input type="checkbox"/> SD Sudan																																																																																																								
<input type="checkbox"/> AT Austria	<input type="checkbox"/> FI Finland	<input type="checkbox"/> LR Liberia	<input type="checkbox"/> SE Sweden																																																																																																								
<input type="checkbox"/> AU Australia	<input type="checkbox"/> FR France	<input type="checkbox"/> LS Lesotho	<input type="checkbox"/> SG Singapore																																																																																																								
<input type="checkbox"/> AZ Azerbaijan	<input type="checkbox"/> GB United Kingdom	<input type="checkbox"/> LT Lithuania	<input type="checkbox"/> SI Slovenia																																																																																																								
<input type="checkbox"/> BA Bosnia and Herzegovina	<input type="checkbox"/> GE Georgia	<input type="checkbox"/> LV Latvia	<input type="checkbox"/> SK Slovakia																																																																																																								
<input type="checkbox"/> BG Bulgaria	<input type="checkbox"/> GH Ghana	<input type="checkbox"/> MA Morocco	<input type="checkbox"/> SL Sierra Leone																																																																																																								
<input type="checkbox"/> BH Bahrain	<input type="checkbox"/> GM Gambia	<input type="checkbox"/> MC Monaco	<input type="checkbox"/> SM San Marino																																																																																																								
<input type="checkbox"/> BN Brunei Darussalam	<input type="checkbox"/> GR Greece	<input type="checkbox"/> MD Republic of Moldova	<input type="checkbox"/> ST Sao Tome and Principe																																																																																																								
<input type="checkbox"/> BQ Bonaire, Sint Eustatius and Saba	<input type="checkbox"/> HR Croatia	<input type="checkbox"/> ME Montenegro	<input type="checkbox"/> SX Sint Maarten (Dutch part)																																																																																																								
<input type="checkbox"/> BT Bhutan	<input type="checkbox"/> HU Hungary	<input type="checkbox"/> MG Madagascar	<input type="checkbox"/> SY Syrian Arab Republic																																																																																																								
<input type="checkbox"/> BW Botswana	<input type="checkbox"/> IE Ireland	<input type="checkbox"/> MK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input type="checkbox"/> SZ Swaziland																																																																																																								
<input type="checkbox"/> BX Benelux	<input type="checkbox"/> IL Israel	<input type="checkbox"/> MN Mongolia	<input type="checkbox"/> TJ Tajikistan																																																																																																								
<input type="checkbox"/> BY Belarus	<input type="checkbox"/> IN India	<input type="checkbox"/> MX Mexico	<input type="checkbox"/> TM Turkmenistan																																																																																																								
<input type="checkbox"/> CH Switzerland	<input type="checkbox"/> IR Islamic Republic of Iran	<input type="checkbox"/> MZ Mozambique	<input type="checkbox"/> TN Tunisia																																																																																																								
<input checked="" type="checkbox"/> CN China	<input type="checkbox"/> IS Iceland	<input type="checkbox"/> NA Namibia	<input type="checkbox"/> TR Turkey																																																																																																								
<input type="checkbox"/> CO Colombia	<input type="checkbox"/> IT Italy	<input type="checkbox"/> NO Norway	<input type="checkbox"/> UA Ukraine																																																																																																								
<input type="checkbox"/> CU Cuba	<input checked="" type="checkbox"/> JP Japan	<input type="checkbox"/> NZ New Zealand	<input checked="" type="checkbox"/> US United States of America																																																																																																								
<input type="checkbox"/> CW Curaçao	<input type="checkbox"/> KE Kenya	<input type="checkbox"/>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input type="checkbox"/> UZ Uzbekistan																																																																																																								
<input type="checkbox"/> CY Cyprus	<input type="checkbox"/> KG Kyrgyzstan	<input type="checkbox"/> OM Oman	<input type="checkbox"/> VN Viet Nam																																																																																																								
<input type="checkbox"/> CZ Czech Republic	<input type="checkbox"/> KH Cambodia	<input type="checkbox"/> PH Philippines	<input type="checkbox"/> ZM Zambia																																																																																																								
<input type="checkbox"/> DE Germany	<input type="checkbox"/>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put type="checkbox"/> PL Poland	<input type="checkbox"/> ZW Zimbabwe																																																																																																								
<input type="checkbox"/> DK Denmark	<input type="checkbox"/> KZ Kazakhstan	<input type="checkbox"/> PT Portugal																																																																																																									
<input type="checkbox"/> DZ Algeria		<input type="checkbox"/> RO Romania																																																																																																									
		<input type="checkbox"/> RS Serbia																																																																																																									
<input checked="" type="checkbox"/> Colour	<input type="checkbox"/>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 or guarantee mark																																																																																																										
<input type="button" value="Select All"/>	<input type="button" value="Clear All"/>	<input type="button" value="Calculate"/>																																																																																																									
Basic fee where any reproduction of the mark is in color :			903																																																																																																								
China																																																																																																											
Individual fee (international application):			249																																																																																																								
European Union																																																																																																											
Individual fee (international application):			897																																																																																																								
Japan																																																																																																											
Individual fee (first part):			108																																																																																																								
<p>This may be subject of the payment of a second part of the individual fee which can be estimated separately by clicking here</p>																																																																																																											
United States of America																																																																																																											
Individual fee (international application):			388																																																																																																								
TOTAL: Swiss francs (CHF)			2545																																																																																																								

참고자료 6

Madrid

Monitor(<http://www.wipo.int/madrid/monitor/en/index.jsp>)

Madrid Monitor Your gateway to the Madrid System, keeping you up to date on your trademark.

Follow the status of you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trademark registration, access detailed information on all trademarks registered through the Madrid System, and keep an eye on competitors' trademarks.

RESOURCES

- [Video Tutorials](#)
- [News: WIPO Welcomes Madrid Monitor, Retires ROMARIN](#)

Brand	Image	Status	Origin	Holder	Reg. No.	Reg. Date	Nice Cl.	Vienna Cl.
SLP SWEDISH LORRY PARTS		Active	EM	Swedish Lorry Parts AB	1336215	2016-07-15	6, 7, 9, 12, 17, 35, 37	01.15, 24.01, 27.05, 29.01

1 - 1 / 1

참고자료 7

주요 외국 상표 검색

가. 미국특허청 (www.uspto.gov)

주소(D) <http://tess2.uspto.gov/bin/gate.exe?f=searchss&state=4006:hns21,1,1>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ome](#) | [Site Index](#) | [Search](#) | [FAQ](#) | [Glossary](#) | [Guides](#) | [Contacts](#) | [eBusiness](#) | [eBiz alerts](#) | [News](#) | [Help](#)

Trademarks >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TESS)

TESS was last updated on Tue Apr 26 04:05:46 EDT 2011

[TESS HOME](#) [STRUCTURED](#) [FREE FORM](#) [BROWSE DICT](#) [SEARCH OG](#) [BOTTOM](#) [HELP](#)

WARNING: AFTER **SEARCHING** THE USPTO DATABASE, EVEN IF **YOU** THINK THE RESULTS ARE "O.K.," DO NOT ASSUME THAT YOUR MARK CAN BE REGISTERED AT THE USPTO. AFTER YOU FILE AN APPLICATION, THE USPTO MUST DO ITS OWN SEARCH AND OTHER REVIEW, AND MIGHT **REFUSE TO REGISTER** YOUR MARK.

View Search History:

Plural and Singular Singular
 Live and Dead Live Dead

Search Term:

Field:

Result Must Contain:

Please logout when you are done to release system resources allocated for you.

This **New User (Basic)** search form allows for searching of the most commonly searched fields: word marks, serial or registration numbers, and owners.

The **Combined Word Mark** is the default search field and includes the **word mark** and **translation**.

Use the \$ for truncation in any field. **For Combined Word Mark searches, the * is a more efficient truncation operator for left and/or right truncation.** For example, the search term "DOG*" with the **Combined Word Mark** will retrieve marks with common variations of the word DOG in the word mark or translation statements. Use of the \$ truncation operator sometimes results in a truncated hit list.

For serial number or registration number searches, enter the 8-digit serial number (e.g. 75123456) or 7-digit registration number (e.g., 1234567) and select **Serial or Registration Number** as the **Field** for the search. If multiple serial or registration numbers are searched, separate the numbers by spaces and change the **Results Must Contain** value to Any Search Terms (OR). (Alternatively, separate the number by the Boolean OR operator without adjusting the **Result Must Contain** value.)

Do **NOT** include the apostrophe for contractions. For example, search for the word **DON'T** by searching **DON T**. Including Boolean operators (e.g. AND, OR, NOT) or proximity operators (e.g., ADJ, NEAR, SAME, WITH) in your search will override the **Result Must Contain** setting for the search. To actually search for these Boolean or proximity operators, include quotes around the operator.

[TESS HOME](#) [STRUCTURED](#) [FREE FORM](#) [BROWSE DICT](#) [SEARCH OG](#) [TOP](#) [HELP](#)

<검색순서>

1. USPTO 홈페이지(<http://uspto.gov/>)Trademarks를 클릭
2. Trademarks 의 Search Trademark Database를 클릭
3.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TESS)의 Search Tradmarks를 클릭
4. Basic Word Mark Search (New User)를 클릭

나. 유럽지식재산청(<https://www.eipo.europa.eu/>)



The screenshot shows the EUIPO's eSearch plus interface.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sections for 'Trade mark information' (including representation, number, name, type, basis, description, reference, recordal number, status, distinctiveness, kind of mark), 'Trade mark classification' (Vienna Classification, Nice Classification, Goods and services, Publication section), and 'Designs', 'Owners', 'Representatives', 'Daily publication'. The main search area has a search bar with a magnifying glass icon, a 'Search' button, and a 'Advanced search' link.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dropdowns for 'Sort results by' (set to 'Trade mark number' and 'Ascending') and search criteria for 'Trade mark number' (contains) and 'Trade mark name' (contains). There are also buttons for 'Clear criteria', 'Reset to default', and a large blue 'Search' button.

<검색순서>

1. EUIPO 홈페이지(<https://www.eipo.europa.eu/>) 접속
2. EUIPO 홈페이지 Search 메뉴의 하위 메뉴 중 eSearch plus를 클릭
3. Search 위의 Advanced search를 클릭하면 상세 검색 가능
4. Trade mark information의 아래 항목을 입력·선택
 - ① Trade mark number : 등록번호
 - ② Trade mark name : 상표명
 - Contains (일부 일치), Is (완전 일치), starts with (시작부분 일치), ends with (끝부분 일치)
 - ③ Trade mark type : 상표유형
 - 3D(3차원), Colour(색채), Sound(소리), Figurative(도형), Others(기타), Olfactory(향기), Hologram (홀로그램), Word(문자), Motion(동작)
 - ④ Trade mark basis : 상표를 검색할 데이터 출처

다. 일본특허청(www.jpo.go.jp)

The screenshot shows the J-PlatPat website interface for searching the Japanese Trademark Database. At the top, there are links for Help desk (9:00-21:00), Japanese, Top page, Help list, Site map, JPO, and INPI. The INPI logo features a stylized green and blue square with the text 'INPI' below it. Below the header, there are three main navigation tabs: Patent &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The Trademark tab is selected. A breadcrumb trail indicates the user is at the Top page > Trademark > Searching Japanese Trademark Database. The main search area is titled 'Searching Japanese Trademark Database'. It includes fields for Retrieval item selection (Trademark for retrieval, Similar group code, Application number/Reclassification number), Retrieval keyword, and Method (OR). There are also sections for AND and OR logic between different search terms. Below these fields, there is a section for 'Type of trademark' with checkboxes for Three-dimension Mark, Sound Mark, Motion Mark, Hologram Mark, Color Per Se Mark, and Position Mark. A 'Search' button is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search form. To the right of the search form, there is a 'Data Coverage' link and a link to return to the top of the page.

<검색순서>

1. JPO 홈페이지(<http://www.jpo.go.jp>)의 우측 J-PlatPat 중 Search(Patent, Design, Trademark, etc) 클릭
2. J-PlatPat에서 Trademarks 중 Japanese Trademark Database를 클릭

참고자료 8

영문 상품 검색

가. 대한민국 특허청((www.kipo.go.kr) 한·영 상품 비교 검색)

The screenshot shows the KIPPO homepage with a navigation bar at the top. Below the navigation, there's a main search area for '상품분류코드' (Product Classification Code). The search results table lists various product codes, their descriptions, and their corresponding NICE, WIPO, and TM5 codes. The results are filtered for 'memory'.

번호	류	명칭	유사군	NICE	WIPO	TM5
58	7	메모리칩 제조기계 memory chip manufacturing machines	G390801			
57	9	공(空) 플래시메모리카드 blank flash memory cards	G390803			
56	9	버퍼메모리기기(컴퓨터하드웨어) buffer memory devices [computer hardware]	G390803			
55	9	CD-ROM compact discs [read-only memory]	G390803			
54	9	컴퓨터기억장치 computer memory devices	G390803			
53	9	컴퓨터 메모리하드웨어 computer memory hardware	G390803			
52	9	DVD-ROM digital versatile disc-read only memory (DVD-ROMs)	G390803			

※ 분류코드조회 클릭 > 상품분류코드 클릭 > 상품검색 > 영문 상품 검색란에 검색어 입력
 예) memory 관련 영문 상품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명칭란에 동물 또는 memory를 입력하면 관련 영문 상품이 검색

나. WIPO NICE 11판 검색(<http://www.wipo.int/classifications>)

The screenshot shows the WIPO NICE Classification websit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to Home, Referenc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Nice Classification, and NICE Publication. Below the navigation is a search bar with dropdown menus for NICE HOME PAGE - HELP - GUIDANCE, DOWNLOAD, EDITION-VERSION (set to 11-2017), OTHERS (set to ----), CLASS INDEX, and LANGUAGE (set to English).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Class 1' and contain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lass, an Explanatory Note, and lists of included and excluded items. A sidebar on the left provides links to TM Offices and View Mode options.

Class 1

Chemicals used in industry, science and photography, as well as in agriculture, horticulture and forestry; unprocessed artificial resins, unprocessed plastics; manures; fire extinguishing compositions; tempering and soldering preparations; chemical substances for preserving foodstuffs; tanning substances; adhesives used in industry.

Explanatory Note

Class 1 includes mainly chemical products used in industry, science and agriculture, including those which go to the making of products belonging to other classes.

This Class includes, in particular:

- compost;
- salt for preserving other than for foodstuffs;
- certain additives for the food industry (consult the Alphabetical List of Goods).

This Class does not include, in particular:

- raw natural resins (Cl. 2);
- chemical products for use in medical science (Cl. 5);
- fungicides, herbicides and preparations for destroying vermin (Cl. 5);
- adhesives for stationery or household purposes (Cl. 16);
- salt for preserving foodstuffs (Cl. 30);
- straw mulch (Cl. 31).

010008 acetate of cellulose, unprocessed
 010007 acetates [chemicals]*
 010010 acetic anhydride
 010011 acetone
 010012 acetylene
 010013 acetylene tetrachloride
 010016 acid proof chemical compositions
 010014 acids*
 010251 acidulated water for recharging batteries / acidulated water for recharging accumulators

〈검색순서〉

1.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의 MADRID를 클릭
2. Madrid의 하단 Reference 중 Nice classification을 클릭
3. Nice Classification의 Access the Nice Classification을 클릭
4. NICE HOME PAGE의 좌측 상단의 EDITION-VERSION 중 최신 버전을 선택
5. 좌측 상단의 CLASS INDEX 중 검색하고자 하는 상품의 류를 선택하여 클릭

다. WIPO MGS(Madrid Goods & Services Manager) 검색(<http://www.wipo.int/mgs>)

MGS • Madrid Goods & Services Manager

Import list Export list Print list Delete list Display preferences

Browse Search

memory

NICE only

64 results in class(es)

6 7 9 16 19 20 28 36 42

9 computer memories
9 disk memories
9 memory boards
28 memory games
36 memorial fundraising
N6 6 memorial plaques of metal
N6 6 memorial plates of metal
7 machines for manufacturing memory chips
7 memory chip manufacturing machines
9 blank flash memory cards
N6 9 computer memory devices
9 electronic memory devices
9 flash memory card adapters
9 flash memory card readers
9 flash memory cards
9 IC memory cards
9 integrated circuit memory cards

9 Scientific, nautical, surveying,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optical, weighing, measuring, signalling, checking [supervising], teach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apparatus and instruments for conducting, switching, transforming, accumulating, controlling, displaying or reproducing sound or images; magnetic data carriers, recording, calculating or measuring apparatus; computers; computer software; fire-extinguishing apparatus.

<검색순서>

1. WIPO 홈페이지(<http://www.wipo.int/>) 중간 WIPO | madrid를 클릭
2. 하단 File 중 Madrid Goods & Services Manager을 클릭
3. 좌측 Search를 클릭한 후 검색하고자 하는 상품의 영문 키워드를 입력
4. 키워드 검색하여 나온 상품을 류별로 정리하여 보고자 할 때에는 results in class(es) 밑에 나타나 있는 류 중 해당 류를 클릭하면 됨
5. 상품의 류를 클릭하면 해당 상품류의 제목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라. 미국특허청 상품 명칭 검색 (<http://tess2.uspto.gov/netahtml/tidm.html>)

The screenshot shows a search results page from the USPTO Trademark Office website. The search term 'memory' is entered in the search bar. The results table includes columns for Term ID, Class, Description, Status, Effective Date, Type, Notes, TM5, and NCL Versl. The results list various entries related to memory products, such as Memory boards, Memory games, and Memory modules. Some entries have specific notes like 'MEMORY STICK is a registered trademark and cannot be used' or 'On 02-13-2014, the 12-23-2010 was changed from "French mem'.

Term ID	Class	Description	Status	Effective Date	Type	Notes	TM5	NCL Versl
009-1955	009	Memory boards	A	07/20/2004	GOODS		T	08-2002
028-1217	028	Memory games	A	04/26/2007	GOODS			09-2007
009-4980	009	Memory modules	A	07/21/2016	GOODS		T	10-2016
009-1160	009	Computer memory sticks	D	08/01/2003	GOODS	MEMORY STICK is a registered trademark and cannot be used More >		08-2002
009-1956	009	Memory expansion modules	A	07/20/2004	GOODS		T	08-2002
009-1809	009	Semi-conductor memory units	A	07/20/2004	GOODS		T	08-2002
009-1122	009	Computer memory hardware	A	06/01/2003	GOODS			08-2002
020-1389	020	French memory boards	M	02/13/2014	GOODS	On 02-13-2014, the 12-23-2010 was changed from "French mem More >		10-2014
009-4874	009	Computer memory devices	X	12/24/2015	GOODS			10-2015
009-4772	009	Computer memory modules	A	08/06/2015	GOODS			10-2015
007-1586	007	Memory chip manufacturing machines	A	12/02/2010	GOODS		T	09-2007
009-4467	009	Blank flash memory cards	M	09/05/2013	GOODS	On 09-05-2013, this entry of 06-01-2003 was amended from " More >	T	10-2013
009-437	009	Memory cards [computer hardware]	A	02/20/1996	GOODS			07-1997
009-3451	009	Electronic memory card readers	A	08/13/2009	GOODS			09-2007
016-667	016	Memory books [photo albums]	A	10/01/1994	GOODS			07-1997
009-5183	009	Memory card readers	A	06/15/2017	GOODS		T	11-2017
009-4979	009	Memory expansion cards	A	07/21/2016	GOODS		T	10-2016
009-1092	009	RAIM (random access memory) card	A	06/01/2003	GOODS			08-2002
009-4262	009	Secure Digital (SD) Memory Cards	A	11/22/2012	GOODS		T	10-2012
009-3111	009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	A	05/29/2008	GOODS			09-2007
009-4491	009	Memory cards for video game machines	A	01/01/2014	GOODS			10-2014
009-4468	009	Pre-recorded flash memory cards featuring [indicate subject matter]	A	09/05/2013	GOODS			10-2013
028-629	028	Equipment sold as a unit for playing a memory game	A	10/01/1994	GOODS			07-1997
010-1332	010	Medical devices and apparatus, namely, hernia mesh comprised primarily of artificial materials, memory coil, a memory coil as a component of hernia mesh, and parts and fittings therefor	M	09/19/2013	GOODS	On 09-19-2013, this 03-13-2008 entry was amended from "Med More >		10-2013
028-1237	028	Two and three dimensional positionable toy figures sold as a unit with memory training equipment	A	09/20/2007	GOODS			09-2007

〈검색순서〉

1. USPTO 홈페이지 (<http://uspto.gov/>)의 Trademarks를 클릭
2. Trademarks Home의 본문 중 Guides, Manuals and Resources를 클릭
3. 본문 중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Manual (ID Manual)을 클릭
4.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상품의 영문 키워드를 입력 후 클릭

마. EUIPO 상품 명칭 검색 (<https://www.euiipo.europa.eu/>)

The screenshot shows the TMclass search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links for FAQ, Help, Tutorials, and a language dropdown set to English (en). Below the header, there are tabs for Classification Tools, Classification Resources, and Translation Tools. The main search area has fields for Language (English (en)), Search term (memory), Nice Class (1-45), and HDB (Harmonised Database) (checked). A 'Search' button is on the right. Below this, a section titled 'Office Databases' lists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The 'My List' section shows a table of search results for 'memory'.

Class	Term	Harmonised	Harm	Nice	IDII	Grou	MGS
9	Memory boards	✓	○		○		○
9	Memory devices	✓	○				
9	Memory apparatus	✓	○				
9	Flash memory	✓	○				
9	Memory cards	✓	○		○		
9	Memory sticks	✓	○				

〈검색순서〉

1. EUIPO 홈페이지(<http://oami.europa.eu/>) 접속
2. Search – TMclass 클릭
3. 검색하고자 하는 영문 상품의 키워드(예: memory)를 입력한 후 Search를 클릭

참고자료 9

WIPO 계좌 관련 정보

1. 일반원칙

-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신청을 하고, 예치금을 납부해야 함

2. 정규절차

가. WIPO 홈페이지에서 계좌 개설신청

- <https://www3.wipo.int/finance/en/create.jsp>

WIPO

Contact Us | En

Home > IP Services > Finance

Request to Open a WIPO Current Account

A **WIPO Current Account** is a special financial account administered by WIPO, for payments relating to the registration of international marks, industrial designs, PCT patent filings, and other transactions. All transactions are processed in Swiss francs (CHF). An initial deposit (at least CHF2'000) must be wired to WIPO. The deposit note/reference should state: "To open a WIPO Current Account."

Upon receipt of this form and the initial deposit, your WIPO Current Account will be activated. You will receive confirmation and account details by e-mail.

Company / customer details

Name (required)	
Address (required)	line 1 line 2
City (required)	
Postal code (required)	
State	
Country (required)	Country
Phone	
Fax	
Already a WIPO customer?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Customer ID (if available)	numbers only
Account administrator 1 (required)	first name, last name
Email address 1 (required)	

Resources

- Conditions for opening a WIPO Current Account [PDF](#)
- How to close your WIPO Current Account

가. 예치금 입금

- 최초 예치금은 최소 2,000 스위스 프랑을 납부해야 함
- 예치금 납부 계좌 정보

Bank name(은행명): Credit Suisse-1211 Geneva 70-Switzerland

Account name(예금주): WIPO/OMPI

Account number (IBAN):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BIC code: CRESCH ZZ80A

- 나. 당좌계좌 명의인은 계좌이용 예정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가 출금될때 까지는 충분한 금액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해야함

3. 계좌의 관리

계좌는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스위스프랑으로만 유지

4. 계좌 운용의 원칙

- 가. 계좌는 초기 비용이 수령된 이후 개설되며, 계좌번호는 E-mail 또는 팩스로 계좌의 명의인에게 통보됩니다.

- 나. 개설된 계좌에는 모든 수수료, 서비스, 공보, 사본 등을 커버할 만큼 충분한 비용이 적립될 것이 요구됨

- 다. 적립금은 WIPO의 Finance Section에 의해 거래 날짜순으로 계좌에 입금됨

- 라. 계좌 개설인은 거래 내역에 관한 상세 기록을 매달 통보 받게 되며, 계좌 개설인은 그 통지에 에러가 있을 경우 즉시 WIPO에 알려야 함

- 마. 계좌 개설인은 적립금이 계좌에 입금될 때마다 영수증을 받게 됨

5. 계좌에서의 출금

- 가. 계좌는 수수료, 공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WIPO의 다른 서비스로 인한 비용의 지불을 위해서만 출금됨

- 나. 계좌는 계좌 개설인에 의해 작성된 요구서에 기초해서만 출금됨(각 공식 서식에 첨부된 수수료계산용지에서 주어진 계좌에서의 출금을 허가하는 것을 포함)
- 다. 출금 요구는 출금의 목적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또한 출금되는 계좌 번호를 표시해야 함
- 라. 계좌의 균형을 적자(-)로 만드는 어떠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음
- 마. 계좌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허가는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지 않는 한 수수료의 지불로 간주되지 않음

7. 계좌의 폐쇄

- 가. WIPO 홈페이지에서 폐쇄 신청
- http://www.wipo.int/about-wipo/en/finance/current_account/close.html

WIPO Current Account: How to Close an Account

[Overview](#)

[Open an Account](#)

[Pay fees](#)

[Check balance / Confirm payments](#)

[Deposit funds](#)

[Close an Account](#)

You can close your WIPO Current Account at any time. Simply complete and submit the [form](#). Please note that:

- Any new debit instructions will be blocked/denied.
- Any ongoing transactions will be completed, subject to availability of funds.
- Any balance remaining will be refunded based on the refund instructions you provide in the above form.

Warning – WIPO reserves the right to close any WIPO Current Account for which the terms and conditions [PDF](#) are not fulfilled or not complied with. We also reserve the right to close any WIPO Current Account which has been dormant (i.e. no transactions in or out of the account) for more than two years, or if the balance drops below CHF 200. Failure to respond to communications concerning your WIPO Current Account may lead to the write-off of any remaining balance.

- 나. WIPO는 충분한 금액이 적립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 이를 폐쇄할 수 있음
- 다. 계좌가 폐쇄되면 잔고는 계좌 개설인 또는 법적 상속인에게 반환됨

참고자료 10**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연락처****1. WIPO 국제사무국 연락처****가. 우편주소**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나. 전화번호 : +41 22 338 86 86**다. 팩스번호 : +41 22 740 14 29****라. 연락 : <http://www3.wipo.int/contact/en/madrid/>****2. 대한민국 특허청(KIPO) 연락처****가. 국제출원과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42-481-5206, 8552, 5198
팩스 : 042-472-3473
이메일 : kipomadrid@korea.kr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나. 특허청 콜센타 1544-8080

해외상표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국제출원가이드(설명편)』 발간 참여신원

총괄 국제출원과장 김동욱

집필 주무관 김인숙
주무관 김은지
주무관 임성용

감수 사무관 김종구

해외상표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국제출원가이드(설명편)

발행 : 특허청 국제출원과
전화 : 042-481-5206, 8552
팩스 : 042-472-3473
발행일 : 2018년 2월

ISBN : 978-89-6199-069-1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출처 표시	 공공누리	- 출처 표시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